

ISSN 2288-9787

# 2025 지급결제보고서

2026. 4



한국은행  
BANK OF KOREA

##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 비전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 전략방향    Agility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Collaboration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Expertise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 BANK OF KOREA

## 2025 지급결제보고서

2026. 4



---

지급결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금, 지급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급수단, 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에 의거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결제지연 등 결제리스크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이외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감시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감시·혁신을 위해 2025년 중 수행했던 업무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2026년 3월까지의 지급결제 관련 제도 변경내용 등을 정리해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와 국민들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은행법」(발췌)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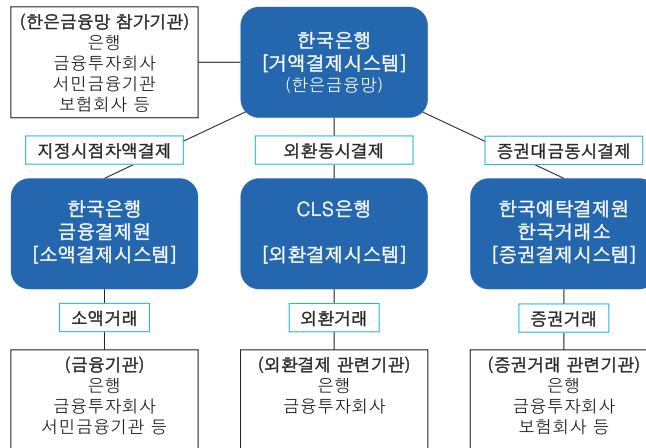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개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어음, 수표, 계좌이체, 카드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지급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 **(한은금융망)**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콜·증권·외환 거래 등에 따른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이체를 실시간 총액 방식으로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 **(결제리스크 관리)** 참가기관의 실시간 결제유동성 조달·관리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대출 또는 RP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 **(소액결제시스템)** 기업 또는 개인의 자금이체 지시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실시간 또는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에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 **(결제리스크 관리)**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이 자금이체 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연동한 규모의 적격담보를 한국은행에 납입하도록 하는 등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 **(외환결제시스템)** 기업·개인 등의 외환거래에 따른 이종통화 수취·지급을 금융기관 간에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 **(결제리스크 관리)** 각국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매도통화와 매수통화의 결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증권결제시스템)** 투자자들의 주식 및 채권 등의 거래 시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증권예탁계좌를 통해 증권의 인도를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 **(결제리스크 관리)** 한은금융망과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요

I.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              |    |
|--------------|----|
| 1. 거액결제시스템   | 3  |
| 2. 소액결제시스템   | 8  |
|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10 |
| 4. 증권결제시스템   | 11 |

<참고>

|                      |    |
|----------------------|----|
| I -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 12 |
|----------------------|----|

II. 지급결제제도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                       |    |
|-----------------------|----|
| 1.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 17 |
| 2.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 23 |

<참고>

|  |    |
|--|----|
| II -1.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IT시스템 다중화 사례       | 24 |
| II -2. 국제사회의 FMI 일반사업리스크 관련 추가지침 제정 추진 | 26 |

III.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

|                                 |    |
|---------------------------------|----|
|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 31 |
| 2.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제고 노력        | 33 |
| 3.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 37 |

<참고>

|                                 |    |
|---------------------------------|----|
| III -1. 2025년 가상자산 거래현황 및 주요 특징 | 41 |
| III -2. 빗썸거래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 43 |
| III -3.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 45 |

IV. 주요 현안 분석

|                        |    |
|------------------------|----|
| 1.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추진       | 49 |
| 2. 바람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 54 |
| 3. 국가 간 지급서비스 연계 강화    | 57 |

<참고>

|   |    |
|---|----|
| IV -1. 주요국 중앙은행의 DLT 혁신 지원 사례               | 61 |
| IV -2.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내용                    | 65 |
| IV -3. 2025년 10월 11일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원인 및 시사점 | 67 |
| IV -4.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현황 및 활용 가능성               | 70 |
| IV -5. 토큰증권 법제화 현황 및 시사점                    | 73 |
| IV -6.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 74 |

---

## 보충 설명 차례

|                        |    |
|------------------------|----|
| 1. 지급결제 프로세스           | 79 |
| 2.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 81 |
| 3. 외화의 지급 및 결제         | 83 |
| 4. 금융시장인프라             | 85 |
| 5.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 87 |

---

## 부록 차례

|                              |     |
|------------------------------|-----|
| 1. 2025년 중 주요 일지             | 91  |
| 2.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 93  |
|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 94  |
| 4. 주요 통계                     | 95  |
| 5. 용어 해설                     | 100 |
| 6. 약어                        | 102 |
| 7. 표 및 그림                    | 103 |
| 8.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 105 |

---

□ 보고서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본 보고서의 PDF 파일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인프라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26년 3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역외 원화결제시스템(가칭) 구축 및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 국제적 연계와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국가 간 QR 기반 지급서비스 개시(2026년 4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상자산반 신설 등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분석을 강화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와 소액결제, 증권결제 및 외환동시결제 등에 대한 최종 결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가운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최종목표인 100%로 인상함으로써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동 비율의 단계별 인상 조치를 완료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금융회사 공동검사를 통해 감시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직불서비스 이용기반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는 등 지급결제서비스의 포용성과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와 함께 미래 디지털통화 인프라 시범 모형을 실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 참여를 지속하는 등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의 추진을 이어나갔다. 아울러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실무그룹(WGPMI)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다자간 신속지급시스템 연계(Nexus) 논의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도 지속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가동,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적용범위 확대 등 핵심 인프라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 확산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 간 QR 기반 지급서비스 연계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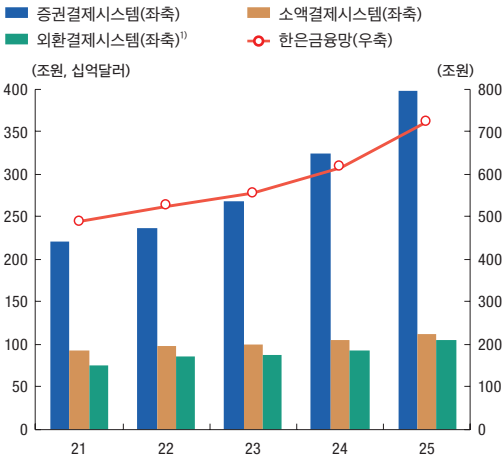
##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 ① 2025년 중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증권거래자금 결제, 개인 및 기업의 자금이체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3~11p).

2025년 중 한은금융망의 결제금액은 증권거래자금 결제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7.2% 증가한 일평균 723.3조원을 기록하였다. 한은금융망과 연

계된 지급결제시스템별로는 증권결제시스템 결제 금액이 일평균 399.4조원으로 기관간RP 거래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22.6% 증가하였다. 소액결제 시스템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자금이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5.9% 증가한 일평균 112.8조원을 기록하였다. 외환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062억달러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주요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일평균)



주: 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십억달러)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2)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3~11p).

2025년 중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소액결제, 증권결제 및 외환동시결제 등에 대한 최종 결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였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sup>1)</sup>(일평균)은 24.5%로 전년(22.7%)대비 소폭 상승<sup>2)</sup>했으나 대기비율<sup>3)</sup>(일평균)은 4.3%로 전년(5.0%)보다 소폭 하락<sup>4)</su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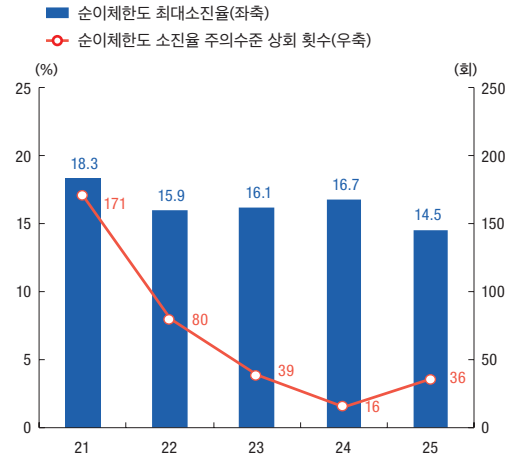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및 대기비율 추이(금액 기준)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 <sup>1)</sup> | 20.3 | 23.0 | 20.9 | 22.7 | 24.5 |
| 대기비율 <sup>2)</sup>         | 3.7  | 4.1  | 4.9  | 5.0  | 4.3  |

주: 1) 참가기관 중 은행의 일별 순일종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종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2) 전체 대기금액/총 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 되는 거래 제외)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sup>5)</sup>(일평균)은 2025년 중 14.5%로 전년(16.7%)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6회로 전년(16회)보다 증가하였다.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sup>1)</sup>(일평균) 및 주의수준(70%) 상회 횟수 추이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1) 일종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한 대출적격담보 한도 내에서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일종당좌대출 한도가 1,000억원이고 최고 사용금액이 245억원인 경우 최대소진율은 24.5%이다.
- 2) 외은지점의 일종당좌대출 이용금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 3)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중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 부족으로 자금이체 신청이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일례로 참가기관의 총 결제금액이 1,000억원, 이 중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이 43억원일 때 대기비율은 4.3%이다.
- 4) 대기금액의 대부분은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은행과 달리 지급준비금이 없어 결제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 5) 참가기관이 신규 고객자금이체를 신청하면 순이체한도가 소진되며,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취하면 복구된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사전 납입하도록 하는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주식기관투자자 거래의 결제 모두 기준 시한 이전에 완료되었다. 기관간RP 및 장외채권의 경우도 대금 지급과 증권 인도를 동시에 처리해 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장외시장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sup>12)</sup>**

| 구분   | 2021 2022 2023 2024 2025 (%) |      |      |      |      |
|------|------------------------------|------|------|------|------|
|      | 기관간RP                        | 94.1 | 94.5 | 95.7 | 95.9 |
| 장외채권 | 90.5                         | 93.8 | 97.3 | 97.5 | 97.6 |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금액의 비중  
 2) 장외채권의 경우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 (연쇄결제 차감 후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지급결제제도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3 한국은행은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확대하였다(17~19p).**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3월 30일부터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기존 9시~17시 30분에서 9시~20시로 2시간 30분 확대하였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국가를 포함한 주요국 결제시스템과의 운영시간 중첩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간 원화 지급의 제약완화를 위한 조치이다.

운영시간 확대 결과 한은금융망은 주요국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과의 운영시간 격차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이 2022년 제안한 국제 공통결제시간대 확대 권고에도 부합<sup>6)</sup>하는 결제 인프라로 개선되었다.

**WGBI 편입국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 국 가         | 운영시간        |                    |
|-------------|-------------|--------------------|
| 멕시코         | 24시간        |                    |
| 뉴질랜드        | 23시간30분     | 09:00~08:30        |
| 미국          | 22시간        | 21:00~19:00        |
| 중국          | 20시간145분    | 20:30~17:15        |
| 캐나다         | 18시간30분     | 00:30~19:00        |
| EU          | 15시간30분     | 02:30~18:00        |
| 호주          | 14시간30분     | 07:30~22:00        |
| 말레이시아       | 13시간        | 08:00~21:00        |
| 일본          | 12시간30분     | 08:30~21:00        |
| 영국          | 12시간        | 06:00~18:00        |
| 노르웨이        | 11시간5분      | 05:30~16:35        |
| <b>대한민국</b> | <b>11시간</b> | <b>09:00~20:00</b> |
| 스웨덴         | 11시간        | 07:00~18:00        |
| 이스라엘        | 11시간        | 07:45~18:45        |
| 폴란드         | 10시간30분     | 07:30~18:00        |
| 덴마크         | 10시간        | 07:00~17:00        |
| 싱가포르        | 10시간        | 09:00~19:00        |

자료: 각국 중앙은행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참가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주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제도 및 IT 시스템 보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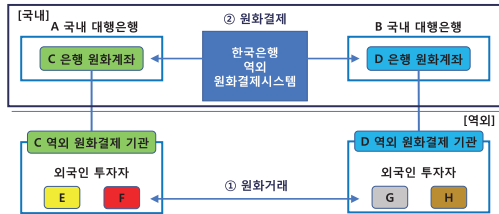
**4 한국은행은 역외 원화결제시스템(가칭) 구축을 추진하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19~22p).**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거래 편의성과 우리 지급결제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런던·뉴욕 등 주요 금융시장 운영시간에도 원화결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MSCI(Morgan Stanley Capital

6) BIS는 2022년 5월 각국 거액결제시스템의 중첩시간대를 확대하여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BIS는 국제 공통결제시간대를 정하고 각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이 동 시간대에 운영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통결제시간대는 국제표준시(GMT, Greenwich Mean Time) 기준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로,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서 오후 8시이다(「Extending and aligning payment system operating hours for cross-border payments」, BIS, 2022.5월).

International) 선진국 지수 편입<sup>7)</sup>을 뒷받침하면서 원화 및 국내 결제 인프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결제 구조



자료: 한국은행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은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자 및 참가기관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을 채택한다. 기존 한은금융망과는 분리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되, 한은금융망 당좌계좌와의 유동성 연계를 통해 주간에 확보한 유동성을 야간시간대 결제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2027년 정식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실시간 장애 대응체계와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해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ISO 20022는 글로벌 교역 확대와 자본 이동 증가에 따라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sup>8)</sup>로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2년 한은금융망 ISO 20022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3~2024년 핵심 자금 이체 부문을 중심으로 전문<sup>9)</sup> 개발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시스템 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단계적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2026년 2/4분기 중 종합테스트와 최종 이행 점검을 거쳐 ISO 20022를 적용한 한은금융망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5 한국은행은 국제사회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23p).

한국은행은 2025년 중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자산 확산과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tokenization)에 대한 규제·정책 대응, ISO 20022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 지급결제 표준화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루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지급 및 시장인프라 실무그룹(WGPMI) 제5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간 지급 속도와 수수료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2025년 5월에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헝가리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추진 노력을 소개하는 등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였다.

7) 2025년 MSCI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8)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기존 국가 간 송금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과제로 선정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9) 전문(message)이란 금융거래 시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일정한 구조와 규칙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거래일시, 금액, 참가기관 정보 등이 포함된다.

##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

⑥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100%로 인상하였으며, 가상자산반 신설 등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분석을 강화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 참여하였다(31~32p).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sup>10)</sup>에 따라 소액 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3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금융기관의 급격한 담보 납입 부담을 방지하고자 점진적인 인상 방식을 채택<sup>11)</sup>하였으며, 2025년 8월 담보제공비율을 최종 목표인 100%로 인상하였다.<sup>12)</sup>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sup>1)</sup>

| 2020.4 | 2022.2 | 2023.8 | 2024.8 | 2025.8 |
|--------|--------|--------|--------|--------|
| 50     | 70     | 80     | 90     | 100    |

주: 1) (Σ담보인정가액/순이체한도)×100  
자료: 한국은행

이로써 순이체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기확보한 담보 처분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5년 7월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반을 신설하였다. 가상자산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앞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한 상시

감시, 가상자산시장 조사연구 및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국회 등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후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⑦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33~36p).

2025년 중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복원력 지침」 등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및 기관간RP 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완료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기준을 대체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배구조 및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 2025년 중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내용

| 평가대상      | 주요 개선권고내용                        |
|-----------|----------------------------------|
| <한국예탁결제원> | · 리스크관리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
| 채권기관투자자   | · 증권대차거래 관련 담보 헤어컷 비율 검증 절차 개선   |
| 결제시스템     | · 자금운용회사 선정 시 유동성지표 반영           |
| 기관간RP     | · 외부 인증 획득을 통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유효성 제고 |
| 결제시스템     | ·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점검·개선 검토            |

자료: 한국은행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제정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권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준을 이전 기준인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 보다 강화하였다.

11)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담보제공비율을 일시 인하하거나 인상 일정을 유예한 바 있다.

12) 한편,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 및 조기 안착 과정에서 원화 결제자금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금년 3월 말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국내 수탁은행 등 일부 참가기관에 대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80%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6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3개 은행과 2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기관들의 일중 유동성, 결제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장애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결제유동성 관리체계 및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등에 대한 보안을 권고하였다.

#### 2025년 중 지급결제 부문 공동검사 내용

| 대상기관 | 검사기간                  | 주요 검사내용  |
|------|-----------------------|--|
| 부산은행 | 4.3~4.8<br>(4영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중 유동성 관리</li> <li>차액결제리스크 관리</li> <li>지급결제 관련 규정 준수 등</li> </ul> |
| 신한은행 | 5.12~5.15<br>(4영업일)   |  |
| 하나은행 | 11.10~11.13<br>(3영업일) |  |
| 대신증권 | 6.16~6.27<br>(10영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이체업무 수행상황</li> <li>결제유동성 관리실태</li> </ul>                        |
| 하나증권 | 12.11~12.19<br>(7영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장애사고 대응현황 및 비상대응체계 등</li> </ul>                                |

자료: 한국은행

#### ⑧ 한국은행은 현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직불서비스 이용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였다(37~40p).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25년 4월 모바일현금카드<sup>13)</sup>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삼성월렛과의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삼성월렛 앱에서도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ATM 입·출금, 상거래 결제 및 거스름돈 적립 등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플랫폼 연계와 병행하여 대형 소매 체인점, 병원 등 생활 밀착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모바일현금카드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결제원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25년 12월 기준 누적 발급건수 중 43.5%가 2025년 중 신규 발급되었으며, 결제 건수와 ATM 입·출금 건수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앞으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 점포 내 ATM 뿐 아니라 지하철·편의점 등 점포 외 ATM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이용 채널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현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현금의 수용성과 접근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금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한편,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sup>14)</sup>와 조사연구를 통해 현금 유통 환경 변화 대응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점포 및 ATM 감소<sup>15)</sup>로 일부 지역에서의 현금 접근성 저하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 관련 업계 및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중장기적으로 현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고비용 지급수단에 편중된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결제서비스 모바일화 대응을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회가 2020년 6월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도입했으며 ① CD/ATM 거래, ② 상거래 대금결제(직불결제), ③ 가맹점에서의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현금수송회사, 비금융 ATM 운영업체, 소매·유통업체 등 화폐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관기관들(총 24개)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동 협의회 산하에 '현금 인프라', '현금 접근성', '현금사용선택권'의 3개 분과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화폐유통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와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15) 인구 십만명당 은행 지점 수는 수도권이 11.3개, 그 외 지역은 10.4개이고, 은행 ATM 수는 수도권이 75.1개, 그 외 지역은 64.0개로 나타났다(금융결제원 및 통계청, 2025년 말 기준).



표로 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와 7개국<sup>19)</sup> 중앙은행 및 민간 참가기관<sup>20)</sup>은 2026년 상반기 중 프로토타입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10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54~56p).**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 잠재력과 더불어, 민간 발행 확산에 따른 통화·외환 및 금융안정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 기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초기에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은행은 기존의 엄격한 자본·외환 규제를 받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 억제 및 통화정책과의 조화가 용이하다.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제도적 신뢰 확보를 담당하고, 빅테크 등 비은행은 활용사례 발굴 및 유통 채널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업권 간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제도 초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민간의 혁신성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도 필수적이다. 미국의

GENIUS Act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정 협의기구 설치를 통한 정책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1 한국은행은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해 QR 기반 지급서비스 연계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넥서스(Nexus) 참여도 검토할 계획이다(57~60p).**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QR 기반 지급서비스가 2026년 4월 개시되었다. 양국 국민들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상대국 방문 시 별도의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자국 결제 앱으로 QR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QR 연계는 QR 지급을 핵심 지급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책 흐름과 글로벌 인적 교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국 중앙은행은 2024년 7월 최종 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결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준비를 추진해 왔다. 2024년 9월에는 양국 소비자의 환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지통화 직거래(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 체제<sup>21)</sup>를 구축하였다.

동 서비스 도입으로 양국 방문객의 결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카드 수수료 절감 및 신속한 대금 정산을 통해 비용 부담과 결제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향후 베트남·싱가포

19) 미국, 프랑스(유로지역 대표), 영국, 일본, 스위스, 한국, 멕시코

20) 2024년 9월에 40여 개의 글로벌 민간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이 참가하고 있다.

21) 현지통화 직거래(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 체제 구축에 따라, 국내 지정 결제은행(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지정 결제은행에 루피아화로 경상거래에 대한 차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르 등 여타 아세안 국가로 QR 연계를 확대하고, 온라인 상거래로 활용 범위를 넓혀 우리 국민의 해외 결제 편의성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BIS와 아세안 역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신속지급시스템<sup>22)</sup> 연계 프로젝트인 넥서스(Nexus)<sup>23)</sup>의 참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넥서스는 참가국의 신속지급시스템을 단일 중계 플랫폼과 연계하여 소액 송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양자 간 연계 방식에 비해 효율성과 확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넥서스가 상용화될 경우 국가 간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 정보(proxy)를 활용함으로써 이용 편의성과 거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를 확정된 가운데, 넥서스 운영기관인 NGP(Nexus Global Payments)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22)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의미한다.

23) BIS CPMI는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자간 신속지급시스템 연계 프로젝트인 넥서스가 추진되고 있다.



---

# I

##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              |    |
|--------------|----|
| 1. 거액결제시스템   | 3  |
| 2. 소액결제시스템   | 8  |
|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10 |
| 4. 증권결제시스템   | 11 |



# 1. 거액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 (원화자금)

2025년 중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한 723.3조원을 기록하였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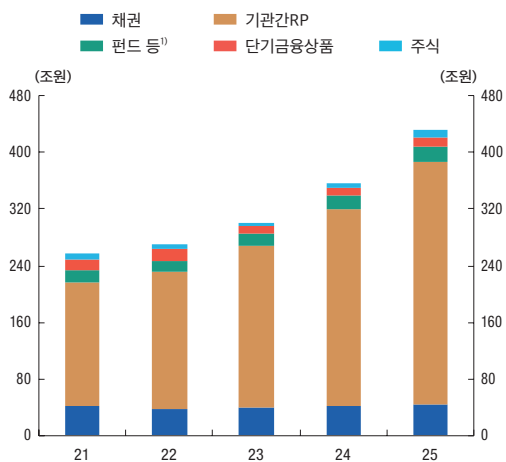
표 1-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규모(일평균)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원화자금 합계                           | 554.6 | 617.0 | 723.3 | 17.2 |
| 참가기관 간                            | 533.3 | 601.1 | 702.8 | 16.9 |
| 콜거래자금                             | 28.0  | 28.8  | 33.1  | 15.1 |
| 증권거래자금                            | 301.2 | 357.2 | 431.3 | 20.7 |
| 외환거래자금                            | 19.2  | 19.5  | 25.5  | 30.6 |
| 고객거래자금 <sup>1)</sup>              | 79.2  | 83.7  | 90.1  | 7.6  |
| 차액결제자금 <sup>2)</sup>              | 27.0  | 28.4  | 28.9  | 1.6  |
| 기타 <sup>3)</sup>                  | 78.8  | 83.5  | 94.0  | 12.5 |
|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sup>4)</sup>        | 21.3  | 15.9  | 20.5  | 29.4 |
| 외환거래자금 합계 <sup>5)</sup><br>(십억달러) | 1.2   | 1.2   | 1.2   | 3.8  |

주: 1)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거액의 자금  
 2) 소액결제에 따른 참가기관 간 채권·채무의 차액결제  
 3) 금융기관 본·지점 간 거래자금 등  
 4)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5) 예치 및 인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자금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33.1조원 수준이었다. 증권거래자금<sup>25)</sup> 결제금액은 431.3조원으로 기관간RP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0.7% 증가하였다.

그림 1-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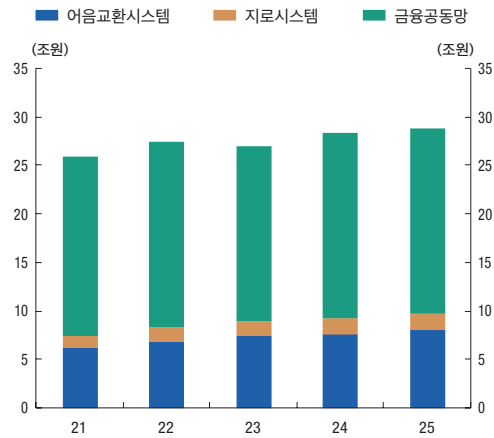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sup>26)</sup> 결제금액은 25.5조원으로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 자금이체와 CLS시스템을 이용한 결제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0.6% 증가하였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금액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28.9조원을 기록하였다.<sup>27)</sup>

24) 2025년 중 한은금융망의 결제 건수는 일평균 28,772건으로 전년(25,539건) 대비 12.7% 증가하였다. 2025년 말 기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수는 총 134개(은행 52, 비은행 82)이다.  
 25) 증권대금동시결제(DvP)와 분리결제 및 채권 원리금 상환 등의 부수 거래도 포함된다. 은행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채권 원리금 상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원리금 상환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회부해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괄 수령하고 동 자금을 한은금융망 및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개별 투자자 앞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26)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 것을 말하며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자금이체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인 CLS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로 구성된다.  
 27) 어음교환시스템과 지로시스템은 각각 일평균 5.0%, 5.8% 증가한 반면, 금융공동망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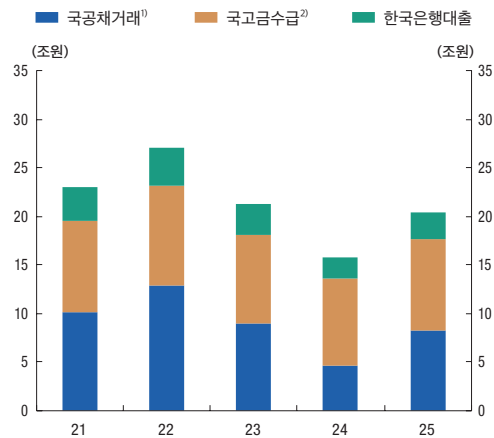
그림 1-2.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규모(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은 일평균 20.5조원으로 국공채 거래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다.

그림 1-3.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규모(일평균)



주: 1)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환매 포함)

주: 2)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세 수납 등)만 포함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금)

금융기관은 미 달러화, 엔화 등 외화표시 지급 준비금 적립 등을 위해 한국은행 외화예수금 계정에서 외화 이체, 예치 및 인출 거래를 수행한다. 2025년 중 일평균 외화자금 결제금액(예치 및 인출 포함)은 12.4억달러로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sup>28)</sup> 등에 따라 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표 1-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백만달러, %)

|    | 2022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이체 | 0.2     | 0.2     | 0.2     | 0.1     | -9.3 |
| 예치 | 823.7   | 583.3   | 593.1   | 629.2   | 6.1  |
| 인출 | 812.8   | 626.9   | 601.9   | 611.1   | 1.5  |
| 합계 | 1,636.6 | 1,210.4 | 1,195.2 | 1,240.5 | 3.8  |

자료: 한국은행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관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중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5조 1,275억 원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하였다.

표 1-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십억원, %)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일중당좌대출 <sup>1)</sup> | 841.9   | 1,278.1 | 1,538.5 | 20.4 |
| 일중RP                 | 2,501.0 | 3,040.9 | 3,589.1 | 18.0 |
| 합계                   | 3,342.9 | 4,319.0 | 5,127.5 | 18.7 |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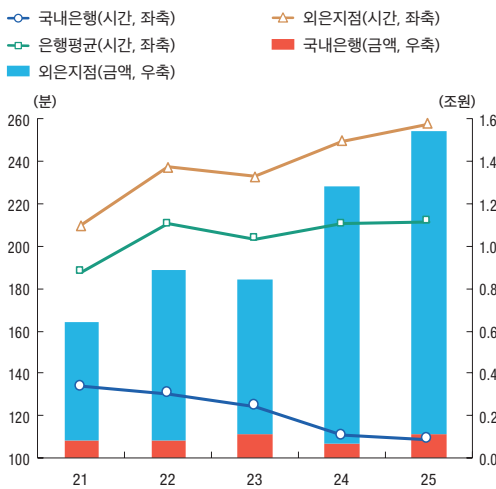
28) 2025년 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3억달러로 전년 말(1,013.0억달러) 대비 17.9% 증가하였다.

##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 중 참가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 5,385억원으로 전년대비 20.4% 증가하였다. 은행 그룹별로는 국내은행(1,068억원) 및 외은지점(1조 4,316억원)의 이용금액이 전년에 비해 각각 70.0%<sup>29)</sup> 및 17.8% 증가하였다.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은 전년과 비슷한 일평균 212분을 기록하였다. 은행 그룹별로는 국내은행(109분)의 이용시간이 전년대비 2분 줄어든 반면, 외은지점(258분)은 8분 늘어났다.

그림 1-4. 일중당좌대출 이용규모<sup>1)</sup> 및 시간<sup>2)</sup>(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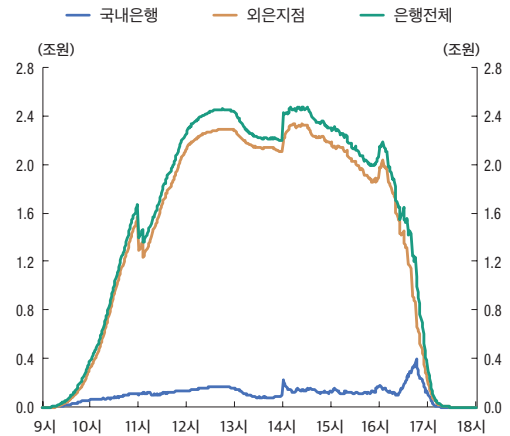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참가기관별 자금 공급시간의 합계 기준(예: 참가기관이 일중당좌대출을 11~12시, 14~15시에 이용한 경우 120분)

자료: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중 급격히 증가한 후 마감시간대인 16시부터 급격히 감소하며 전액 상환되었다. 한편 잔액의 일중 최고치(2조 4,694억원)는 전년(2조 1,507억원)에 비해 14.8% 증가<sup>30)</sup>하였다.

그림 1-5. 일중당좌대출 잔액<sup>1)</sup>(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의 분당 잔액

자료: 한국은행

## (일중RP)

일중RP제도는 자금결제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게 한국은행이 RP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 중 일평균 일중RP 이용규모는 장내국채 거래규모 증가<sup>31)</sup> 등으로 전년보다 18.0% 증가한 3조 5,891억원을 기록하였다.

29) 국내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직전 5개년 평균(955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30)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 증가에 따라 일중 잔액 최고치도 증가하였다.

31) 2025년 중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된 장내국채 거래규모는 4.9조원으로 전년(4.0조원) 대비 23.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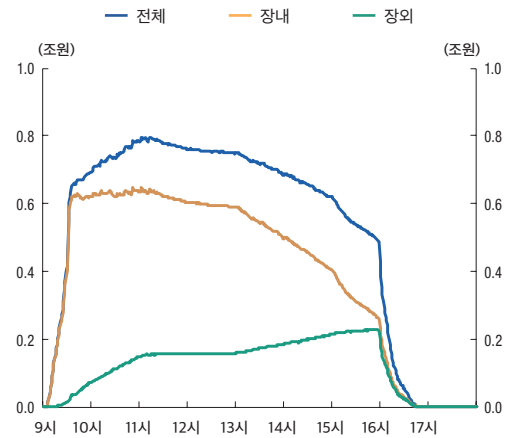
표 I-4. 일중RP 이용규모(일평균)

|                     | 2024    |       |         | 2025    |       |         | 증감률  |
|---------------------|---------|-------|---------|---------|-------|---------|------|
|                     | 장내      | 장외    | 계       | 장내      | 장외    | 계       |      |
| 한국거래소 <sup>1)</sup> | 1,983.2 | -     | 1,983.2 | 2,433.4 | -     | 2,433.4 | 22.7 |
| 금융투자회사              | 420.1   | 637.6 | 1,057.7 | 513.6   | 642.1 | 1,155.7 | 9.3  |
| 합계                  | 2,403.3 | 637.6 | 3,040.9 | 2,947.0 | 642.1 | 3,589.1 | 18.0 |

주: 1) 한국은행은 증권결제 원활화를 위해 국제전문유통시장(장내 국제시장)의 중앙거래당사자(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를 일중RP 대상기관으로 지정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이용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결제의 절반 이상이 오전 중 완료되는 장내 채권시장의 영향으로 오전 중 급격히 증가하여 11시 13분에 최고치(7,970억원)를 기록한 후 장내국채 결제시한인 16시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용잔액의 일중 최고치는 전년(6,886억원)에 비해 15.8% 증가<sup>32)</sup>하였다.

그림 I-6. 일중RP 잔액<sup>1)</sup>(일평균)

주: 1) 분당 순공급액(일중 누적공급액-누적상환액)

자료: 한국은행

## 결제리스크 관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sup>33)</sup>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sup>34)</sup>을 보면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관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비율은 4.3%로 전년(5.0%)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sup>35)</sup>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4.5%로 전년(22.7%)대비 소폭 상승<sup>36)</sup>하였다.

32) 일중RP 이용금액 증가에 따라 일중 잔액 최고치도 증가하였다.

33)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의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자금이체 신청을 대기파일에 수록하였다가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수취 등으로 당좌예금 잔액이 충분해지면 처리한다. 대기비율은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중 참가기관의 당좌예금 잔액 부족으로 지연 결제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34)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중당좌대출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적격담보를 납입한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자동 실행되고 있다.

35) 대기금액의 대부분은 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은행과 달리 지급준비금이 없어 결제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36) 외은지점의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표 1-5.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및 대기비율 추이  
(금액 기준)

(%)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일종당좌대출<br>최대소진율 <sup>1)</sup> | 20.3 | 23.0 | 20.9 | 22.7 | 24.5 |
| 대기비율 <sup>2)</sup>            | 3.7  | 4.1  | 4.9  | 5.0  | 4.3  |

주: 1) 참가기관 중 은행의 일별 순일종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종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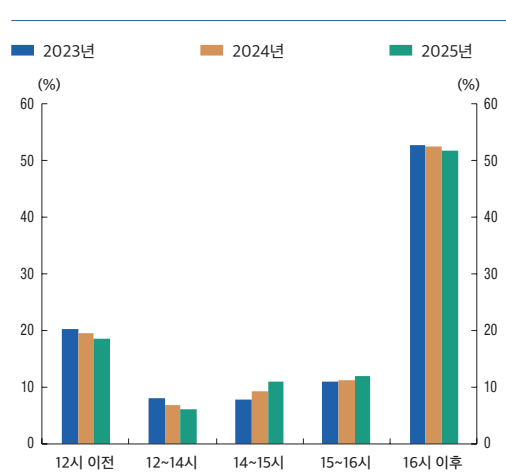
2) 전체 대기금액/총 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  
되는 거래 제외)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  
중률(금액 기준)은 52.0%로 전년(52.7%)과 비  
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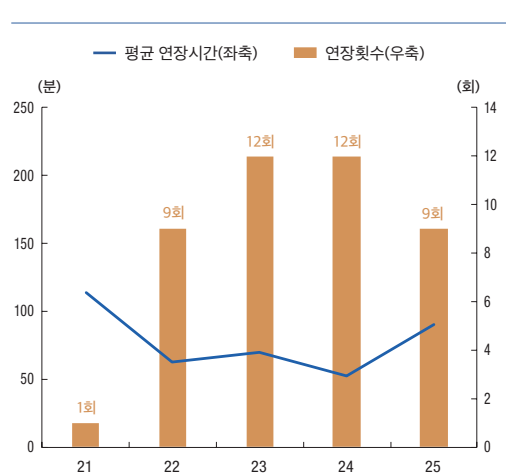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간이 연장된 횟수는 연중  
9회로 전년(12회)에 비해 감소하였다. 다만, 평  
균 연장시간은 90분으로 전년(52분)에 비해 증  
가하였다.<sup>37)</sup> 전산장애 등으로 한은금융망 연장을  
초래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  
라 주의환기 조치를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 마  
련 등을 권고하였다.

그림 1-7.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sup>1)</sup>(금액 기준)



주: 1) 각 시간대별 결제금액/총 결제금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1-8. 한은금융망 마감 연장횟수·평균 연장시간



자료: 한국은행

37) 2025년 10월 일부 참가기관의 전산장애로 인해 해당일 한은금융망을 270분 연장 운영한 데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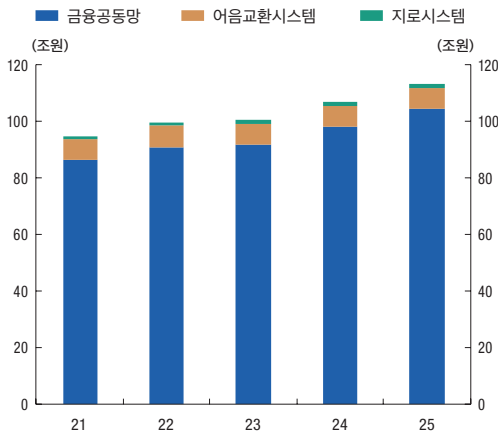
## 2. 소액결제시스템<sup>38)</sup>

### 결제 동향

2025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규모<sup>39)</sup>는 일평균 4,543만건, 112.8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1%, 5.9% 증가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별로 보면 금융공동망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4,101만건, 104.0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6.1% 증가하였다.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규모의 경우 일평균 이용건수는 7만건으로 전년대비 17.8% 감소한 반면 이용규모는 7.3조원으로 3.2% 증가하였다.<sup>40)</sup> 지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435만건, 1.4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 6.6% 증가하였다.

그림 1-9.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38) 금융결제원은 개별 소액지급시스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확인·중계,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2>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39) 금융공동망(타행 간 자금이체) 및 지로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규모를, 어음교환시스템의 경우 교환규모를 각각 의미한다.

40) 자세한 내용은 <참고 1-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1-6. 금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 건 수    | 금융공동망                 | 35,714  | 39,698  | 41,011  | 3.3   |
|        | (전자금융공동망)             | 23,938  | 26,362  | 27,684  | 5.0   |
|        | (타행환공동망)              | 231     | 222     | 214     | -3.6  |
|        | (오픈뱅킹공동망)             | 6,310   | 7,740   | 7,640   | -1.3  |
|        | (CD공동망)               | 892     | 821     | 750     | -8.7  |
|        | 어음교환시스템               | 114     | 84      | 69      | -17.8 |
|        | (자기앞수표)               | 110     | 80      | 66      | -18.2 |
|        | (어음 등 <sup>1)</sup> ) | 2.8     | 2.5     | 2.2     | -13.3 |
|        | 지로시스템                 | 4,050   | 4,269   | 4,351   | 1.9   |
|        | (일반이체)                | 560     | 765     | 815     | 6.5   |
| (자동이체) | 3,062                 | 3,062   | 3,071   | 0.3     |       |
| (대량지급) | 401                   | 420     | 447     | 6.5     |       |
| 합계     | 39,878                | 44,051  | 45,431  | 3.1     |       |
| 금액     | 금융공동망                 | 91,602  | 97,971  | 103,968 | 6.1   |
|        | (전자금융공동망)             | 84,283  | 90,383  | 96,435  | 6.7   |
|        | (타행환공동망)              | 4,622   | 4,611   | 4,506   | -2.3  |
|        | (오픈뱅킹공동망)             | 1,709   | 2,034   | 2,112   | 3.8   |
|        | (CD공동망)               | 514     | 462     | 415     | -10.2 |
|        | 어음교환시스템               | 7,232   | 7,119   | 7,345   | 3.2   |
|        | (자기앞수표)               | 846     | 672     | 557     | -17.2 |
|        | (어음 등 <sup>1)</sup> ) | 3,198   | 3,126   | 3,337   | 6.7   |
|        | 지로시스템                 | 1,237   | 1,353   | 1,442   | 6.6   |
|        | (일반이체)                | 439     | 520     | 560     | 7.6   |
| (자동이체) | 450                   | 462     | 479     | 3.5     |       |
| (대량지급) | 343                   | 365     | 400     | 9.5     |       |
| 합계     | 100,071               | 106,443 | 112,755 | 5.9     |       |

주: 1)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 결제리스크 관리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을 지정 시점에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설정규모는 2025년 말 기준 99.2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3.3% 증가하였다.

2025년 중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최대로진율(일평균)은 14.5%로 전년(16.7%)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6회로 전년(16회)보다 증가하였다.

참가기관들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담보제공비율)만큼의 증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은 담보제공비율 인상(90% → 100%)<sup>41)</sup> 등으로 전년 말 89.9조원에서 102.4조원으로 12.5조원 증가하였다.

표 1-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sup>1)</sup> 현황

(기말 기준, 조원, %)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은행 등 직접참가기관          | 91.8 | 90.6 | 93.1 | 2.7  |
| 위탁기관                 | 5.3  | 5.4  | 6.1  | 13.6 |
| 금융투자회사               | 2.2  | 2.4  | 2.5  | 6.0  |
| 서민금융기관 <sup>2)</sup> | 3.0  | 3.0  | 3.6  | 19.5 |
| 합계                   | 97.1 | 96.0 | 99.2 | 3.3  |

주: 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순이체액(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2)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탁중앙회,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자료: 한국은행

표 1-8. 순이체한도 이용 현황

(%, 회)

|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순이체한도 최대로진율 <sup>1)</sup> | 18.3 | 15.9 | 16.1 | 16.7 | 14.5 |
|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 상회횟수       | 171  | 80   | 39   | 16   | 36   |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로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41) 한국은행은 2025년 8월 1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기존의 9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외환결제는 CLS시스템<sup>42)</sup>,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은 2025년 중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06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CLS시스템 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sup>43)</sup>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sup>44)</sup>

#### 결제리스크 관리

2025년 중 매입통화와 매도통화 간 결제시점 불일치로 인한 외환결제리스크를 낮추는 외환동시결제 비중(73.2%)은 전년(76.5%)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하였다.

CLS시스템의 다자간 차감방식에 따른 금융기관의 원화 결제유동성 절감비율<sup>45)</sup>은 95.9%로 나타났다.

표 I-9. CLS시스템 결제규모<sup>1)</sup>(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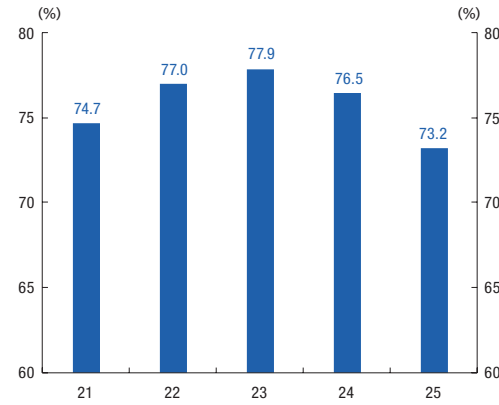
(십억달러, %)

| 2022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86.5 | 88.9 | 94.2 | 106.2 | 12.7 |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다자간 차감 전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0. CLS시스템 외환동시결제 비중<sup>1)2)</sup>(일평균)



주: 1) CLS결제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2)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42) CLS시스템은 시차로 인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통화를 지급받지 못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12시)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결제대상 외환거래로는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결제 중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CLS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3>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43) 2025년 말 기준 국내기관(국내은행 18개, 금융투자회사 14개 및 증권금융 1개), 외국기관(국내 소재 외은지점 19개 및 외국금융투자회사 지점 1개) 및 해외기관[해외 소재 외국기관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으로 구분하였다.

44) 그 다음으로 국내기관 간 결제(32.5%), 외국기관 간 결제(21.1%), 국내기관과 해외기관 간 결제(5.7%), 외국기관과 해외기관 간 결제(0.6%) 등의 순이었다.

45) 결제유동성 절감비율(%)=[1-(실제 납입액/총액기준 납입필요금액)]×100 = (유동성 절감액/총액기준 납입필요금액)×100

## 4. 증권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2025년 중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399.4조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하였다. 일평균 장내거래 결제규모는 주식 및 채권 거래 증가 등(각각 22.6% 및 19.2%)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4.4조원을 기록하였다. 일평균 장외거래 결제규모는 주식(26.5%), 기관간RP(23.5%) 및 단기금융상품(23.2%)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에 비해 22.6% 증가한 395.0조원을 기록하였다.

### 결제리스크 관리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sup>46)</sup>는 한은금융망과 증권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sup>47)</sup>(DvP) 운영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거래는 모두 기준시한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

기관간RP 및 장외채권 거래에서 대금지급과 증권인도를 동시에 처리해 결제리스크를 제거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I-10.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십억원, %)

| 구분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장내결제 | 주식                   | 685     | 887     | 1,088   | 22.6 |
|      | 채권 <sup>1)</sup>     | 2,475   | 2,582   | 3,078   | 19.2 |
|      | 파생금융상품               | 132     | 195     | 201     | 3.0  |
|      | 소계                   | 3,292   | 3,665   | 4,368   | 19.2 |
| 장외결제 | 주식 <sup>2)</sup>     | 844     | 1,086   | 1,374   | 26.5 |
|      | 채권 <sup>3)</sup>     | 10,551  | 11,699  | 12,868  | 10.0 |
|      | 기관간RP                | 233,102 | 286,554 | 353,924 | 23.5 |
|      | 단기금융상품 <sup>4)</sup> | 9,420   | 8,074   | 9,950   | 23.2 |
|      | 펀드 등 <sup>5)</sup>   | 10,931  | 14,663  | 16,862  | 15.0 |
|      | 파생금융상품 <sup>6)</sup> | 122     | 54      | 53      | -0.6 |
|      | 소계                   | 264,971 | 322,130 | 395,032 | 22.6 |
| 합계   | 268,263              | 325,795 | 399,399 | 22.6    |      |

주: 1) 국채(RP 포함) 및 일반채권 결제  
 2)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간 결제  
 3)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 연쇄결제는 동일한 증권이 여러 거래 당사자를 거쳐 순차적으로 매매되는 경우, 각 단계별 결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를 하나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  
 4) CD, CP, 전자단기사채의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5)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한매 대금  
 6) 한국거래소 청산 적격 IRS 결제금액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표 I-1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건)

| 구분          | 결제시한 <sup>1)</sup> | 기준시한 <sup>2)</sup> | 2023 | 2024 | 2025 |
|-------------|--------------------|--------------------|------|------|------|
| 장내주식        | 16:00              | 16:00              | 0    | 0    | 0    |
| 장내국채        | 16:00              | 17:00              | 0    | 0    | 0    |
| 주식<br>기관투자자 | 16:50              | 16:50              | 0    | 1    | 0    |

주: 1) 시스템 운영 규정상의 납부시점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자료: 한국은행

표 I-12. 장외시장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sup>1)2)</sup>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기관간RP | 94.1 | 94.5 | 95.7 | 95.9 | 94.6 |
| 장외채권  | 90.5 | 93.8 | 97.3 | 97.5 | 97.6 |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금액의 비중  
 2) 장외채권은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 포함(연쇄결제 차감 후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46) 증권결제 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47)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해 대금과 증권의 결제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결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업무이다.

## 참고 I-1.

###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 어음·수표

2025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전년대비 건수가 16.1% 감소한 반면, 금액은 10.7% 증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금융기관 간 거래 등에 사용되는 당좌수표 및 전자어음 이용규모가 각각 17.8%, 11.9%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 어음·수표 이용규모<sup>1)</sup>(일평균)

|                    |                    | (천건, 십억원, %) |        |        |       |
|--------------------|--------------------|--------------|--------|--------|-------|
|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건 수                | 자기앞수표              | 166          | 128    | 107    | -16.5 |
|                    | 정액권                | 134          | 103    | 84     | -18.2 |
|                    | (10만원권)            | 76           | 55     | 43     | -22.4 |
|                    | 비정액권               | 33           | 25     | 23     | -9.4  |
|                    | 어음 등 <sup>2)</sup> | 8.9          | 8.4    | 7.5    | -11.2 |
|                    | 당좌수표               | 0.4          | 0.4    | 0.3    | -14.9 |
|                    | 전자어음               | 5.9          | 5.7    | 5.1    | -10.5 |
|                    | 기타증서 <sup>3)</sup> | 1.6          | 1.5    | 1.4    | -5.1  |
|                    | 합 계                | 177          | 138    | 116    | -16.1 |
|                    | 금액                 | 자기앞수표        | 1,075  | 897    | 751   |
| 정액권                |                    | 65           | 53     | 45     | -14.3 |
| (10만원권)            |                    | 7.6          | 5.5    | 4.3    | -22.4 |
| 비정액권               |                    | 1,010        | 844    | 706    | -16.4 |
| 어음 등 <sup>2)</sup> |                    | 11,292       | 11,763 | 13,495 | 14.7  |
| 당좌수표               |                    | 6,610        | 6,728  | 7,925  | 17.8  |
| 전자어음               |                    | 2,127        | 2,374  | 2,656  | 11.9  |
| 기타증서 <sup>3)</sup> |                    | 3,188        | 3,321  | 3,451  | 3.9   |
| 합 계                |                    | 15,555       | 15,981 | 17,697 | 10.7  |

주: 1)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제시 금액, 창구제시 금액 및 전자어음 포함

2)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전자어음 포함

3) 우편환증서,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등

자료: 금융결제원

### 계좌이체

2025년 중 계좌이체 이용규모(일평균, 타행이체 기준, 한은금융망 제외)는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3.3%, 6.1% 증가하였다. 계좌이체 이용금액의 대부분(91.2%)을 차지하는 전자금융공동망 자금이체는 펌뱅크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다.

#### 계좌이체 이용규모(일평균)

|     |                        | (천건, 십억원, %) |        |         |      |
|-----|------------------------|--------------|--------|---------|------|
|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건 수 | 입금이체 <sup>1)</sup>     | 26,434       | 29,119 | 30,515  | 4.8  |
|     | 전자금융공동망 <sup>2)</sup>  | 23,938       | 26,362 | 27,684  | 5.0  |
|     | (인터넷뱅킹 <sup>3)</sup> ) | 13,639       | 15,136 | 16,152  | 6.7  |
|     | (펌뱅크 <sup>4)</sup> )   | 9,209        | 10,183 | 10,606  | 4.2  |
|     | 타행환공동망                 | 231          | 222    | 214     | -3.6 |
|     | 출금이체                   | 12,871       | 14,408 | 14,430  | 0.2  |
|     | 합 계                    | 39,305       | 43,526 | 44,945  | 3.3  |
| 금액  | 입금이체 <sup>1)</sup>     | 90,393       | 96,590 | 102,583 | 6.2  |
|     | 전자금융공동망 <sup>2)</sup>  | 84,283       | 90,383 | 96,435  | 6.7  |
|     | (인터넷뱅킹 <sup>3)</sup> ) | 39,521       | 43,585 | 45,372  | 4.1  |
|     | (펌뱅크 <sup>4)</sup> )   | 34,163       | 37,467 | 40,896  | 9.2  |
|     | 타행환공동망                 | 4,622        | 4,611  | 4,506   | -2.3 |
|     | 출금이체                   | 2,297        | 2,584  | 2,678   | 3.6  |
|     | 합 계                    | 92,690       | 99,174 | 105,261 | 6.1  |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타행이체 기준

3) 모바일뱅킹 포함

4)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용 금융거래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 지급카드

2025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3.2%, 4.3%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후불형은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2.1%, 4.1% 증가했고, 직불형은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각각 4.2%, 4.3% 증가하였다. 선불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등의 영향으로 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09.5% 및 77.7% 증가하였다.

###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sup>1)</sup>

(천건, 십억원, %)

|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건 수                  | 후불형(신용카드)            | 50,097    | 51,918 | 52,989 | 2.1   |
|                      | 직불형<br>(체크카드)        | 27,925    | 28,838 | 30,062 | 4.2   |
|                      | (현금카드) <sup>2)</sup> | 27,648    | 28,532 | 29,686 | 4.0   |
|                      | 선불형(선불카드)            | 276.8     | 306.5  | 375.7  | 22.6  |
|                      | 합 계                  | 78,379    | 81,058 | 83,684 | 3.2   |
|                      | 금액                   | 후불형(신용카드) | 2,780  | 2,894  | 3,012 |
| 직불형<br>(체크카드)        | 670                  | 695       | 725    | 4.3    |       |
| (현금카드) <sup>2)</sup> | 666                  | 690       | 718    | 4.1    |       |
| 선불형(선불카드)            | 4.5                  | 4.9       | 6.1    | 24.7   |       |
| 합 계                  | 9.7                  | 6.9       | 12.2   | 77.7   |       |
| 합 계                  | 3,460                | 3,596     | 3,749  | 4.3    |       |

주: 1) 개인 및 법인(국내외 가맹점) 기준  
 2) 직불카드 포함  
 자료: 전업카드사 및 경영은행, 금융결제원

지급방식별로는 대면과 비대면 이용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8% 및 6.4% 증가하였다. 대면 방식 중 실물카드 이용 방식은 감소 추세가 지속<sup>48)</sup>된 반면 모바일기기 등을 결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은 증가세가 유지<sup>49)</sup>되었다.

### 지급카드<sup>1)</sup> 지급방식별 금액(일평균)<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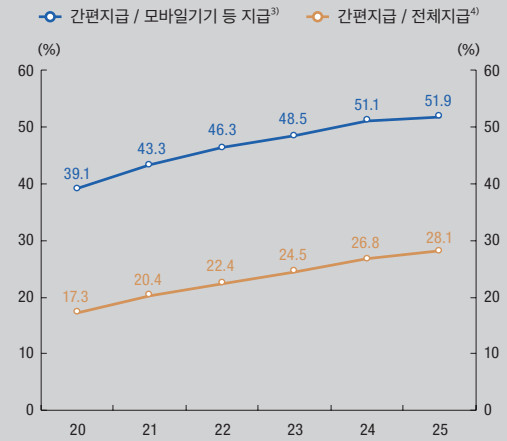
(십억원, %)

|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대면지급<br>(실물카드 제시) | 1,755 | 1,755 | 1,786 | 1.8  |
| (모바일 기기 등 이용)     | 1,443 | 1,411 | 1,405 | -0.4 |
| 비대면지급             | 311   | 345   | 381   | 10.5 |
| 합 계               | 1,163 | 1,210 | 1,287 | 6.4  |
| 합 계               | 2,917 | 2,966 | 3,074 | 3.6  |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자료: 전업카드사

한편 이용 편의성 등에 힘입어 카드기반 간편지급서비스가 전체 지급카드 이용금액과 모바일기기·PC 등을 통한 지급카드 이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카드기반 간편지급서비스 이용 비중<sup>1)2)</sup>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3) 모바일기기·PC 등을 통한 카드 지급액 중 간편지급 비중  
 4) 전체 카드 지급액 중 간편지급 비중  
 자료: 전업카드사

48) 실물카드를 통한 대면지급 이용금액(일평균) 증감률: 2023년 1.9% → 2024년 -2.3% → 2025년 -0.4%

49)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대면지급 이용금액(일평균) 증감률: 2023년 35.7% → 2024년 10.7% → 2025년 10.5%



---

## Ⅱ

# 지급결제제도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

1.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2.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17  
23



## 1.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을 2026년 3월 30일부터 2시간 30분 늘려 기존 9시 ~ 17시 30분에서 9시 ~ 20시로 확대하였다.

표 II-1.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 이력

| 연장일        | 운영시간        | 연장사항            |
|------------|-------------|-----------------|
| 1994.12.15 | 09:30~16:30 | -               |
| 1999.1.15  | 09:30~17:00 | 마감시각 30분 연장     |
| 2008.11.3  | 09:30~17:30 | 마감시각 30분 연장     |
| 2009.4.1   | 09:00~17:30 | 개시시간 30분 조기화    |
| 2026.3.30  | 09:00~20:00 | 마감시각 2시간 30분 연장 |

자료: 한국은행

### (확대 필요성)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도입<sup>50)</sup>,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sup>51)</sup> 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발맞춰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가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국가 간 시차에서 비롯한 원화 결제의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확대하면 주요국 결제시스템 운영시간과의 중첩시간이 늘어나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다. 종전 한은금융망은 주요국에 비해 운영시간이 짧은 편이어서 주요국 운영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는 국가 간 송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종전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은 총 8시간 30분으로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 국가들의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으나, 이번 조치로 운영시간이 총 11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sup>52)</sup>

그림 II-1. WGBI 편입국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 국 가   | 운영시간                |
|-------|---------------------|
| 멕시코   | 24시간                |
| 뉴질랜드  | 23시간30분 09:00~08:30 |
| 미국    | 22시간 21:00~19:00    |
| 중국    | 20시간45분 20:30~17:15 |
| 캐나다   | 18시간30분 00:30~19:00 |
| EU    | 15시간30분 02:30~18:00 |
| 호주    | 14시간30분 07:30~22:00 |
| 말레이시아 | 13시간 08:00~21:00    |
| 일본    | 12시간30분 08:30~21:00 |
| 영국    | 12시간 06:00~18:00    |
| 노르웨이  | 11시간5분 05:30~16:35  |
| 대한민국  | 11시간 09:00~20:00    |
| 스웨덴   | 11시간 07:00~18:00    |
| 이스라엘  | 11시간 07:45~18:45    |
| 폴란드   | 10시간30분 07:30~18:00 |
| 덴마크   | 10시간 07:00~17:00    |
| 싱가포르  | 10시간 09:00~19:00    |

자료: 각국 중앙은행

한편 BIS에서도 2022년 5월 각국 거액결제시스템의 중첩시간대를 확대하여<sup>53)</sup>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BIS는 국제 공통결제시간대를 정하고 각국의

50) 2024년 2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제도가 도입되었다. RFI란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51) 2024년 7월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기존 9시 ~ 15시 30분에서 9시 ~ 익일 2시로 연장되었다.

52) 미국(5영업일, 22시간), 영국(5영업일, 12시간), EU(5영업일, 15.5시간)는 향후 연중무휴(24/7)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가적인 운영시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53) 자세한 사항은 「Extending and aligning payment system operating hours for cross-border payments」(BIS, 2022.5월)를 참고하기 바란다.

거액결제시스템이 동 시간대에 운영되도록 하고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통결제 시간대는 국제표준시(GMT, Greenwich Mean Time) 기준으로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로,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서 오후 8시이다. 이번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로 BIS의 국제 공통 결제시간대 제안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 확대 세부 내용 )

한은금융망은 업무의 특성과 운영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연계결제<sup>54)</sup>, 수취인지정자금이체<sup>55)</sup>, 외환동시결제<sup>56)</sup>(CLS) 등 단위 업무별로 마감시각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도 단위 업무별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였다. 예컨대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결제 원활화를 위해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연장한 반면, 외환동시결제 마감시각은 그대로 유지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외화자금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관간RP의 경우 마감시각 연장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운영시간을 늘릴 경우 마감시간대 결제가 집중되어 한은금융망의 운영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표 II-2. 세부업무별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변경

| 업무                    | 변경전                        | 변경후   |
|-----------------------|----------------------------|-------|
| 차액결제(원화 및 외화)         | 11:00                      | 변경없음  |
| 국제발행대금 입금             | 15:50                      |       |
| 국고금 납부 당좌차기           | 16:00                      |       |
| 외화자금 예치 및 인출          | 16:00                      |       |
| 일중RP 공급               | 16:00                      |       |
| 한국은행RP 결제             | 17:20                      |       |
| 기관간R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 17:20                      |       |
| 외화자금 이체               | 17:30                      |       |
| CLS 결제                | 하절기 : 17:30<br>동절기 : 18:30 |       |
|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 간 연계결제 | 17:00                      |       |
| 수취인지정자금이체             | 17:00                      | 19:50 |
| 일중RP 상환               | 17:05                      | 19:35 |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 17:20                      | 19:50 |
| 한은금융망 자금이체(원화)        | 17:30                      | 20:00 |
| 일중당좌대출 공급             | 17:30                      | 20:00 |
| 일중당좌대출 상환             | 17:50                      | 20:20 |
| 자금조정대출 신청             | 18:00                      | 20:30 |
| 자금조정예금 입출금            | 18:00                      | 20:30 |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의 정책효과와 더불어 참가기관의 인력운용 및 업무부담 가중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함께 고민하였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마감이원화<sup>57)</sup>, 담보납입시간 연장<sup>58)</sup>,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업무 효율화<sup>59)</sup>, 한은금융망 업무담당자 관리방식 개선<sup>60)</sup>, 지급준비금 보고

54)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신청된 이체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한은금융망과 연계하여 이체은행과 수취은행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 총액결제하는 업무이다.

55) 기업 및 개인고객의 거액 자금이체를 실시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56) 자세한 내용은 「1.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참조하기 바란다.

57) 참가기관이 자체적인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마감과 조기마감 중 마감시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8) 일중당좌대출 및 순이체한도 증액을 위한 담보납입 가능시각을 기존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였다.

59) 차액결제리스크 담보납입 정보 입력항목을 간소화하고 입력방식을 효율화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60)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 업무 담당자 신규 등록 및 변경 시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참가기관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 제출시한 연장<sup>61)</sup> 등 5가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이 중 담보납입시간 연장, 지급준비금 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과 함께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보완대책은 관련 제도 및 IT시스템 변경을 통해 별도 시행할 계획이다.

## 역외 원화결제시스템(가칭) 구축 추진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거래 편의성과 국내 지급결제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런던·뉴욕 등 주요 금융시장 운영시간에도 원화결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국 지수 편입<sup>62)</sup>을 뒷받침<sup>63)</sup>하면서 원화 및 국내 결제 인프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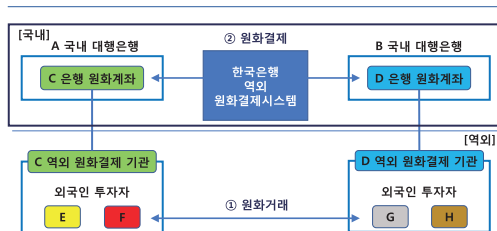
### (국가 간 지급의 편의성 제고)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은 국가 간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을 채용할 계획이다. 표준화된 전문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역외 원화결제 기관-국내 대행은행 간 지급지시가 일관처리(STP, Straight-Through Processing) 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 데이터 호환성 및 해외 인프라와

의 연계 운용 용이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동 시스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역외 원화결제 기관<sup>64)</sup>이 국내 대행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를 결제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급지시는 역외 원화결제 기관을 거쳐 직접 참가기관인 국내 대행은행으로 전달되며, 해당 대행은행은 한국은행에 개설하는 당좌계좌에서 최종 수취인의 국내 대행은행 당좌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가 서로 역외 원화결제 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원화를 거래·보유·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체계상 원화자금 예치·처분사유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림 II-2.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결제 구조



자료: 한국은행

### (시스템 구축 내용)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은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을 채택하여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용·유

61)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일일보고 제출기한을 당일에서 익영업일 오전 중으로 연장하였다.

62) MSCI는 2025년 6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63)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외환시장 연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2026년 1월 발표하였다.

64) 등록제로 운영하되, 시장 참여도가 우수한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참가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에 비해 RTGS 방식은 즉시 최종 결제가 이루어져 결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동 시스템은 기존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과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134개)이 참여 중인 한은금융망의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양 시스템 간 상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당좌계좌에 예치된 잔액은 전액 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참가기관의 지급준비금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시간대 원화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각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 한은금융망 당좌계좌와 상호 이체를 통해<sup>65)</sup>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

### (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은 2025년 11월 구축계획 수립, 2026년 1월 개발사업자 선정 및 세부 업무 정의에 이어 현재 전문 및 참가기관 간 연계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향후 한국은행 내부 시스템 개편과 전문 송수신 테스트 등을 거쳐 2027년 정식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시간 운영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장애대응 체계를 면밀히 갖추도록 참가기관에 요구하는 한편, 연계 테스트 수행 및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등 재해·장

에 대응체계 정비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표 II-3.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 일정

| 주요 내용         | 추진 시기      |
|---------------|------------|
| 구축 계획 수립      | 2025.11월   |
| 구축 사업자 선정     | 2026.1월    |
| 시스템 세부 요건 정의  | 2026.1월    |
| 표준 전문 개발      | 2026.1월~6월 |
| 법·제도 정비       | 2026.1월~6월 |
| 한국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 2026.1월~8월 |
| 전문 송수신 테스트    | 2026.7월~8월 |
| 정식 운영         | 2027년      |

자료: 한국은행

65) 현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 내에 일반당좌계좌와 결제전용당좌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종류의 당좌계좌 모두 새롭게 도입될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내 당좌계좌와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할 예정이다.

##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 ( ISO 20022 도입 배경 )

글로벌 교역 및 자본이동 확대에 대응하여 G20은 2020년 2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협력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BI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관련 이행방안<sup>66)</sup>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국들은 그 주요 실천과제 중 하나인 ISO 20022를 도입하고 있다. ISO 20022는 표준화되고 확장성 높은 전문체계<sup>67)</sup>를 바탕으로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심사의 정교화 및 기업의 무역·금융 업무 간 유기적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 ( 한은금융망 ISO 20022 도입 추진 경과 )

한국은행은 2022년 「한은금융망 ISO 20022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은금융망 핵심자금이체 부문<sup>68)</sup>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차 전문 개발에 이어 2024년에는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의 ISO

20022 공통 요구사항<sup>69)</sup>을 반영한 전문 수정 및 추가 개발을 통해 총 29종의 전문을 완성하고 「한은금융망 ISO 20022 도입해설서」를 제작, 참가기관에 배포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ISO 20022를 한은금융망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였다.

2025년에는 ISO 20022 기반 전문 생성, 데이터 송수신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ISO 20022 서버접속 개발가이드」를 마련하여 응용 시스템 개발, 인프라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새로운 전문 구조와 국제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업무프로세스의 변경도 병행하였다.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ISO 20022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여 본격적인 연계테스트 시작에 앞서 각 기관이 작성한 개별 전문의 형식과 항목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 10월부터 서버접속기관을 대상으로 ISO 20022 도입 대상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2026년 들어서는 단말접속기관을 포함한 전체 참가기관이 참여하는 종합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운영환경에 준하는 조건에서 전문 송수신, 일중업무처리 절

66)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준수, 외환통시결제 활성화, 지급결제시스템 국가 간 연계 추진, ISO 20022 도입 등 19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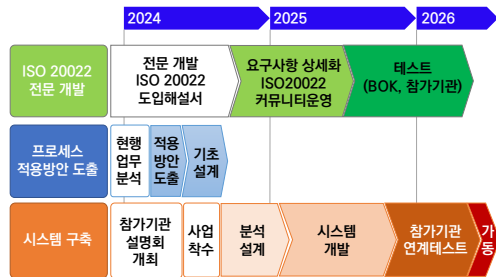
67) 전문(message)이란 금융거래 시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일정한 구조와 규칙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거래일시, 금액, 참가기관 정보 등이 포함된다.

68) 현재 일반자금이체, 수취인지정자금이체, CLS결제 등 핵심자금이체 부문과 거래집계·대사 등 일부 일중 운영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콜거래, 증권대금이체(DvP) 등의 업무는 핵심자금이체 부문 도입 사업이 완료된 이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69) 여러 국가들이 지급결제인프라에 ISO 20022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고유한 지급결제 여건, 업무처리방식 등으로 상이한 전문양식을 사용하거나 필수항목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BIS CPMI에서는 2023년 10월 국가 간 지급 업무에 쓰는 ISO 20022 전문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각 회원국들에게 2027년까지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차, 재해복구절차, 데이터 정합성 등을 검증하였다. 한국은행은 종합테스트와 최종 이행 점검 및 준비과정을 거친 후 2026년 2/4분기 중 ISO 20022를 실제 적용한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다.

그림 II-3. 한은금융망 ISO 20022 도입 사업 추진 일정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의 ISO 20022 도입은 한국은행과 참가기관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대규모 공동 사업으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은 원활한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위해 ISO 20022 도입 TF와 실무협의체 등 상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수시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참가기관의 사업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ISO 20022 도입의 근본 취지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는 만큼, 국제 논의 동향과 최신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은행은 2024년 6월부터 거액결제 인프라 협의체인 HVPS+ (High Value Payment Systems Plus)에 참여하여 주요 논의 결과 및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한은금융망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 중 한국은행은 BIS CPMI 회의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 자산 토큰화(tokenization)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ISO 20022 표준화를 통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로드맵 이행 방안 등을 각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FSB의 국가 간 지급 데이터 포럼(Cross-border Payments Data Forum)에 참여해 데이터 프레임워크<sup>70)</sup> 표준화, 사기 및 금융범죄 예방 사례 등을 논의하였다.

SWIFT가 주최하는 SIBOS(SWIFT International Banking Operations Seminar)에서는 디지털 자산 등장에 따른 지급결제의 상호 운용성 증대 방안, 자금세탁방지(AML) 방안,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 속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되었다. 한국은행도 이슈 토론 및 면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이 추진될 SWIFT Digital Initiative<sup>71)</sup>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지급 및 시장인프라 실무그룹(WGPMI)에서는 각국의 지급결제 제도 개편 동향, 지급결제 사기 방지 방안 및 각국 규제현황 서베이 결과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제5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간 지급 속도와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림 II-4. 제51차 EMEAP WGPMI 회의 서울 개최



자료: 한국은행

또한, 2025년 5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헝가리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추진 노력을 중심으로 미래 비전과 혁신 전략을 소개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70) 데이터처리 및 국가 간 전송 허용 요건, 규제 목적상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 종류, 데이터 보안 방식, 국제결제에 수반되어야 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는 기술 표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71) 기존 SWIFT 메시징 인프라를 기반으로, 토큰화 자산과 디지털화폐의 발행·이전·결제가 이루어지는 여러 분산원장과 기존 금융시스템 간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 참고 II-1.

###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IT시스템 다중화 사례

최근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장애로 대국민 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IT시스템의 복원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최근 3년간(2022~2024년)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장애 발생 사례

| 국가 | 발생일시       | 전산장애 내용   | 주요 요인                           |
|----|------------|---|---------------------------------|
| 영국 | 2024.7.18  | CHAPS <sup>1)</sup> 245분간 중단  | SWIFT의 전문중계 서비스 오류              |
| 일본 | 2023.10.10 | Zengin System <sup>2)</sup> 2일간 중단  | 수수료 입력 소프트웨어 오류                 |
| 호주 | 2022.10.12 | FSS <sup>3)</sup> 272분 중단<br>LVCS <sup>4)</sup> , LVSS <sup>4)</sup> 각각 325분, 349분 중단 | IT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가상서버 프로그램 설정 오류 |

주: 1)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기반 거액결제시스템(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2) 전국은행지급결제네트워크(The Japanese Banks' Payment Clearing Network, Zengin-Net)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3) 호주중앙은행이 운영하는 RTGS기반 신속결제시스템(Fast Settlement Service)

4) 호주중앙은행 및 호주지급결제협회(AusPayNet)에서 운영하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Low-Value Clearing Service, Low-Value Settlement Service)

자료: 한국은행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주로 가상자산 분야에서 활용되던 분산원장기술<sup>72)</sup>을 지급결제 관련 IT시스템 다중화에 응용하여 복원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IT시스템을 3개 이상의 IT센터에 분산 구축하고

합의 알고리즘<sup>73)</sup>을 적용, 실시간 동시운영(Active-Active)함으로써 특정 IT센터의 장애 발생 시에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다수의 IT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ECB TIPS<sup>74)</sup>

유럽중앙은행(ECB)의 TIPS를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로마에 3개의 IT센터를 구축하였는데, 이들 IT센터는 동시에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각 IT센터는 삼중화된 분산식 구조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며 1개의 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2개의 IT센터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다. 실제로 2023년 5월 통신사의 서비스 장애로 1센터와 3센터 간 네트워크 연결이 중단되었으나 TIPS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바 있다.

또한 TIPS는 3개의 IT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주IT운영센터에만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IT센터는 원격으로 관리하는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있다.

또한 TIPS는 담당자가 보안프로그램을 탑재한 전용 노트북을 통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TIP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 및

72) 주IT센터와 부IT센터를 구분하는 방식인 기존 중앙처리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수의 주IT센터가 모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존 중앙처리 방식에서는 주IT센터 장애를 복구하거나 부IT센터로의 전환 등을 결정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동 기술을 적용 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여타 주IT센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도 장애에 대응이 가능하다.

73) 주IT센터와 다수의 부IT센터 중 일부 IT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사전에 정해 놓은 정족수 이상의 IT센터가 정상 작동 시 미리 설정한 알고리즘(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IT센터를 중단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74) TIPS(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는 ECB가 운영하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기반의 신속지급(Fast Payment)시스템을 의미한다.

휴일 근무 인력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모니터링과 비상시 상황 전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미 연준 FedNow<sup>75)</sup>

미 연준은 FedNow 구축 시 ECB TIPS의 분산시스템 설계 구조를 참고하여 아마존이 운영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sup>76)</sup>(AWS GovCloud)를 기반으로 6개의 IT센터를 구축하였다.

FedNow는 일부 IT센터가 중단되더라도 여타 IT센터 간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중단 없이 운영되고 미국 동부 및 서부에 IT센터를 각각 3개씩 분산 배치하여 광역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FedNow의 IT인프라 관리는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이 수행하고 있으며, 원격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시사점

지난 2025년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재해 발생 시 업무 전환 및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적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이는 재해복구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급결제시스템도 재해 발생 시 금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ECB, 미 연준 등 사례를 참고하여 재해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75) FedNow는 미 연준이 운영하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신속지급시스템을 의미한다.

76) AWS GovCloud(Amazon Web Services GovCloud)는 아마존이 미국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각 기관의 규제 준수 사항에 맞게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며 동 서비스의 관리 권한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참고 II-2.

### 국제사회의 FMI 일반사업리스크 관련 추가지침 제정 추진

#### 추가지침 제정 배경 및 경과

BIS CPMI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24년 6월 전 회원국(27개국 34개 FMI)을 대상으로 금융 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의 일반사업리스크<sup>77)</sup>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sup>78)</sup> 그 결과, 중대한 우려사항(6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개선 필요사항<sup>79)</sup>이 발견되었다. 특히 다수의 FMI에서 신용·유동성 리스크에 비해 일반사업리스크 식별이 불완전하거나, 유동성 순자산(LNAFE, Liquid Net Assets Funded by Equity)을 과소 보유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FMI 간 리스크 이해도의 격차를 줄이고 관리 수준의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추가지침 마련 논의가 병행되었다.

#### 일반사업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중대한 우려사항 (6개) | 일부 FMI들은 일반사업리스크의 종류와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6개월 운영비용만을 고려하여 필요 LNAFE 규모를 산정하는 등 적정 규모 대비 과소 보유 |
|               | 일부 FMI들은 일반사업손실 발생 후 손실복구 및 청산계획 실행 시 발생 가능한 비용을 필요 LNAFE 규모에 미반영                            |
|               | 소수 FMI들은 참가기관 채무불이행 대비용 자산(CCP 결제이행채권 등) 또는 여타 리스크 대비용 자산을 LNAFE에 중복하여 반영                    |
|               | 소수 FMI들은 손실복구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아 일반사업손실 발생 시 복구계획이 부재   |
| 우려사항 (1개)     | 일부 FMI는 일반사업손실 발생 상황을 가정한 청산계획 자체가 없음  |
|               | 일부 FMI들은 일반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추가 필요자원을 최대주주의 자발적 지원에 의존하는 등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명문화하여 유지하고 있지 않음            |
| 관찰사항 (13개)    | 일부 FMI는 법률·운영·투자·커스터디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일반사업손실 범위에 미포함   |
|               | FMI 간 LNAFE 정의 및 검토절차가 상이하거나 복구계획 실행요건이 명확하지 않는 등 FMI의 복원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관찰사항들이 다수 발견   |

자료: BIS CPMI-IOSCO

#### 추가지침 주요내용

CPMI-IOSCO는 2025년 11월 평가결과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침을 보완하는 「FMI 일반사업리스크 및 손실관리 추가지침」(이하 ‘추가지침’)<sup>80)</sup>을 마련하였다. 추가지침은 현재 협의 보고서 (consultative report) 단계이며, 추후 최종안이 확정

77) CPMI-IOSCO는 2012년 발표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에서 일반사업리스크(원칙15)를 FMI의 지급·청산·결제 업무 외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으로 정의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일반사업리스크 식별, 손실복구계획의 실행요건 등 기존 원칙15를 보완하는 「FMI 손실복구지침」을 추가로 발간하였다.

78) 「Implementation monitoring of the PFMI: Level 3 assessment on general business risks」(CPMI-IOSCO, 2025.11월)

79) CPMI-IOSCO는 ‘중대한 우려사항’(serious issue of concern)을 우려사항 중 중대성이 높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빠른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려사항’(issue of concern)을 FMI의 이행결과가 PFMI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찰사항’(observation)을 PFMI 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FMI 간 상이한 접근법으로 FMI의 복원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80) 「FMI’s management of general business risks and general business losses: Further guidance to the PFMI」(CPMI-IOSCO, 2025.11월)

될 예정이다.

추가지침은 구체적으로 ① 일반사업리스크 범위 및 타 원칙 간 관계, ② 리스크의 식별·모니터링 및 관리, ③ LNAFE 규모 산정 방식, ④ 지배체계 및 투명성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번 추가지침은 일반사업리스크를 타 원칙들과 연계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의 통합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본 보유 기준에 실제 복구·청산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유동자산의 질적 평가와 KRI(Key Risk Indicator)를 활용한 상시 점검을 명시함으로써, FMI의 재무적 회복력을 실무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FMI가 일반사업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식별·관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사업리스크 관련 추가지침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① 리스크 범위 및 타 원칙 간 관계 | 기존 PFMI의 법률(원칙2), 투자·커스터디(원칙16), 운영(원칙17) 리스크 등 타 원칙과 관련된 재무손실도 일반사업리스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br>원칙15 외에도 지배구조(원칙2), 종합적 리스크관리(원칙3), 공시 및 투명성(원칙23) 등 PFMI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 |
| ② 리스크의 식별·모니터링 및 관리  | 포괄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 일반사업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외부 요인을 식별해야 함<br>정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KRI와 손실복구 및 청산계획 실행을 위한 정량·정성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
| ③ LNAFE 규모 산정 방식     | 유동자산의 적시 사용 가능성을 시가평가, 헤어컷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br>기존 원칙15의 6개월 영업비용과 손실복구·청산계획 실행비용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필요한 LNAFE 규모로 산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                            |
| ④ 지배체계 및 투명성         | 일반사업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재강조<br>이해관계자(참가기관, 연계 FMI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 요구<br>관련 정보의 충분한 공개를 요구   |

자료: BIS CPMI-IOSCO



---

# Ⅲ

##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

|                                 |    |
|---------------------------------|----|
| 1. 거래·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 31 |
| 2.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제고 노력        | 33 |
| 3.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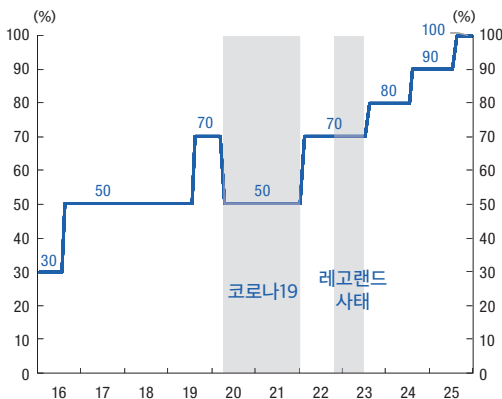


#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에서 마련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은 금융시장인프라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신용리스크를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참가기관들이 타 참가기관 앞 선지급할 수 있는 순이체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를 납입토록 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통제하는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PFMI 권고에 따라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대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sup>81)</sup>하여 2025년 8월 최종 목표인 100%에 도달하였다.<sup>82)</sup>

그림 III-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sup>1)</sup>



주: 1) (담보인정금액/순이체한도) x 100  
자료: 한국은행

이로써 순이체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기확보한 담보 처분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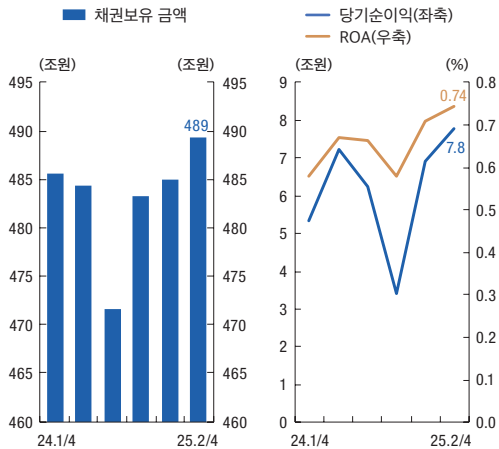
한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의 인상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추가적인 담보 납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추가 담보 납입 여력을 점검하였다. 2025년 2/4분기 말 기준 참가기관의 채권 보유 규모는 489조원이었다. 이 중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에 차액결제이행용 및 대출용 담보증권, RP 매매 대상 증권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증권 규모는 154조원이었다.

당시 참가기관이 담보제공비율 100%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규모는 7조원으로, 참가기관의 채권 보유 규모를 감안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참가기관의 수익성도 2025년 2/4분기 중 당기순이익이 7.8조원에 이르는 등 양호한 수준이어서 참가기관의 담보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5년 중 순이체한도 최소소진율은 일평균 2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81)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담보제공비율을 일시 인하하거나 인상 일정을 유예한 바 있다.

82) 한편,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 및 조기 안착 과정에서 원화 결제자금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금년 3월 말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국내 수탁은행 등 일부 참가기관에 대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80%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림 III-2. 국내은행의 채권보유 금액<sup>1)</sup> 및 수익성

주: 1) 신탁계정 제외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은행의 업무수행

한국은행은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반을 신설하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sup>83)</sup> 등을 이용하여 상시감시업무, 가상자산시장 조사연구 및 리스크 분석 등을 수행하는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정부·국회 등과 소통하였다.

향후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83)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2. 국내 금융시장인프라<sup>84)</sup>의 안전성 제고 노력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개선 권고<sup>85)</sup>

한국은행은 2025년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및 기관간RP 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24개 원칙 중 해당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9개 원칙과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복원력 지침」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증권결제 및 리스크관리 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평가 결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반적으로 PFMI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배구조, 신용리스크, 보관 및 투자리스크,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우선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증권대차거래로 수취한 담보에 적용되는 헤어컷 비율에 대해 별도 조직이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운용회사 선정 요건에 유동성 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보관 및 투자리스크 관리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및 프로젝트 관리 등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표준 및 지침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CSA(Risk and Control Self-Assessment)<sup>86)</sup> 등 리스크 관리 핵심 요소에 대한 내부 감사부서의 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 전반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6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진행 중이다.

표 III-1. 2025년 중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내용

| 평가대상  | 주요 개선권고내용   |
|---|---|
| <한국예탁결제원><br>채권기관투자자<br>결제시스템<br>기관간RP<br>결제시스템 | · 리스크관리위원회 지배구조 개선<br>· 증권대차거래 관련 담보 헤어컷 비율 검증 절차 개선<br>· 자금운용회사 선정 시 유동성지표 반영<br>· 외부 인증 획득을 통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유효성 제고<br>·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점검·개선 검토 |

자료: 한국은행

84)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4> '금융시장인프라'를 참조하기 바란다.

85)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5>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참조하기 바란다.

86) RCSA(리스크 및 통제 자기평가)는 조직이 주요 리스크와 관련 통제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내부통제 기법을 의미한다.

## 은행·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25년 중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3개 국내은행에 대해 일중 유동성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지급결제 관련 규정 준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등 지급결제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2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금이체업무 수행상황, 결제유동성 관리실태 및 IT 운영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표 III-2. 2025년 중 지급결제 부문 공동검사 내용

| 대상기관 | 검사기간                  | 주요 검사내용  |
|------|-----------------------|--|
| 부산은행 | 4.3~4.8<br>(4영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중 유동성 관리</li> <li>차액결제리스크 관리</li> <li>지급결제 관련 규정 준수 등</li> </ul> |
| 신한은행 | 5.12~5.15<br>(4영업일)   |  |
| 하나은행 | 11.10~11.13<br>(3영업일) |  |
| 대신증권 | 6.16~6.27<br>(10영업일)  |  |
| 하나증권 | 12.11~12.19<br>(7영업일) |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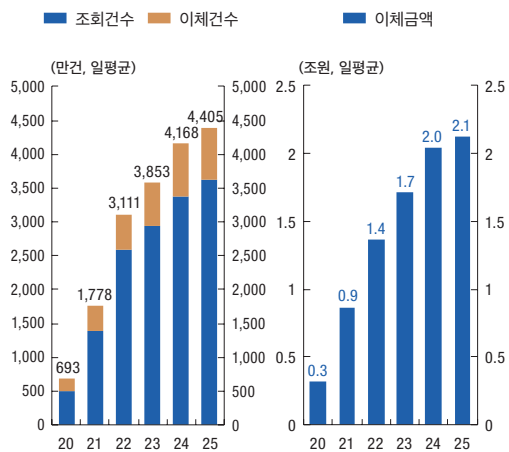
점검 결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련 모니터링 및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운용 계획 등 유동성 관리체계가 대체로 적정했으며, IT 운영리스크·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적절히 수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지급결제 관련 장애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RP형 CMA 결제유동성 관리체계, 스트레스테스트 방식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 주요 금융시장인프라의 제도 개선 조치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2019년 12월부터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고객정보에 접근하여 조회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뱅킹공동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중 오픈뱅킹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4,405만건(조회 3,641만건, 이체 764만건), 일평균 이체금액은 2.1조원 수준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림 III-3. 오픈뱅킹 이용실적



자료: 금융결제원

한편, 2025년 11월에는 오픈뱅킹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오픈뱅킹을 은행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채널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 고객이 은행의 영업점<sup>87)</sup>에서 타 은행에 보유한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소외계층의

87) 현재 11개 은행(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기업,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의 영업점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중 3개 은행(수협, 산업, 제주)의 영업점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고객이 선택한 금융기관의 오픈뱅킹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에 로그인하여 오픈뱅킹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 조회 및 출금이 차단된다. 이 조치는 오픈뱅킹 거래의 편의성이 제3자에 의해 악용되어 계좌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되거나 이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025년 6월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자체 야간거래 시행<sup>88)</sup>에 따라 증거금 산출시점 및 예탁시한을 변경하였다. 증거금 산출횟수를 기존 일 회(정규거래 종료 후)에서 일 회(정규 및 야간거래 종료 후)로 확대하였으며, 야간거래 개시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가를 고려하여 증거금 예탁시한을 기존 T+1일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단축하였다.

2025년 10월에는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sup>89)</sup> 기반 OIS(Overnight Index Swap)<sup>90)</sup>에 대한 중앙청산을 개시하였다. KOFR OIS 청산 서비스 제공은 금융당국의 지표금리 추진계획<sup>91)</sup>의 일환으로, 시장 내 KOFR이 준거금리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 11월 글로벌 규제기준과의 정합성<sup>92)</sup> 및 위험 유발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을 장내·외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거래대금에서 거래증거금으로 변경<sup>93)</sup>하여 공동기금이 회원별 위험액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유동성 공급 약정(credit line)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유동성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기금 현금납부 의무비율’<sup>94)</sup>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한국거래소의 결제이행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88) 한국거래소는 2009년부터 해외거래소(CME, Eurex)와 연계 형태로 야간거래를 제공해 왔으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시장참가자의 거래편의 개선을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자체 야간거래를 2025년 6월 9일 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KRX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개시」(한국거래소, 2025.6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89) 2012년 6월 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해외 주요국은 지표금리 개혁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2020년 「금융거래 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에는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을 중요지표로 선정하여 산출을 개시(한국예탁결제원)하였다.

90) 익일물 금리를 준거금리로 하는 이자율 스왑을 의미한다.

91) 정부는 2024년 12월 KOFR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KOFR을 준거금리로 하는 이자율 스왑인 KOFR OIS의 확산 계획을 발표하였다(「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체결되는 이자율 스왑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이 비중을 매년 10%p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30년에는 50%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92) 유럽 시장인프라 규정(EMIR) 제42조 제2항에서는 청산회원의 공동기금 납입 시 각 회원의 노출액(exposures)에 비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93) 거래증거금은 개별 회원의 포지션 규모, 가격변동성 및 잠재적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CCP의 결제불이행 발생 시 해당 회원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는 1차적 사전적립 자원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증거금은 거래대금에 비해 청산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94) 공동기금 현금납부 의무비율은 장내증권시장 25%, 장내파생상품시장 5%, 장외파생상품시장 15%를 적용 중이다.

##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은 2025년 3월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인 넥스트레이드(NXT, Nextrade) 출범에 따라 NXT 청산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sup>95)</sup>하고 있다. 동일 상장주식이 복수 거래소(KRX·NXT)에서 차질 없이 거래될 수 있도록 결제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전문(CCF)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향후 복수의 대체거래소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결제 업무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신규 발행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 2025년 7월 중도환매 제도 개시에 따른 상환사무 및 말소등록 업무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 예정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매입 허용, 3년물 신규 도입, 이표채 전환 등 제도 개선<sup>96)</sup>에 대비하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절차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5) 복수 거래소(KRX·NXT) 매매에 대한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참고 III-1> '대체거래소(ATS) 설립 및 그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96)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연간·1월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2025.1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 3.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 모바일현금카드<sup>97)</sup> 서비스 활성화

##### (삼성윌렛과의 연계 서비스 개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sup>98)</sup>(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25년 4월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삼성윌렛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앱뿐 아니라 삼성윌렛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ATM 입·출금, 상거래 결제 및 거스름돈 적립 등 모바일현금카드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윌렛 서비스 이용자가 국내 약 1,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모바일현금카드 결제 서비스의 이용 확대와 인지도 제고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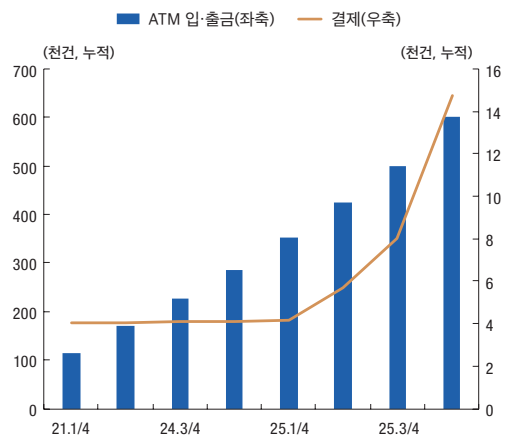
##### (서비스 이용 큰 폭 확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삼성윌렛 연계 등 이용채널 확대와 병행하여 모바일현금카드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소매 체인점, 병원 등<sup>99)</sup>이 추가되어 모바일현금카드 QR 기반 결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결제원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2025년 중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다. 홍보 영상 제작, 블로그 및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sup>100)</sup>하는 가운데 현금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전후해서는 ATM 입·출금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플랫폼 연계 및 가맹점 확대 등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누적 발급 건수(26.5만건) 중 43.5%인 11.5만건이 2025년 중 발급되었으며, 결제 건수와 ATM 입·출금 건수도 누적 기준으로 전년(2024년 누적)대비 각각 258%, 109% 증가하였다.

그림 III-4.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이용실적



자료: 한국은행

97)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고비용 지급수단에 편중된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결제서비스 모바일화 대응을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2020년 6월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도입했으며 ① CD/ATM 거래, ② 상거래 대금결제(직불결제), ③ 가맹점에서의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8) 1984년 9월 「금융전산위원회」(의장: 한국은행 총재)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CD공동망, 타행한공동망 등 주요 금융공동망 구축을 주도하였고 2009년 11월 현재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로 개편되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은행,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금융표준화 등의 사전 심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99) 전국에 1,5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다이소, 강동 경희대병원 등을 추가 가맹점으로 확보하였다.

100)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홍보 영상과 연계한 결제 서비스 이용 이벤트, 삼성윌렛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앱 내 푸시 알림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였다.

## (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

앞으로는 모바일현금카드를 활용한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은행 점포 내 ATM뿐 아니라, 지하철 및 편의점 등에 설치된 점외 ATM<sup>101)</sup>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채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점포 축소 및 ATM 수 감소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상품 결제 시에만 가능하였던 편의점 출금 서비스를 구매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실물 현금카드부터 모바일현금카드로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금융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현금카드 홍보 지속과 함께, 가맹점 확대,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이용채널 다각화 등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I-5.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이용 이벤트 포스터



자료: 한국은행

## 금융포용 관점에서의 현금 이용 접근성 유지 노력

현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결제수단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포용 기능을 수행한다.<sup>102)</sup> 현금의 수용성이나 접근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저소득층 등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금결제 거부 경험<sup>103)</sup> 등을 고려할 때 현금 수용성 및 접근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현금 사

101) 지하철 역사, 편의점 등 은행 지점 외부에 위치한 ATM으로 자동화기기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ATM을 가리킨다. 2026년 중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 중이며, 서비스 지원 ATM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2) 유럽중앙은행(ECB)은 현금전략(cash strategy) 보고서 「Use of cash by companies in the euro area in 2024」(2024.9월)를 통해 현금은 누구나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공적화폐(public money)로서 금융포용에 필수적 수단이라고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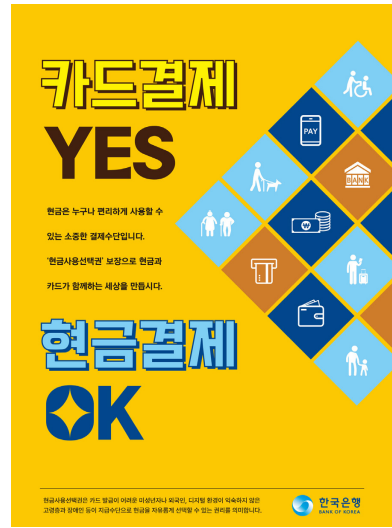
103)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결제 거부를 경험한 응답자 비중이 5.9%(「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조사」, 2025.12월)로 유로지역(35%, 2020.12월), 영국(45%, 2022.11월), 호주(40%, 2025.2월), 캐나다(12%, 2020.7월)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 감소세가 지속되면, 현금 관련 서비스가 축소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현금 수취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현금의 수용성 및 접근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현금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고 국민의 현금사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화폐유통시스템<sup>104)</sup>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힘쓰는 한편,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sup>105)</sup>를 통해 화폐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조사」<sup>106)</sup>, 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 등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현금사용선택권 보장과 현금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sup>107)</sup>을 개최하는 한편,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관련 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중교통, 공공기관,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하였다.

그림 III-6.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홍보 포스터



자료: 한국은행

한편 비수도권 지역<sup>108)</sup>의 은행 점포와 ATM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ATM 설치 대수는 2013년 12.4만대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현금 사용 감소와 운영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2025년에는 10만대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26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

104) 화폐의 공급·유통·보관 등 현금을 원활히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과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규모 현금유통망(wholesale cash distribution)과 소규모 현금유통망(retail cash distribution)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현금유통망은 화폐를 발주·발행하는 한국은행과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화폐를 인수하여 유통하는 금융기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화폐를 운송하는 현금수송회사 등으로 구성되며, 소규모 현금유통망은 화폐의 운송을 담당하는 현금수송회사와 현금사용자(소매유통업체, 소비자 등)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접근지점(금융기관 점포, ATM 등) 등으로 구성된다.

105)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현금수송회사, 비금융 ATM 운영업체, 소매·유통업체 등 화폐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관기관들(총 24개)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동 협의회 산하에 ‘현금 인프라’, ‘현금 접근성’, ‘현금사용선택권’의 3개 분과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화폐유통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와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106)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3>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07) 2025년에는 위조화폐 유통 방지,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현금 접근성 개선,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를 주제로 일반 영상(가로 화면) 및 숏폼 영상(세로 화면, 신설)을 공모했으며, 접수된 82편(일반 영상 67편, 숏폼 영상 15편)의 응모작 중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SNS에 공개하였다.

108) 인구 십만명당 은행 지점 수는 수도권이 11.3개, 그 외 지역은 10.4개, 은행 ATM 수는 수도권이 75.1개, 그 외 지역은 64.0개로 나타났다(금융결제원 및 통계청, 2025년 말 기준).

도권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ATM 설치 대수가 급감하여 금융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025년 한국은행과 한양대학교의 공동 연구 「국민 현금 접근성 제고를 위한 ATM 통합 운영방안」 결과에 따르면, 동 지역에서 ATM 추가 설치가 필요한 취약 지역<sup>109)</sup>은 최소 5,421곳에 달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ATM 공급을 민간의 수익성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되는 ‘시장 실패’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ATM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유럽 주요국<sup>110)</sup>에서는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이 주도하여 ATM 운영원칙을 수립하거나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ATM 통합운영을 위한 기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2025년 7월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ATM을 직접 공급하였다.<sup>111)</sup>

현금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공공 인프라다. 이에 한국은행은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관련 업계 및 유관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ATM 통합운영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표 III-3.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ATM 관련 역할

|       | 원칙수립 | 법률제정 | 통합운영 | ATM 직접공급 |
|-------|------|------|------|----------|
| 영국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ECB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한국    | -    | -    | -    | -        |

자료: 각국 중앙은행

109)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 조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통계 조사구역인 집계구(Output Area)를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110)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헝가리 등이 있다.

111) 오브리츠베르크-루스트(Obritzberg-Rust) 지역에 첫 번째 중앙은행 ATM(OeNB-ATM)을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향후 2년간 최대 120대의 중앙은행 ATM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 참고 III-1.

### 2025년 가상자산 거래현황 및 주요 특징<sup>1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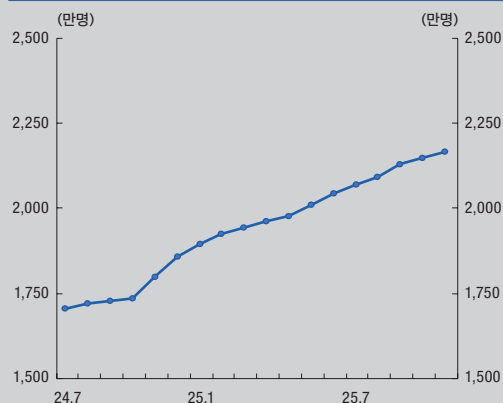
#### 개요

2025년 중 가상자산 보유금액(거래소가 보유한 전체 가상자산을 시가평가로 환산) 및 거래대금 흐름을 보면 연초 트럼프 행정부 취임 직후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호전되며 증가하였다가 미·중 무역 갈등 고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감소하였다. 7월에는 미국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sup>113)</sup> 통과 등으로 다시 늘어났으나, 10월 이후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대규모 청산, 미 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감소하는 등 연중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 투자자 수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sup>114)</sup>는 2,163만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거래소들의 신규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가상자산 투자자 수<sup>1)</sup>



주: 1) 월말기준, 동일인 다수 거래소 가입 시 중복 합산, 법인 제외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거래대금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의 가상자산 보유금액<sup>115)</sup> 및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81.7조원, 2.7조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연초 121.8조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6월 89.2조원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GENIUS Act 통과 등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7월 112.5조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약화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가상자산 가격이 재차 하락하면서 연말에는 81.7조원까지 감소하였다.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대금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 연초 11.8조원에서 6월 3.2조원까지 감소하다 7월 7.2조원까지 상승한 이후 연말에는 2.7조원까지 줄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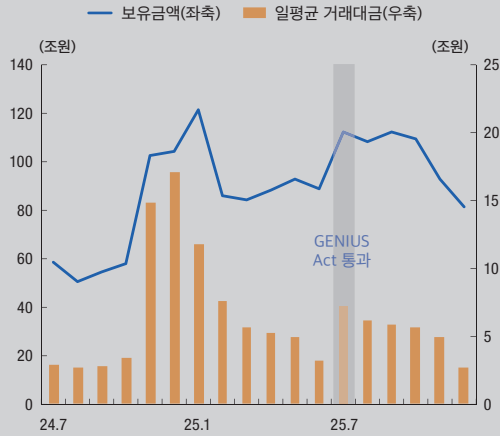
112) 본 참고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자료제출요구권(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113)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규율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인가·감독 체계를 마련한 법률이다.

114) 동일인이 다수의 거래소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합산하였다.

115) 거래소 자체 보유분은 제외하였다.

## 가상자산 보유금액<sup>1)</sup> 및 일평균 거래대금<sup>2)</sup>



주: 1) 월말 시가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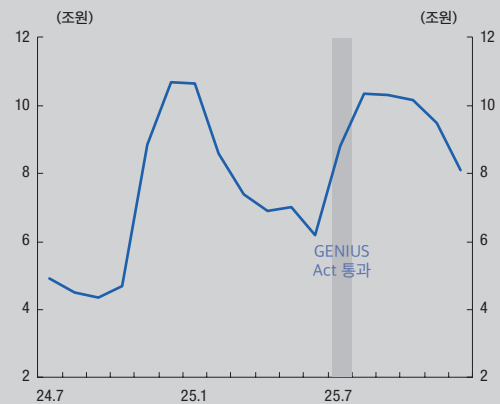
2) 월중 일평균 기준, 기간 중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 체결가격 × 체결 수량의 합계액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 예치금 규모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에 보관 중인 국내 투자자 원화 예치금은 8.1조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원화 예치금 규모는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연초(10.7조원)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6월 6.2조원으로 축소되었다가 8월 10.4조원 수준으로 증가한 뒤, 12월 들어 8.1조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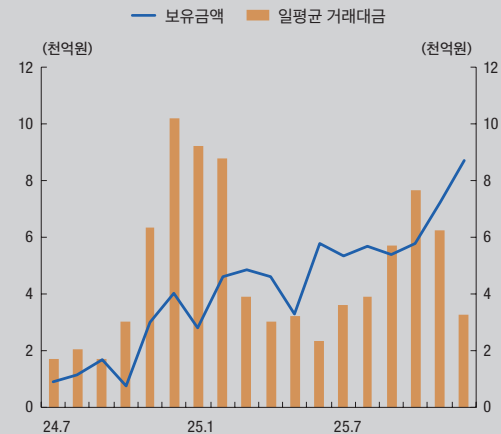
주: 1) 월말 기준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 스테이블코인 거래 현황

한편 스테이블코인 보유금액은 2025년 1월 2,781억 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0월 이후 가상자산 가격 약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급증하여 연말에는 8,719억 원을 기록하였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여타 가상자산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1월 9,238억 원에서 6월 2,380억 원까지 감소하였다가 10월 7,666억 원까지 증가한 이후 연말 3,266억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 스테이블코인<sup>1)</sup> 보유금액<sup>2)</sup> 및 일평균 거래대금<sup>3)</sup>



주: 1)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USD1, USDS) 기준

2) 월말 시가평가 기준

3) 월중 일평균 기준, 기간 중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 체결가격 × 체결 수량의 합계액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 참고 III-2.

### 빗썸거래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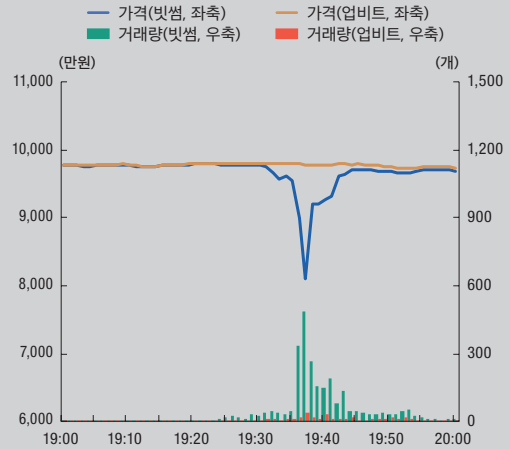
2026년 2월 6일 19시 빗썸거래소(이하 '빗썸')가 고객에게 이벤트<sup>116)</sup>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여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대신 62만 비트코인(약 60조원 상당)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트코인을 오지급받은 일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9,800만원에서 8,100만원 수준까지 급락하였다.<sup>117)</sup> 이로 인해 여타 이용자들이 ① 패닉셀, ② 자동손절(stop-loss) 등으로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실현된 대출이 강제 청산 당하는 등 약 1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sup>118)</sup>

빗썸은 사고 발생 후 20분이 지난 19시 20분경 사태를 파악하고 19시 35~40분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강제로 회수하여 삭제하였으나, 1,788개(0.3%)의 비트

코인은 이미 매도되어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빗썸은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들의 계좌를 동결하고 매도대금(원화)을 강제 회수하였다.

#### 빗썸과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상황 비교



자료: 빗썸, 업비트

다만, 금번 사고로 빗썸 내부 장부상 비트코인이 증가한 것일 뿐 빗썸이 블록체인상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에는 변화가 없었다.<sup>119)</sup> 이에 따라 고객이 시장에 매도한 비트코인 수량(1,788개)만큼 내부 장부와 실제 보유 수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썸은 외부 거래소(바이낸스 등)에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였다(2월 7일 22시 42분).<sup>120)</sup>

116) 참여고객에게 랜덤으로 2천원, 1만원,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고객 이벤트였다.

117) 동시간대 업비트 등 타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9,800만원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118) 빗썸은 오지급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보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 「금번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2026.2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119) 중앙화거래소에서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거래소 명의의 블록체인 지갑에 집중 보관되며, 고객의 보유 수량은 거래소의 내부 장부에만 기록되고 실제로는 거래소 명의의 블록체인 지갑에 집중 보관된다. 이는 현행 블록체인의 긴 거래 체결시간(건당 수초~수일)과 높은 수수료(건당 수십~수만원) 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중앙화거래소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2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장부상 기재된 수량과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 발생원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한 실수지만, 핵심 원인은 이러한 운영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상급자 결재나 내부감시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를 하루에 한 차례만 실시하고 있었기에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을 초과하여 장부상에 생성하고 이를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의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되어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막지 못한 것도 피해를 확산시켰다. 또한,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가격의 급변에 대응하는 장치가 부재했던 것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었다. 빗썸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실무자가 이벤트 대상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시사점

현재 가상자산업계는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내부통제장치가 미흡하고 규제강도가 낮다. 따라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로 하여금 고객에게 현금 또는 가상자산 지급 시 직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확

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IT시스템도 필요하다.

아울러 대량주문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등과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시 이러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 III-3.

###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sup>121)</sup>

#### 현금지출<sup>122)</sup>

최근 1년간 화폐사용현황 조사 결과, 개인은 월평균 32.4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전체 지출액 중 현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집계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현금지출 비중이 14.7%에 그친 반면, 70대 이상은 32.4%로 조사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현금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 소득 9백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현금지출 비중(15.1%)보다 1백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비중(59.4%)이 월등히 높아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였다.

#### 개인 현금지출 비중<sup>1)</sup>

| 연령                | 비중 (%) |      | 월 소득    | 비중 (%) |    |
|-------------------|--------|------|---------|--------|----|
|                   | 연령     | 비중   |         | 월 소득   | 비중 |
| 20대 <sup>2)</sup> | 20대    | 14.7 | 1백만원 미만 | 59.4   |    |
| 30대               | 30대    | 14.3 | 1~3백만원  | 24.9   |    |
| 40대               | 40대    | 15.0 | 3~5백만원  | 17.1   |    |
| 50대               | 50대    | 14.7 | 5~7백만원  | 16.6   |    |
| 60대               | 60대    | 20.8 | 7~9백만원  | 14.4   |    |
| 70대 이상            | 70대 이상 | 32.4 | 9백만원 이상 | 15.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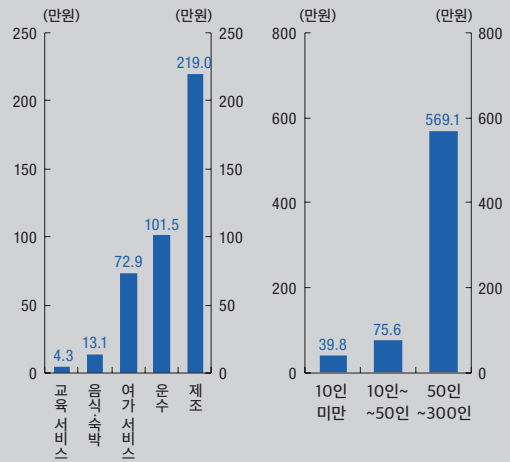
주: 1) 월평균 기준, 전체 평균은 17.4%

2)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료: 한국은행

한편, 기업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112.7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9% 수준에 불과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19.0만원, 교육서비스업이 4.3만원 등으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컸다.

#### 기업 업종 및 종사자 수별 현금지출<sup>1)</sup>



주: 1) 월평균 기준, 전체 평균은 112.7만원

자료: 한국은행

#### 현금보유<sup>123)</sup>

개인의 평균 현금보유액<sup>124)</sup>은 6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70.8만원)이 20대(48.2만원)보다 약 1.5배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월 소득 9백만원 이상, 69.9만원)보다 저소득층(1백만원 미만, 51.4만원)의 소득대비 현금보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121) 개인은 전국 만 19세 이상 개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17개 시·도, 동·읍면 및 주택유형(아파트·일반주택)을 기준으로 모집단을 층화해 2,000명을 표본으로 삼았고, 기업은 전국 종사자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업종 및 종사자 규모로 층화해 1,210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본에 대한 조사는 2025년 5월에서 6월까지 태블릿PC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으로 실시하였다.

122) 현금지출액은 최근 1년간 상품·서비스 구입 및 개인 간 거래 등을 위해 현금으로 지출한 월평균 금액을 의미하며, 저축·보험료 납부·세금·공적연금 지급 등 비소비지출은 제외하고 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현금 지출은 포함한다.

123) 현금보유액은 휴대 중인 현금, 1개월 내 지출 예정으로 집·사무실 등에 보관 중인 현금, 1개월 내 사용 계획 없이 비상 대비 또는 심리적 이유 등으로 금고 등 제한된 장소에 장기간 보관하는 현금을 포함한다.

124) 한편,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액은 977.8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액 구간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65.4%,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5.4%,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6.3%, 1,000만원 이상이 12.8%를 차지하였다.

한편, 개인의 현금보유 성향은 향후 금리 변동 및 경제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25)</sup>

### 개인 현금보유액<sup>1)</sup>

| (만원)              |        | (만원)    |        |
|-------------------|--------|---------|--------|
| 연령                | 현금 보유액 | 월 소득    | 현금 보유액 |
| 20대 <sup>2)</sup> | 48.2   | 1백만원 미만 | 51.4   |
| 30대               | 57.3   | 1~3백만원  | 65.2   |
| 40대               | 66.3   | 3~5백만원  | 63.8   |
| 50대               | 70.7   | 5~7백만원  | 61.9   |
| 60대               | 67.9   | 7~9백만원  | 68.6   |
| 70대 이상            | 70.8   | 9백만원 이상 | 69.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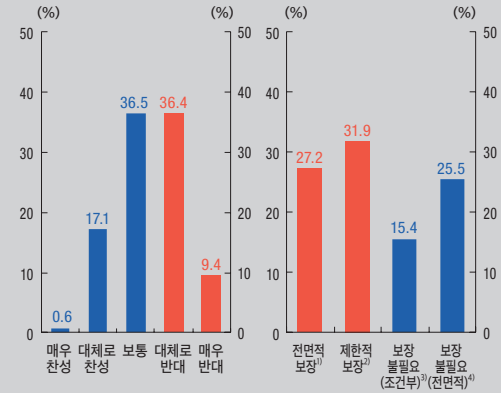
주: 1) 전체 평균은 64.4만원  
 2)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료: 한국은행

### 현금사용선택권

비현금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현금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응답자는 15.9%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84.1%)은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현금 없는 사회'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45.8%)이 찬성(17.7%)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응답자의 과반인 59.1%가 '현금사용선택권'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보장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소매점의 현금 수취를 의무화하는 '전면적 보장(27.2%)' 의견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한적 보장(31.9%)'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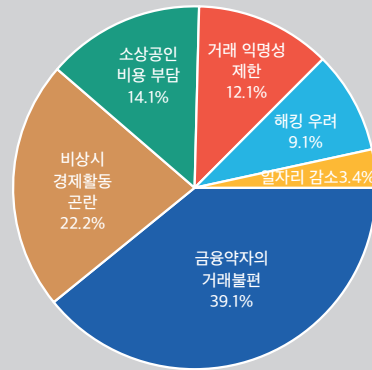
한편, 현금 없는 사회 도래 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노인·어린이 등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재난 등 비상 시 경제활동 곤란(22.2%), 소상공인 비용 부담(14.1%) 등이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 현금 없는 사회 및 현금사용선택권의 제도적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



주: 1) 모든 소매점에서 현금 지급 보장  
 2) 업종별로 비율을 정하거나 필요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 보장  
 3) 현금 지급 거부 사전 고지로 현금 지급 배제 가능  
 4) 현금 지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없음  
 자료: 한국은행

###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



자료: 한국은행

125) 조사결과 예금금리 상승 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는 응답(42.9%)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는 응답(42.8%)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 IV

## 주요 현안 분석

|                        |    |
|------------------------|----|
| 1.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추진       | 49 |
| 2. 바람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 54 |
| 3. 국가 간 지급서비스 연계 강화    | 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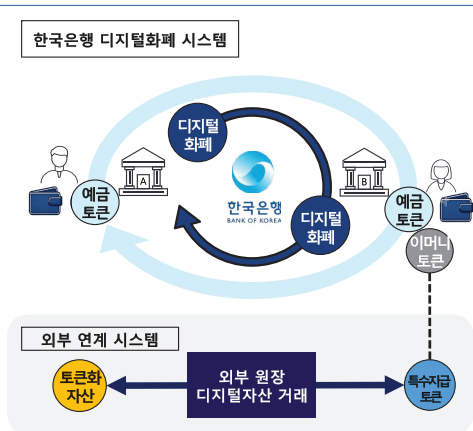
## 1.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추진

###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 및 향후 계획<sup>126)</sup>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미래 디지털화폐·통화 인프라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BIS와 협력하여 통합원장(unified ledger)<sup>127)</sup> 개념에 기반한 디지털화폐 네트워크 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sup>128)</sup>에 따라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 중이다.

1차 실거래 파일럿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7개 참가은행<sup>129)</sup>과 함께 8.1만명(전자지갑 기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용자들은 지정된 온·오프라인 사용자<sup>130)</sup>에서 예금 토큰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디지털 바우처를 이용하였다. 1차 실거래 파일럿은 분산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제도적 수용성 점검, 예금 토큰의 지급 수단 활용 가능성 및 편의 평가, 디지털 바우처의 효용 점검 등에 목적을 두었다.

그림 IV-1. 디지털화폐 네트워크 구성도<sup>1)</sup>



주: 1)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비은행기관도 발행할 수 있는 이머시 토큰 및 외부 연계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특수지급 토큰 등 다양한 민간 디지털통화가 유통되는 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 (사전준비 과정)

한국은행은 먼저 프로젝트 한강의 제도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참가은행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현행법상 예금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을 참가은행이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권리 및 거래 상대방 보호 등을 위해 예금 토큰 발행량에 대해 예대율 및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sup>131)</sup> 등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권리의무 발생·변동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같은 조건들을 추가하였다.

1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보고서」(2025.10월)를 참조하기 바란다(뉴스/자료 > 조사연구 > 지급결제 조사연구).

127)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은 디지털화폐, 예금 토큰, 토큰화된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공통 플랫폼에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설계도로서,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예금으로 구성된 현행 2계층 통화시스템 하에서 화폐의 단일성과 서로 다른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128)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3.10월),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3.1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29)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130)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하나로마트(이상 오프라인), 땡겨요, 모드하우스, 현대홈쇼핑(이상 온라인)

131)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한 예금 대비 대출규모 비율을 의미하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현금성자산, 국제 등 안전자산) 보유규모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 지급준비금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였다.<sup>132)</sup>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래은행 외의 은행이 해당 이용자의 개인식별정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sup>133)</sup>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다. 참가은행들은 한국은행과 디지털화폐 시스템 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한 약정을 체결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 약관」 등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디지털 바우처 실거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준비하였다.<sup>134)</sup> 디지털 바우처는 수혜자가 자신의 예금 토큰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up>135)</sup>을 통해 종류, 기간 등의 조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바우처 금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1차 실거래 파일럿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신라대학교와 협력하여 각 기관의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를 구현하였다.

한편, 디지털화폐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후, 참가은행 자체 개발 및 시스템 연계, IT 보안 점검, 한국은행 및 참가은행 임직원 내부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2025년 3월에 구축을 완료하였다.

표 IV-1.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1차 실거래 파일럿)

| 구분     | 서울시            | 대구시                     | 신라대            |
|--------|----------------|-------------------------|----------------|
| 대상자    | 청년문화패스 대상자     | 다대구 앱 사용자 <sup>1)</sup> | 신입생            |
| 바우처 금액 | 200,000원       | 10,000원                 | 200,000원       |
| 사용처    | 청년문화패스몰 (온라인)  | 교보문고 대구점, 칠곡점           | 신라대 인근 상점      |
| 모집     | 2025.2.24~3.18 | 2025.6.5~6.18           | 2025.4.15~4.21 |
| 사용     | 2025.5.30~6.30 | 2025.6.16~6.30          | 2025.4.30~6.30 |

주: 1) 대구 도서관 회원증 등록자  
자료: 한국은행

### (1차 실거래 파일럿 수행 결과)

1차 실거래 파일럿은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의 기능을 점검하고 디지털 바우처가 설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디지털화폐의 제조, 발행, 환수, 폐기 등 전 과정이 순조롭게 처리되었다. 전자지갑 개설,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전환,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도 차질없이 이루어졌다.<sup>136)</sup>

13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개발에 관한 규정」, 동 「세칙」 및 「절차」를 제정하여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예금 토큰을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보고 지급준비율 최저율은 기타예금과 같이 7.0%를 적용하였다.

133)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는 참가은행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분산원장에는 전자지갑 주소, 거래금액 등 일부 내용만을 기록함으로써 개인식별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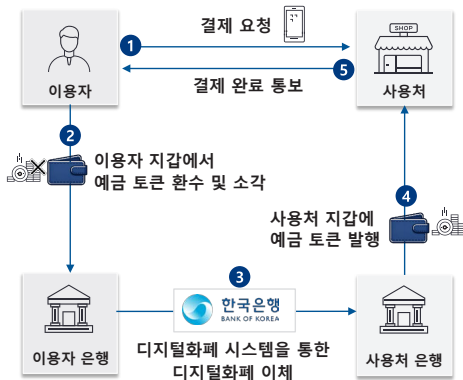
134)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은 바우처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고 이에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는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혁신 부문에서 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135) 사전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제3자의 개입 없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프로그래밍 코드를 의미한다.

136) 1차 실거래 파일럿 기간 중 개설된 전자지갑은 총 8.1만개였고 예금에서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금액은 약 16.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실거래 파일럿은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의 기능 검증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전자지갑 개수 및 예금 토큰 전환 금액 등과 같은 평가지표를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특히 이용자와 사용처의 전자지갑 개설 은행이 상이한 경우에도 이체<sup>137)</sup>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참가은행들은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예금 토큰 관련 규제를 충실히 준수하였다. 디지털 바우처도 바우처 의뢰기관의 바우처 발행 요청, 스마트 계약 검증·배포, 바우처 결제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그림 IV-2. 예금 토큰 결제 처리 절차



자료: 한국은행

### (이용자 의견 조사)

1차 실거래 파일럿 종료 후 후속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점검 등을 위해 2025년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자지갑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응답자 수: 22,006명)하였다. 주요 의견으로,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의 정식 도입 시 혜택이 큰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51.8%)를 차지하였으며, 새로운 지급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용할 것

이라는 응답도 34.6%로 나타났다. 또한 후속 사업에서의 개선 희망사항(복수 응답 가능)으로 사용처 확대(71.7%)가 가장 많았고 프로모션 및 이벤트 확대(40.6%), 전자지갑 로그인 및 결제 시 인증 간소화<sup>138)</sup>(39.2%)를 선택한 이용자도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증 절차와 앱 화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IV-3. 후속 실거래 사업에서의 주요 개선 희망사항<sup>1)</sup>

| 개선 사항         | 인원 (명) | 비율 (%) |
|---------------|--------|--------|
| 사용처 확대        | 11,907 | 71.7%  |
| 프로모션 및 이벤트 확대 | 6,738  | 40.6%  |
| 전자지갑 인증 간소화   | 6,514  | 39.2%  |
| 송금 등 기능 확대    | 6,369  | 38.3%  |

주: 1) 복수 응답 가능,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은행

### (주요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에서는 분산 원장 기반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설계·구축하고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구매 및 대금 정산을 실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지급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특히 현행 2계층 통화 시스템에서와 같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통화의 신뢰성

137) 이용자의 전자지갑 개설은행은 해당 이용자의 예금 토큰을 소각하고 디지털화폐를 사용처의 전자지갑 개설은행으로 이체한 후 사용처의 전자지갑 개설은행이 사용처의 전자지갑에 예금 토큰을 다시 발행하였다. 이러한 이체 방식을 소각 및 재발행(burn-and-issue)이라 하는데, 이는 현행 지급결제제도하에서의 타행 이체 방식과 동일하며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 은행 간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화폐의 단일성을 확보하고 참가은행의 고객확인(KYC)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138) 1차 실거래 파일럿에서 앱 실행부터 QR 코드 생성까지 얼굴, 지문 등 생체 정보 인증이 아닌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채택했던 이유는 예금 토큰이 전면 도입되지 않아 전자지갑 시스템을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동하지 않았던 데 주로 기인한다.

및 건전성 유지에 중심적 역할(anchor)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바우처를 통해 대금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기관의 사후 검증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정부 보조금 등의 집행방식 개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후속 실거래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금 지급 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자 및 사용처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금 토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화폐, 예금 토큰 및 디지털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 한편, 중앙은행과 참가은행 간 역할 분담을 포함한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 (향후 계획)

한국은행은 1차 실거래 파일럿 경험을 토대로 향후 예금 토큰의 정식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재정경제부 및 여타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6년 상반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보조금, 바우처, 업무추진비 등 활용 사례를 추가로 발

굴해 나갈 계획이다.<sup>139)</sup>

2026년 하반기 착수 예정인 일반 국민 참여 후속 실거래 사업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선 필요사항들을 보완하는 한편, 사용처 등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참가은행은 생체인증, 예금·예금 토큰 간 자동 전환, 현금영수증 발급 등 이용자 및 사용처의 편의성을 위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왔다. 한국은행은 참가은행들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1차 실거래 파일럿을 통해 발굴된 제도적·기술적 이슈 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종합 점검하고 디지털화폐 시스템 상용화 로드맵 등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컨설팅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의 비전을 점검하는 한편, 비즈니스 모델 및 운영·관리 절차 및 법적 이슈 등을 검토하고, 현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은행은 기관 간 글로벌 지급 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활용하여,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s)<sup>140)</sup>와

139) 재정경제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8월) 중 공공부문 대혁신 과제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효율적·투명한 국고금 관리를 제시하고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26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6.1월)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1/4을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활용해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2026년 상반기 중 착수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실증 사례를 창출하고 보조금·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정비, 인프라구축 작업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140)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단위로서의 원자의 의미를 차용한 것으로, 연결된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모두 실행되거나 모두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지급거래에서 A은행-B은행-C은행-D은행의 순서로

조건부 지급 등 새로운 기능을 적용한 프로토타입<sup>141)</sup>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현행 환거래은행 시스템하에서 요구되는 결제 완결성,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 주요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성 및 건전성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IS와 국제금융협회(IIF), 7개국<sup>142)</sup> 중앙은행과 민간 참가기관<sup>143)</sup>은 2026년 상반기 중 프로토타입 구축 및 테스트 단계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 에이전틱(Agentic) AI<sup>144)</sup> 기반 결제 개념 검증<sup>145)</sup>

한국은행은 에이전틱(Agentic) AI 상거래에서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11월 에이전틱 AI 기반 결제 개념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용자로부터 결제 권한을 위임받은 AI 에이전트는 구매 대상을 탐색하고 비교한 후 전자지갑 간 예금 토큰 및 바우처 이체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향후 AI 에이전트가 널리 보급되고 자동결제가 확산될 경

처리되는 경우, C은행과 D은행 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단계만 미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A은행에서 D은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단계가 하나의 거래 단위로 간주되어 거래 전체가 실행되지 않게 된다.

141) 시스템의 핵심 기능만을 우선적으로 구현한 초기 시제품을 의미한다.

142) 미국, 프랑스(유로지역 대표), 영국, 일본, 스위스, 한국, 멕시코

143) 2024년 9월에 40여 개의 글로벌 민간 금융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이 참가하고 있다.

144) 에이전틱(Agentic) AI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질의응답을 넘어, 이용자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145)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바람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잠재력과 기대 효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와 가치를 1:1로 연동하여 안정성을 추구함으로써 차세대 디지털 지급 수단으로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연합(MiCA), 미국(GENIUS Act)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혁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경우 디지털자산 기반 산업의 활성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 중 약 88%가 가상자산 및 토큰화 자산 거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 내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46)</sup>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되므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의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대금이 즉시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환거래 은행 체계를 거치지 않고 국경 구분이 없는 블

록체인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전송이 가능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간 지급 등에 사용할 경우 해외 송금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의 편리성·효율성·글로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 지급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공공의 영역이었던 화폐가 민간의 영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중앙은행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계하는 등 고도의 통화성(moneyness)을 바탕으로 통화 및 외환정책,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시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혁신의 한계와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안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은행의 정책대안: 신뢰 기반의 점진적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신뢰가 기반이 되는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앙은행 제도의 틀 안에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를 억제하고 통화신용정책과 조화를 이루기도 용이하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블록체

146) 자세한 내용은 「Stablecoins: Five Killer Tests to Gauge Their Potential」(Boston Consulting Group, 2025.5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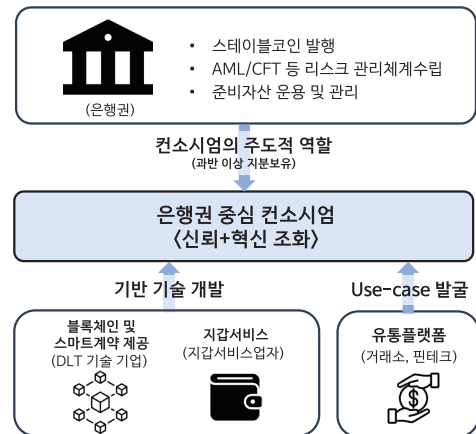
인 기반 송금 시스템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한강 등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테스트에도 참여하는 등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한편 빅테크 등 비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개발, 유통 채널 구축 등에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여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준수를 보장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비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 활용사례(use case) 발굴 및 유통, 이용자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은 제도 초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권 간 장점을 결합하는 발행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통화 및 외환정책,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화(한국은행)·외환(재정경제부, 한국은행)·금융(금융위원회)당국의 고유 정책수행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 발행량 결정, 준비자산 구성기준, 중요 스테이블코인<sup>147)</sup> 지정·감독 등 주요 정책수립 및 집행에 있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5년 7월 18일 미국에서 제정된 GENIUS Act에서도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 금융시스템 전체를 고려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재무부(US Treasury) 장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구성된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sup>148)</sup>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의 제도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 및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입법안 마련 시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법정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등 정책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만으로 통화대체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혁신적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기능하면서도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IV-4. 발행 주체(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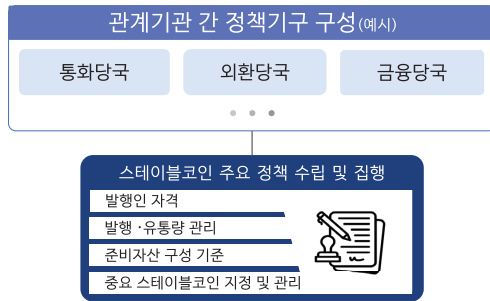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47)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량,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한다. EU MiCA는 중요 자산준거토큰 및 이머니토큰 발행인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유동성 규제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48) 동 위원회가 빅테크 등 비금융서비스 상장기업(Non-financial services public companies)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만장일치(unanimous) 기반 심사[법 제4조(a)(12)], 주(state)와 연방(federal) 규제체계 간 정합성 인증[법 제4조(c)(5)] 등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 그림 IV-5. 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 신설



자료: 한국은행

### 3. 국가 간 지급서비스 연계 강화

글로벌 교역 확대, 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은 지급결제 분야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한국은행은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간 상거래 결제 연계, 신속지급시스템<sup>149)</sup> 연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검토하고 있다.

#### 국가 간 QR<sup>150)</sup> 기반 지급서비스 연계

##### ( 추진배경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QR 지급이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외지역 및 영세상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현금 대체 지급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 주도로 QR 표준을 제정하고, 일부 아세안 회원국에서는 민간 결제사업자와 가맹점에 표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QR 지급을 핵심 지급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또한 글로벌 인적 교류 및 관광 확대에 따라 국외 지급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아세안 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 등과도 양자간 QR 연계 사업을 추진해 왔다.<sup>151)</sup>

동 사업을 위해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

행(BI, Bank Indonesia)은 2024년 7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지급결제협회(ASPI, Asosiasi Sistem Pembayaran Indonesia)와 함께 양국 소비자의 구매 정보를 중계하는 인프라를 2025년 10월 구축하였다.

##### ( 우리나라-인도네시아 간 QR 연계 개시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QR기반 지급서비스는 2026년 4월 개시되었다.

동 지급서비스는 양국의 민간 모바일 간편지급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상대국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별도의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휴대폰의 간편지급 앱으로 현지에서 QR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본 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인도네시아 내 전국 가맹점에서 QR 지급이 가능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도 서울페이 등 약 240만 가맹점에서 QR 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 서비스 연계구조 및 결제방식 )

국내 소비자가 인도네시아 가맹점의 QR을 스캔하면, 금융결제원과 인도네시아 스위칭 사<sup>152)</sup>

149)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의미한다.

150) QR(Quick Response) 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통해 지급 정보를 즉시 인식·전송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 기술로, 모바일 간편지급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151) 인도네시아는 QR 지급 연계가 사용편의성 및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융합이 용이하여 아세안 국가뿐 아니라 일본, 중국 및 범유럽 국가 등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52) 중계시스템 제공기관(스위칭 사)이란 국가마다 서로 다른 QR 체계를 각 참가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중계 및 호환성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가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소비자가 이용 중인 국내 발급사<sup>153)</sup>에서 지급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지급이 승인되면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하게 되며, 이후 양국 스위칭 사는 하루 동안의 거래 내역을 집계해 지정된 결제은행을 통해 정산을 진행한다.

그림 IV-6. 우리나라-인도네시아 QR 연계 거래구조 (우리나라 국민 → 인도네시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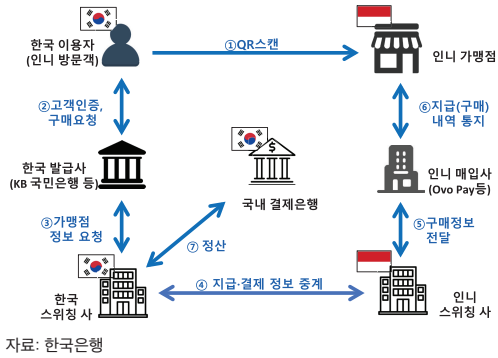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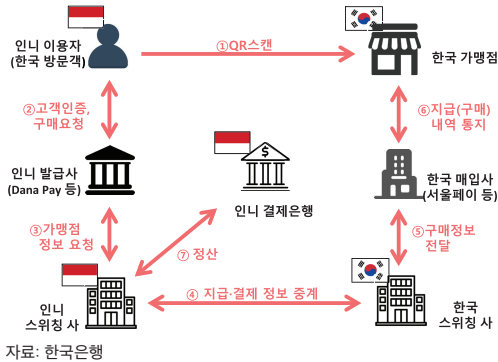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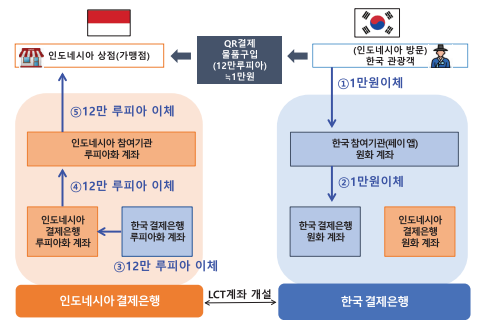
그림 IV-7. 우리나라-인도네시아 QR 연계 거래구조 (인도네시아 국민 → 우리나라 방문)



이러한 QR 연계 거래에 대한 정산은 2024년 9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구축한 현지통화

직거래(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 체제<sup>154)</sup>, 즉 원화와 루피아화 간 직접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양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결제은행에 상대국 결제은행이 현지통화 계좌를 개설하고 QR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상대국 지급서비스 업체와의 거래금액을 국가 간 이동 없이 현지통화 계좌 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정산하게 되는 방식이다.

그림 IV-8.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sup>1)2)</sup>



주: 1) 원화와 루피아화의 환율은 1만 원 = 12만 루피아로 가정  
2) 양국 참여기관이 지정 결제은행의 계좌 보유를 가정  
자료: 한국은행

( QR 연계 도입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QR 연계 서비스 도입으로 양국 방문객의 지급수단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지급 접근성 및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신용카드 지급 시 비자 등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 이용으로 발생하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어 비용 부담과 결제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지

153) 발급사란 이용자가 QR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26년 4월 KB국민은행과 우리카드를 시작으로 향후 13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54) 현지통화 직거래(LCT, Local Currency Transaction) 체제 구축에 따라, 국내 지정 결제은행(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지정 결제은행에 루피아화 표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지통화로 경상거래에 대한 차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통화 직거래 체제(LCT)를 통해 환전수수료 부담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향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여타 아세안 국가로 QR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지급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급 인프라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류 상품을 포함한 국산 콘텐츠 및 상품의 해외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QR 지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sup>155)</sup>할 계획이다.

### 다자간 신속지급시스템 연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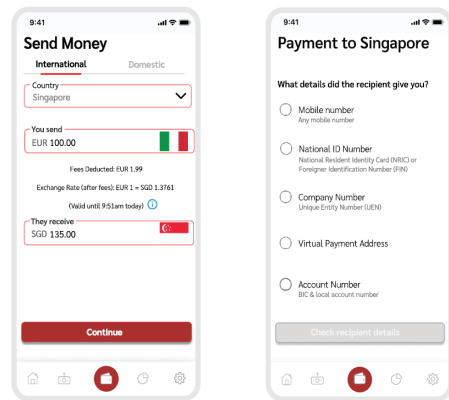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sup>156)</sup>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우선 추진 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자간 신속지급시스템 연계 프로젝트인 넥서스(Nexus)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넥서스는 다자간 신속지급시스템 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가국의 신속지급시스템을 동 플랫폼에 연결하여 소액 송금 등을 처리하는 구조

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양자 간 연계<sup>157)</sup> 대비 효율성과 확장성이 개선될 수 있다.<sup>158)</sup>

2025년 3월 넥서스 운영을 총괄하는 NGP (Nexus Global Payments)가 싱가포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NGP는 2027년 중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운영기관(Nexus Technical Operator)을 선정하고 추가 참가국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공식 확정된 참가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이며 ECB 등이 가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IV-9. 넥서스 송금 예시 화면



사전에 수수료, 적용 환율, 최종 수취금액 등 확인 가능

휴대전화 번호 등 프로세스를 통해 수취인 확인 가능

자료: BIS

- 155) 동 서비스가 구현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소비자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상거래(e-Commerce) 플랫폼에 접속하여 제품을 구매할 때 루피아화로 지급이 가능해진다.
- 156)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BI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조치, 추진 시기 및 달성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2020년 10월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7~30년까지 G20 회원국은 해외송금 비용을 송금액의 1~3% 이하로 낮추고 대부분(75%)의 지급이 1시간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회원국 규제체계와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157) 주요 사례로는 인도의 UPI와 싱가포르의 PayNow 간 연계, 싱가포르의 PayNow와 태국의 Promptpay 간 연계 등이 있다.
- 158) N개국의 신속지급시스템을 양자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연결할 경우 N(N-1)/2회의 작업이 필요하나, 하나의 중계 플랫폼에 N개국의 신속지급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은 N회의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연계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표준화된 중계 플랫폼을 구축하면 연계 시 필요한 작업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참가국을 늘리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넥서스가 상용화될 경우 최종 사용자들은 편의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환거래은행과 SWIFT망을 이용한 국가 간 송금 방식의 경우 송금 완료에 최대 수일이 소요되나 넥서스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60초 이내에 송금이 완료되고 송금 실패 시에도 그 결과와 사유를 송금인에게 빠르게 통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기존 국가 간 송금 시 수취인의 계좌번호, 주소, 은행 코드 등 많은 정보를 송금인이 직접 기재해야 하는 반면, 넥서스는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대체 정보(proxy)를 통해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60

아울러 수수료, 적용 환율, 최종 수취금액 등을 사전에 송금인에게 공개함에 따라 기존 국가 간 송금 방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불투명성<sup>159)</sup>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넥서스 이용의 편익과 교역 상대국으로서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넥서스 참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159) 기존 SWIFT 기반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송금하는 금액과 실제 수취되는 금액 간의 차이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

## 참고 IV-1.

### 주요국 중앙은행의 DLT 혁신 지원 사례

#### 추진 배경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은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과 자산 토큰화(tokeniza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자산의 토큰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30년 전 세계 토큰화 자산 시장이 16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최종 자금결제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토큰증권 대금결제, 국가 간 지급 등의 자금결제에 중앙은행 화폐, 즉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제를 지원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요국 중앙은행의 DLT 지원 프로젝트 유형

| 기존 중앙은행<br>거액결제<br>시스템과 연계 | 중앙은행 자체 DLT<br>플랫폼 구축 | 중앙은행 외부 DLT<br>플랫폼 활용 |
|----------------------------|-----------------------|-----------------------|
| 영국, 독일,<br>이탈리아 등          | 캐나다, 싱가포르,<br>프랑스 등   | 스위스 등                 |

자료: 한국은행

### 영란은행

#### (Project Meridian, 2023~2025년)

영란은행은 토큰화 자산 거래대금 결제를 기존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면서도, 거래조건 프로그래밍,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 등 DLT의 장점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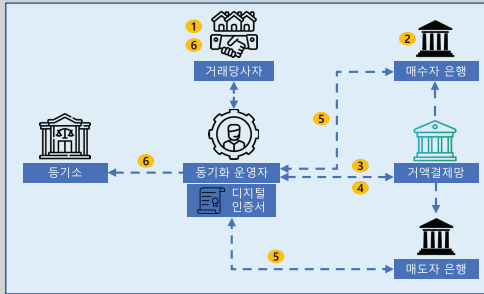
2023년에는 중앙은행 내부와 외부의 원장들을 연결하는 동기화 시스템<sup>160)</sup>(synchronisation operator)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란은행은 영란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등기소 원장 등을 직접 연계하여 토큰화된 주택 소유권의 매매 시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하는 실험<sup>161)</sup>을 진행하였다. 이후, 2025년 4월에는 유럽중앙은행과 동기화 운영자를 활용한 국가 간 지급 실험을 수행하여 다른 나라의 결제시스템과의 상호운용 가능성을 확인<sup>162)</sup>하였다. 또한 2025년 11월에는 다수의 기관이 실제에 가까운 운영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증권을 거래하고 결제하는 토큰증권 결제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다.

160) 동기화 운영자는 여러 원장들을 연결하여 동시 결제를 보장하며, RTGS의 일부 기능(예: 예약이체 등)을 호출하여 외부 자산시스템과 조건부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61) 특정 개념이나 이론이 실제 세계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검증하는 시연 단계인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 수준이다.

162) 독일 연방은행이 운영하는 T2,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TIPS 및 프랑스 중앙은행이 구축한 DL3S와의 국가 간 지급 실험을 통해 동기화 운영자를 활용하여 영란은행 거액결제시스템과 여타 국가의 기존 및 DLT 기반 결제시스템과의 상호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동기화 운영자를 통한 주택거래 절차



- 1 거래당사자들이 주택 거래에 합의하고 동기화 운영자에게 합의 내용을 전송
- 2 매수자측 상업은행은 동기화 운영자로부터 이 내용을 전송 받고 거래대금에 처분제한(hold)을 설정
- 3 동기화 운영자는 거액결제시스템에 이체 예약을 요청(매수자측 상업은행 계좌 → 매도자측 상업은행 계좌)
- 4 동기화 운영자가 거액결제시스템에 자금이체를 지시하면 결제가 일어나고, 이와 동시에 동기화 운영자는 디지털 증서(digital deed)에 타임스탬프를 부여하여 주택 소유권을 이전
- 5 동기화 운영자가 매수자측 상업은행과 매도자측 상업은행에 거래완료료를 알리면 각 상업은행은 고객의 계좌 잔액을 갱신
- 6 동기화 운영자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거래완료료를 알리고 등기소에 디지털 증서를 송부하면 주택 매수자 앞 등기가 진행

자료: 영란은행, 한국은행

## 유럽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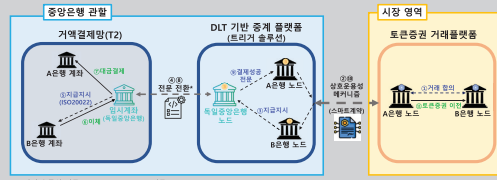
유럽중앙은행(ECB)은 독일 연방은행, 이탈리아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과 함께 민간 토권화 자산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최종 자금결제를 지원 하는 실험<sup>163)</sup>을 수행하였다.

독일 연방은행(2023~2024년)은 스마트 계약 기반의 지급지시 중계 시스템(트리거 솔루션)을 통해 외부 토권화 자산 플랫폼과 T2를 연계하고, 토권화 자산 플랫폼의 거래대금을 T2에서 결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163) 독일 연방은행은 유럽의 거액결제시스템인 T2를,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신속지급시스템인 TIPS를, 프랑스 중앙은행은 자체 구축 DLT 플랫폼인 DL35(Digital Ledger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를 활용하였다. TIPS는 유로시스템의 신속지급시스템으로 연중무휴(24/7)로 운영되며 기업과 개인 모두 동 시스템을 통하여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지원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이 이에 해당한다.

164) CBDC는 가계,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과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 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wholesale) CBDC'로 구현될 수 있다.

## 독일 연방은행 테스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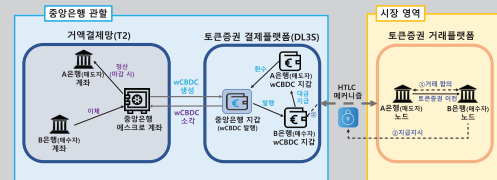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탈리아 중앙은행(2023~2024년)은 신속지급시스템인 TIPS와 외부 토권화 자산 플랫폼을 중계하는 플랫폼(TIPS Hash-Link)을 구축하였다.

프랑스 중앙은행(2023~2024년)은 DLT기반 대금 결제 플랫폼(DL3S)에 기관용 CBDC<sup>164)</sup>를 발행하고 이를 토권증권 결제에 활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 프랑스 중앙은행 테스트 구조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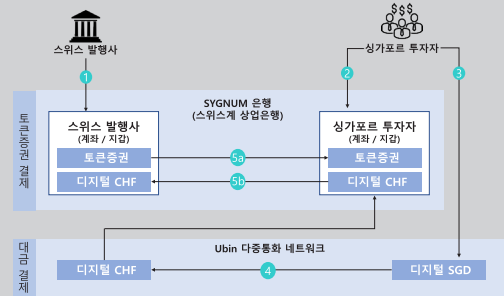
이후 유럽중앙은행은 토권화 자산 결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실험들을 바탕으로 민간 DLT 플랫폼과 중앙은행 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젝트 폰테스(Pontes)를 승인하는 한편, 차세대 유럽 금융시장 인프라의 설계 방향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아피아(Appia)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싱가포르 통화청 (Project Ubin, 2017~2020년)

싱가포르 통화청은 DLT를 기반으로 한 ① 거액결제시스템 구축 가능성 모색, ② 은행 간 결제 테스트, ③ 증권 대금동시결제 테스트, ④ 국가 간 지급(영국·캐나다·싱가포르 3개국 간) 개선, ⑤ 다중 통화(multi-currency)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5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소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DLT 기반 거액결제시스템에서 기관용 CBDC 활용 자금결제에 대한 개념검증이 이루어졌으며, 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실제와 유사한 거래환경에서의 실시간 및 다자간 결제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3단계에서는 토큰화 자산 플랫폼과 DLT기반 거액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싱가포르 국채 등 토큰증권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4단계와 5단계는 국가 간 지급에 대한 실험으로, 4단계는 캐나다 중앙은행, 영란은행 및 주요 상업은행들과 진행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이종의 디지털 통화(CBDC, 예금 토큰 등)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Ubin V)을 구축하여 가치중명<sup>165)</sup>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 Ubin V 활용 해외 주식 매입 및 결제 절차



- ① 스위스의 주식 발행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SYGNUM 은행에 토큰화 위임
- ② 싱가포르 투자자가 SYGNUM 은행의 플랫폼에서 동 토큰증권 구매를 신청
- ③ 싱가포르 투자자가 디지털 싱가포르달러(DSGD)를 Ubin V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 ④ Ubin V 네트워크가 환율을 적용하여 디지털 싱가포르달러(DSGD)를 디지털 스위스프랑(DCHF)으로 변환한 후 싱가포르 투자자의 SYGNUM 은행 지갑에 입금
- ⑤a SYGNUM 은행이 싱가포르 투자자를 토큰증권의 소유권자로 등록하고 토큰증권을 투자자의 지갑으로 전송
- ⑤b 스위스 주식 발행사의 SYGNUM 은행 지갑에 주식 판매대금(DCHF) 입금

자료: 싱가포르 통화청, 한국은행

## 스위스 중앙은행 (Project Helvetia, 2019년~)

스위스 중앙은행은 토큰증권 거래소 플랫폼에 기관용 CBDC를 발행하여 토큰증권 거래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자체 DLT 플랫폼이 아닌 민간기관인 거래소 플랫폼(SDX, SIX Digital Exchange)<sup>166)</sup>에서 기관용 CBDC를 발행<sup>167)</sup>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험에는 중앙은행 노드<sup>168)</sup>, 공증 노드, 상업은행 노드, 관찰자 노드가 참여하였으며, 중앙은행 및 관찰

165) 기술적 실험을 넘어 해당 블록체인 지급 네트워크의 사업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166) 스위스의 금융인프라 기업인 SIX Group이 구축한 완전 규제된(fully regulated)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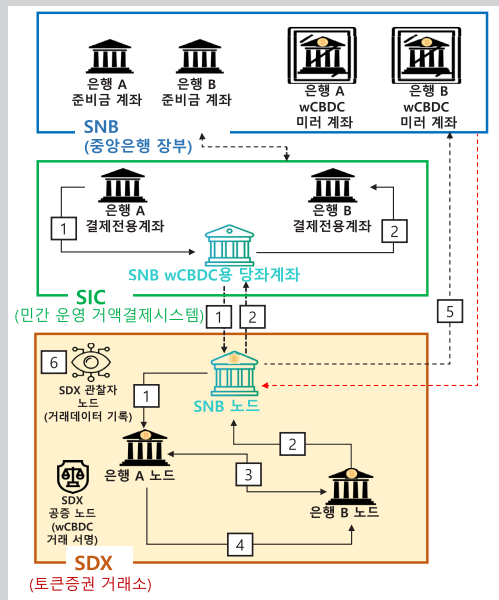
167) 이러한 형태의 CBDC 발행이 가능한 것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진행한 법적 검토에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라 SDX가 기관용 CBDC의 운영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며, 공법상으로도 중앙은행이 동 CBDC에 대해 지급준비금 수준의 통제권한을 보유할 경우 운영의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68) 노드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원장의 사본을 보관하고 거래를 검증·전파하는 참여자(컴퓨터, 서버 등)를 말한다.

자 노드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공증 노드는 SDX가, 상업은행 노드는 동 실험에 참여한 상업은행들이 운영하였다.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파일럿 프로그램은 2027년 중반에 완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 Project Helvetia 구조



- (구 조) SDX 테스트 플랫폼, SIC 테스트 시스템, 상업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의 핵심 뱅킹 시스템으로 구성
- (일중 프로세스) 상업은행이 SIC 내의 결제 계좌에서 중앙은행 계좌로 자금 예치(기관용 CBDC 발행요청) → SIC가 SDX 내 SNB 노드로 기관용 CBDC 발행지시 전문을 송신 → SNB 노드는 예치금액에 상응하는 기관용 CBDC를 해당 은행 노드로 발행 → 상업은행 노드는 기관용 CBDC를 토권증권 거래대금 결제 등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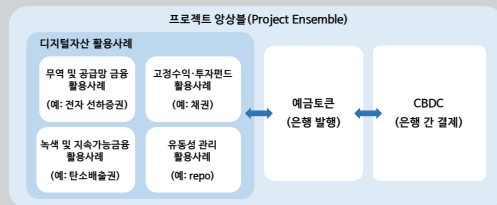
자료: 스위스 중앙은행, 한국은행

### 홍콩 통화청(HKMA) (Project Ensemble, 2024년~)

홍콩 통화청은 2024년부터 토큰화 자산과 기관용 CBDC 및 예금 토큰을 이용한 토큰화 자산 결제 파일럿 테스트인 프로젝트 앙상블을 진행 중이다. 개념검증을 위한 1차 테스트는 앙상블 플랫폼에서 은행들이 예금 토큰을 발행, 이를 토큰화 자산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은행 간 최종 정산은 기관용 CBDC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26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2차 테스트에서는 실제 토큰화 거래 결제 수행을 실험한다. 예금 토큰을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거래에 활용하고 예금 토큰의 은행 간 결제는 RTG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의 형태이다. 장기적으로는 기관용 CBDC 등에 기반하여 연중무휴(24/7) 결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 프로젝트 앙상블 주요 내용



자료: 홍콩 통화청, 한국은행

## 참고 IV-2.

###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내용

USDT, USDC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수단성·통화성 등을 감안하여 법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적정 재무요건·지배구조 등을 갖춘 적격 업체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준비자산을 발행인 고유재산과 분리보관 및 고유동성 안전자산(현금성 자산, 국채 등)으로 구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redemption right)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라는 스테이블코인의 순기능에 주목하면서도 통화·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유럽연합(EU)

EU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Crypto-Assets)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 Regulation)를 제정하였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MiCA는 스

테이블코인을 이머니토큰(EMT, E-Money Token)과 자산준거토큰(ART, Asset-Referenced Token)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달러화, 유로화 등 단일통화에 연동된 이머니토큰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자화폐(E-Money)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EU 내 인가받은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 전자화폐 발행기관(E-Money Institution)만이 발행할 수 있고 준비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신용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복수통화, 자산 등 가치에 연동된 자산준거토큰 발행을 위해서는 EU 내 설립된 자로 적정 자기자본, 지배구조 등을 갖추어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엄격한 준비자산, 공시, 상환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발행 규모, 이용자 수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시스템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중요 스테이블코인<sup>169)</sup> (Significant EMT/ART)으로 별도 분류하여 자기자본, 유동성 등에 대한 추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MiCA의 주요 특징은 유로화 중심의 통화질서 유지를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MiCA는 비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역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당국에 거래량 제한, 발행 중단 등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up>170)</sup>

### 미국

미국은 親가상자산 성향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7월 GENIUS Act를 제정하여 달러 스테

169) MiCA는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 요건으로 아래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3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관계당국은 유럽중앙은행(ECB)과의 협의를 거쳐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
| 1) 보유자 수 1천만명 초과,                            | 2) 발행총액/시가총액/준비자산이 50억 유로 초과, |
| 3) 일평균 거래건수 및 거래대금이 각각 250만건 및 5억 유로 초과,     |                               |
| 4) 발행인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                               |
| 5) 지급/송금 목적 사용 등 국제적인 규모면에서의 중요성,            | 6)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연결성,             |
| 7) 동일 발행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추가 발행하거나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170) 1) MiCA는 교환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으로 사용되는 비유로화 기반 이머니토큰의 분기별 일평균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이 각각 100만건, 2억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을 중단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발행인은 40 영업일 이내에 관할당국에 규정 준수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MiCA 제58조 제3항 및 제23조 참조). 2)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이 특정 비유로화

이블코인의 활성화 추진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발행잔액 100억달러 초과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연준(FRB)·통화감독청(OCC) 등 연방(federal) 규제당국이, 100억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주(state) 규제당국이 소관토록 하여 이원적 규제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171)</sup> 발행인은 부모 예금기관의 자회사,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이 승인한 발행인에 한정되며 발행인에 발행액 100% 이상의 준비자산 보유 및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재무부, 연준, 연방 예금보험공사)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를 설치하여 비금융서비스 상장기업(Non-Financial Services Public Companies)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sup>172)</sup>토록 하였다. 이는 빅테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미국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 금융안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간 정책 협력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 홍콩

홍콩은 가상자산을 국제 금융허브 지위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전반을 포괄하는 스테이블코인 조례

(Stablecoin Ordinance)를 제정하여 202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는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나 홍콩통화청이 지정하는 자산 등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지정 스테이블코인(Specified Stablecoin)으로 정의하고 발행인에 준비자산 관리, 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술·운영 부문 의 역량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홍콩통화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감독 및 AML/CFT 가이드라인<sup>173)</sup>은 발행인에게 발행·유통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거래 차단부터 유통과 관련한 제3자의 규제 준수 역량 확인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sup>174)</sup> 이는 발행·유통·상환 전 과정의 핵심 주제로 기능하는 발행인에 스테이블코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 구분       | EU  | 미국                       | 홍콩                      |
|----------|---|--------------------------|-------------------------|
| 관련 법률    | MiCA  | GENIUS Act               | Stablecoin Ordinance    |
| SC 정의    | 이머니토큰 자산준거토큰                                | 지급(Payment) 스테이블코인       | 지정(Specified) 스테이블코인    |
| 발행인 자격   | 신용기관(은행), 전자화폐업자 <sup>1)</sup>              | 부모 예금기관 자회사, 연방/주 승인 발행인 | 은행, 비은행 (별도 발행 라이선스 필요) |
| 이용자 보호 등 | 준비자산의 분리보관 및 안전자산 구성 등 상환 안전장치(상환 청구권 등) 마련 |                          |                         |

주: 1) 이머니토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반 이머니토큰 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통화정책의 경로 또는 통화주권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관계당국이 유럽중앙은행 의견에 따라 이머니토큰의 발행량을 제한하거나 최소 액면금액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비유료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MiCA 제58조 제3항 및 제24조 제3항 참조).

171) 미국은 연방 차원의 기본적 규율체계를 설정하면서도 연준, 통화감독청, 연방 예금보험공사, 주 규제당국 등 다층적 감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연방(federal) 및 주(state)의 다양한 감독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172) 비금융서비스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에는 스테이블코인 인증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이 필요하다.

173) 「Guideline on Supervision of Licensed Stablecoin Issuers」(HKMA, 2025.8월), 「Guideline on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Financing of Terrorism(For Licensed Stablecoin Issuers)」(HKMA, 2025.8월)

174) 발행인에 이상 거래 식별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고객 정보뿐 아니라 지역정보, IP주소, 기기 정보 등 전달채널 정보까지 확보하도록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위해 활용할 기술적 솔루션이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하고 인가 및 감독과정에서 홍콩통화청에게 검토받도록 하고 있다.

## 참고 IV-3.

### 2025년 10월 11일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원인 및 시사점

####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발표<sup>175)</sup> 후 2025년 10월 11일 새벽 6시 20분경 가상자산 가격 급락<sup>176)</sup>을 계기로 국내외 스테이블코인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USD1<sup>177)</sup>이 1만원 수준까지 상승(업비트, 빗썸)하고 USDT도 5,750원까지 상승(빗썸)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급등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시가총액 세계 3위 스테이블코인인 USDe 가격이 바이낸스에서 0.65달러까지 하락하는 디페깅(depegging)이 발생하였다.

#### 국내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 배경

주요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유동성이 낮은 새벽시간대에 발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급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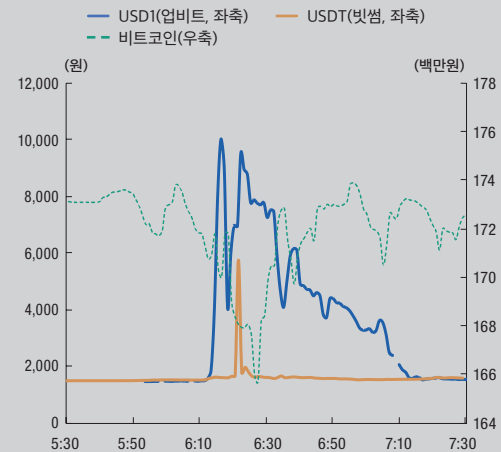
먼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테

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달러의 대체재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가세하였다.<sup>178)</sup>

또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담보 레버리지 선물거래(최대 150배)가 강제 청산되는 것을 피하고자, 스테이블코인을 증거금으로 추가 납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79)</sup>

한편, 빗썸의 경우 USDT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USDT 가격이 상승(대여자산 가치 상승)하면서 고객의 담보비율이 하락하자 거래소가 담보자산을 매도하고 USDT를 시장가로 매수하는 강제청산<sup>180)</sup>이 이루어지면서 USDT 가격이 추가로 급등하였다.<sup>181)</sup>

#### 10월 11일 중 국내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



자료: 빗썸, 업비트

175)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월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하여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76) 비트코인 -18%, 이더리움 -28%, 솔라나 -30% 등(일중 고점대비 최대 하락폭)

177)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가족이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World Liberty Financial에서 발행한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다.

178) 국내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은 토요일 새벽에 발생하였다.

179) 예를 들어서 USDT를 담보로 비트코인 10배 레버리지 선물을 계약한 경우 비트코인 10% 하락 시 강제 청산되므로 청산 전 USDT를 추가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발생한다.

180) 자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2025.10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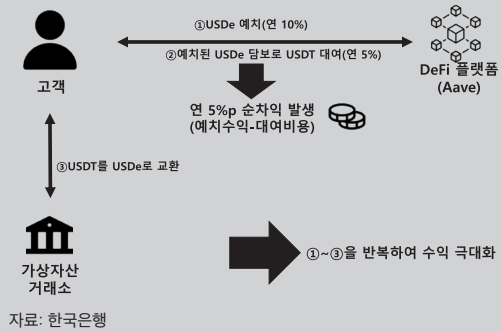
181) USDT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거래소는 1,600원 수준까지만 상승하였다.

## USDe 가격 급락 배경

USDe는 2024년 에테나(Ethena) 랩스가 출시한 합성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법화가 아닌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가격을 1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USDe는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매도하는 델타중립 헤징(Delta-Neutral Hedging)을 통해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현물과 선물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펀딩 레이트<sup>182)</sup>에 따라 수익이 변동된다. 통상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가상자산 가격 상승기에는 수익이, 가상자산 가격 하락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10월경 Aave<sup>183)</sup> 등 일부 DeFi 플랫폼에서 USDe 예치 수익이 USDТ 대여 비용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sup>184)</sup>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USDe를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USDТ를 대여(LTV 80%)받은 후, 이를 바이낸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시 USDe로 교환하여 Aave에 재예치하였다. 투자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를 반복하여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발생시켜 순환차익거래를 실행하였다.

## USDe-USDT 순환차익 거래 프로세스 예시



USDe의 순환차익거래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에서 2025년 10월 11일에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며 가상자산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하회하였다. 이에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자 USDe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매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USDe의 가격이 1달러를 하회(디페킹)하기 시작하였다. USDe 가격이 담보가치(LTV 80%) 이하로 하락하자 대출이 자동 청산(USDe 강제 매도)되어 가격은 추가로 하락하였다. 높은 레버리지의 순환차익거래 구조는 가격 하락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USDe 가격은 0.65달러 수준까지 급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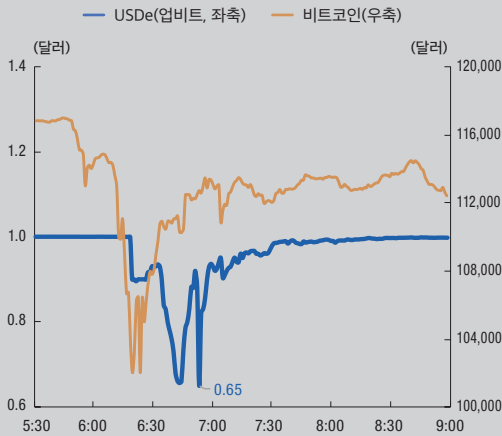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USDe를 담보로 비트코인 등을 레버리지 매수한 포지션을 강제 청산(가상자산 매도)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182) 펀딩 레이트(funding rate)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은 경우 포지션(선물 매도 + 현물 매수)을 가진 투자자가 대금을 수취하고 그 반대의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

183)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탈중앙금융(DeFi) 플랫폼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의 예치 및 대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84) USDТ와 USDe는 모두 1달러 가치를 추종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시장에서 유사한 가치로 거래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예치 수익보다 대여 비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이나 마케팅의 일환으로 예치에 따른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10월 11일 중 바이낸스 USDe 가격 추이



자료: 바이낸스

## 시사점

지난 10월 11일 발생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기법 도입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었다.<sup>185)</sup> 특히 레버리지 규제 및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부 거래소의 운영 부실로 인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sup>186)</sup>

파생상품 거래의 매개체인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시장으로 전이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및 DeFi 등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에 쉽게 노출되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실질적인 여신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거래소의 여신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 이자 지급이 원인이 된 USDe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제도 설계를 더욱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185)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193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186) 당시 바이낸스는 주문 폭주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등을 이유로 전체 가상자산 거래를 10분간 정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격 하락 및 소비자 피해가 증대되었다. 바이낸스는 USDe 등의 가격 하락과 관련하여 강제 청산으로 손실을 입은 사용자들에게 약 2.8억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참고 IV-4.

###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의 현황 및 활용 가능성

#### 블록체인의 유형

블록체인<sup>187)</sup>은 크게 접근 허가 방식과 활동 통제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누구나 데이터 열람 등이 가능한 퍼블릭, 신원이 확인된 제한된 이용자만 가능한 프라이빗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드<sup>188)</sup>로서 누구나 데이터를 검증하고 블록 생성을 통해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비허가형, 허가된 이용자로 제한하는 허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블록체인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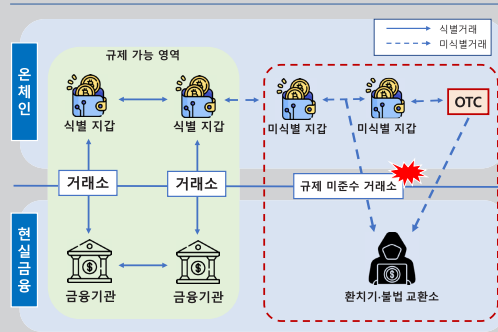
|          |      | 활동 통제 수준   |  |
|----------|------|--|--|
|          |      | 허가형  | 비허가형   |
| 접근 허가 방식 | 퍼블릭  | · 누구나 데이터 열람 가능<br>· 운영기관이 거래, 노드 운영 등의 활동 유형을 제한<br>예) Canton, Polymesh | · 누구나 데이터 열람, 거래, 노드 운영 등의 활동이 가능<br>예) 이더리움     |
|          | 프라이빗 | · 허용된 이용자만 참여<br>· 운영기관이 활동 유형을 제한<br>예) 한국은행 한강 플랫폼                     | · 허용된 이용자에 대해 거래 등 활동 유형에 대한 허가가 불필요(실제 사례는 제한적) |

자료: 한국은행

### 기존 블록체인의 문제점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더리움, 솔라나 등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성 특성으로 인해 거래주체의 신원 확인(KYC)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규제체계 내에서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 방지 및 적발이 어렵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등 신고사업자 밖에 있는 비수탁형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으로 자금이 이전된 후에는 자금 추적 및 규제 준수 여부 감독 등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링(whitelisting)<sup>189)</sup>, 블랙리스트링(blacklisting)<sup>190)</sup>, 지오펜싱(geo-fencing)<sup>191)</sup> 등 접근제어 관련 다양한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으나 현재로서 기술적으로 완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 현행 거래소 중심의 규제체계 우회 가능성



자료: 한국은행

187)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거래내역 등)를 블록에 저장하고 여러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 분산원장기술(DLT)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188) 노드(Node)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별 컴퓨터나 서버를 의미하며, 각 노드는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189) 사전 신원확인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 이용자에게 한해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90) 제재 국가, 범죄 등과 관련이 있는 지갑 주소에 대해서 특정 거래나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91) 온라인상에서 위치 관련 정보를 통해 특정 국가 및 이용자 등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은 탈중앙성(decentralization)이 높으나 확장성(scalability)이나 보안성(security) 측면에서는 타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sup>192)</sup> 또한 개인정보 보호(privacy)에도 취약하여 대규모 거래가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되는 지급결제인프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이용 혼잡도에 따라 거래비용과 속도가 수시로 변동하며, 일부 블록체인의 경우 거래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거래 검증자 수를 축소하고 검증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네트워크 신뢰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또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 열람이 자유롭게 가능함에 따라 지갑 주소가 노출될 경우 거래 기밀이 노출될 위험도 상존한다.

이에 일부 금융기관들은 프라이빗-허가형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sup>193)</sup> 이러한 방식은 검증자 수가 적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허가된 사용자만 참여가 가능하여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등 규제 준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한적 참여 구조로 인해 사용자 확보 및 서비스 개발 등 생태계 확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의 특징 및 사례

이러한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퍼블릭-허가형 등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퍼블릭-허가형 블록체인은 누구나 원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면서도, 거래 수행이나 노드 운영(합의 참여) 등 특정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KYC 등을 거치도록 하여 활동 유형별로 통제가 가능하다.<sup>194)</sup>

이러한 규제 친화적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에는 전통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활용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토큰화 등에 활용되는 Canton 네트워크<sup>195)</sup>, 부동산 토큰화 등에 활용되는 Polymesh 네트워크<sup>196)</sup> 등이 있다.

퍼블릭-허가형 블록체인은 프라이빗-허가형 블록체인에 비해 데이터가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참가자 활동 유형별로 통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달리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프라이빗-허가형 대비 보안성, 확

192)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탈중앙성(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권력을 분산하여 갖는 속성), 확장성(많은 거래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속성), 보안성(네트워크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는 속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블록체인 트릴레마). 예를 들어, 탈중앙성과 보안성이 높은 경우 네트워크상 수많은 검증자가 블록 생성에 참여함에 따라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탈중앙성과 확장성이 높은 경우 네트워크상 수많은 검증자가 빠르게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증 절차가 단순해야 하므로 약의적인 노드가 네트워크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93) 상대적으로 보안성과 확장성이 우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적어 지급결제인프라로 기능하기에 보다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예로 한국은행 한강 플랫폼, JPM Coin, Citi Token Services 등이 있다.

194) 예를 들어, KYC를 거치지 않은 참여자는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의 열람 등만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기존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에서도 스마트 계약 등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있다(ERC-3643 등). 그러나 블록체인 단계에서부터 이를 도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규제 준수에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195) Canton 네트워크는 금융기관 및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퍼블릭-허가형 네트워크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 등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에서 규제 준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높은 확장성 등을 특징으로 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196) Polymesh 네트워크는 부동산 등 주로 실물자산의 토큰화를 위해 신원확인(KYC)을 기반으로 구축된 규제 친화적 퍼블릭-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이용자는 외부 업체를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온체인 신원(DID)을 발급받아야만 네트워크에서 거래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장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향후 활용 가능성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허가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세계적인 규제 강화 추세와 기존 금융권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친화적인 허가형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이 일상적인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용될 경우 이용자들의 거래 대상,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관 간 거래자금이체나 중요 소액결제시스템 등 거래 속도와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거래에는 프라이빗-허가형 블록체인이, 소액송금 등의 거래에서는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증권 및 부동산 토큰화 시장 등 규제 준수 및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 부문에서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준수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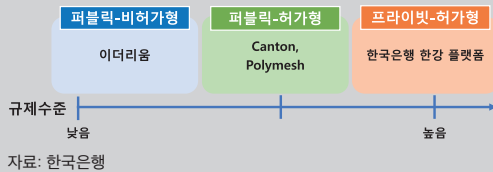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시사점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어떤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 가능 수준, 생태계 확장 가능성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기술적 측면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개방성이 높은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에서는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프라이빗-허가형의 블록체인에서는 생태계 확장을 원하는 일부 업계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개방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규제 준수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에서 발행된다 하더라도 브리지<sup>197)</sup> 등을 통해 규제 수준이 낮은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사설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통한 신원확인 은 엄밀성이 떨어지는 등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발행주체의 규제 준수 의지 및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 공존



197)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참고 IV-5.

### 토큰증권 법제화 현황 및 시사점

#### 법제화 내용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개정안은 계좌관리를 위한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 등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sup>198)</sup>의 토큰화(조각투자증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일정요건(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등)을 갖춘 발행인이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고객의 보유 내역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양한 조각투자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장외 유통시장의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동 법제화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증권에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법제화 의의

이번 법제화는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고 조각투자증권 투자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지급수단의 토큰화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토큰증권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은 유통플랫폼 운영자 등이 거래내역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지급수단의 토큰화가 도입되면 스마트 계약이 보다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장기적 정책 고려사항

앞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조각투자증권을 넘어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통화정책, 지급결제, 금융안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스마트 계약 보편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 측면에서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디지털화폐, 한은금융망 등 중앙은행 결제서비스가 토큰증권 결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에 IT 장애 등 운영리스크가 발생하거나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자의 상환요구가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감독·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198)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정형적 증권(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과 비정형적 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정형적 증권은 발행인이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부동산·저작권 등 비금전자산을 신탁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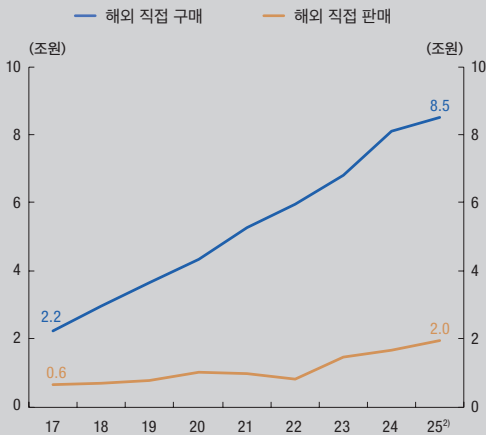
## 참고 IV-6.

###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 검토 배경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물 등을 통해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이하 '직구')하는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 2025년 기준 약 8.5조원에 달한다. 반면 해외 소비자의 국내 상품 직접 구매(이하 '역직구')는 약 2.0조원에 머물러 K-팝, K-뷰티 등 한류 열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 해외 직접 구매(직구) 및 판매<sup>1)</sup>(역직구)액 규모



주: 1) 온라인 면세점 판매 제외

2) 2025년은 잠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역직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하나는 외국인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sup>199)</sup>하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판매자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로<sup>200)</sup>이다.

국내 판매자들이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해외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면 비교적 쉽게 상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해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 여건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sup>201)</sup> 이러한 배경에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 해외 소비자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제약 요인

온라인 쇼핑은 대면 확인이 가능한 오프라인 쇼핑 대비 지급수단 정보유출에 따른 도용 등에 취약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해외 주요 플랫폼과 달리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대금지급 단계가 아닌 회원가입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금지급 시에는 해외에서 발급된 지급수단(지급카드, 간편지급 서비스 등)을 사용하기 어려워 외국인의 국내 플랫폼 이용에 제약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 플랫폼은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회원가입 시 국내에서 개통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 소비자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 주요 플랫폼의 경우 회원가입 희망자가 기재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송하고 이를 회신 받음으로써 향후 거래내역 등의 통보에 사용될 매체의 점유만 확인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199) 현재 쿠팡, 네이버쇼핑 등 내국인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물은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려워 주로 G마켓 글로벌, 올리브영 글로벌 등 별도의 외국인 전용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 예컨대 신세계그룹의 국내 우수 제품 발굴 역량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및 AI 번역·물류 서비스 등을 결합하는 파트너십이 추진되고 있다.

201) 일례로 한국 화장품은 2024년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1위(2위 프랑스)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판매되었으나,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의 경우 판매 수수료 인상, 높은 광고비·물류비 부담, 수입 관세 추가 부과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국내 플랫폼은 해외에서 발급된 지급카드 가맹률이 낮은 데다,<sup>202)</sup> 해외에서 널리 이용되는 PayPal, Alipay 등 간편지급 서비스를 지급수단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 발급 지급카드의 높은 수수료,<sup>203)</sup> 지급수단 도용 등 분쟁 발생 시 대응 애로 등이 해외 발급 지급수단의 취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주요 플랫폼은 국외에서 발급된 지급카드, 간편지급 서비스 등을 폭넓게 지원하여 글로벌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sup>204)</sup>

## 해외 소비자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해외 소비자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을 늘려 역직구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회원가입의 문턱을 해외 주요 플랫폼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에서 해외 발급 지급카드가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지급수단 도용 관련 분쟁 대응 부담을 줄이는<sup>205)</sup> 등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주요 간편지급 서비스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프라인 QR 지급 연계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sup>206)</sup> 특히 QR 지급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어 온라인에

서 사용 가능해지면 외국인의 역직구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 해외 소비자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회원가입 및 대금지급 편의성 제고

|            | 회원가입  | 대금지급  |
|------------|---|---|
| 현재 (AS-IS) | 국내 개통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 인증                       | 국내 지급수단 이용 (국내 발급 지급카드, 국내 전용 간편지급 서비스 등)         |
| 개선 (TO-BE) | 이메일, 휴대폰 등을 통한 사용자 확인 (개설 국가, 본인 명의 여부와 무관) | 해외 지급수단 수용 (해외 발급 글로벌 지급카드,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 QR 연계 등) |

자료: 한국은행

최근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한 회원가입을 허용하고, 해외 발급 지급수단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와 소통하며 회원가입 시 국내 개통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의 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해외 발급 지급수단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등을 알리고 변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202)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발급 VISA 카드의 경우 사용 가능한 국내 온라인 가맹점의 비중이 약 3~4%에 그치고 있다.

203) 국내 발급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2% 내외, 해외 발급 신용카드는 3~4% 내외로 그 차이가 크다.

204)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은 한국 배송 선택 시 국내 간편지급 서비스(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기반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

205) 글로벌 브랜드 지급카드사가 지원하는 3DS(Three-Domain Secure) 등 인증서비스를 활용하면 지급수단 도용 등 부정사용 발생 시 일반적으로 가맹점 면책이 가능하다. 참고로 3DS란 온라인 결제 시 지급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입력 외에 추가로 비밀번호, SMS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206) 인도네시아와의 국가 간 QR 지급 연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결제 범위 확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V. 주요 현안 분석 > 3. 국가 간 지급서비스 연계 강화」를 참조하기 바란다.



---

# 보충 설명

|                        |    |
|------------------------|----|
| 1. 지급결제 프로세스           | 79 |
| 2.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 81 |
| 3. 외화의 지급 및 결제         | 83 |
| 4. 금융시장인프라             | 85 |
| 5.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 87 |



## 보충 설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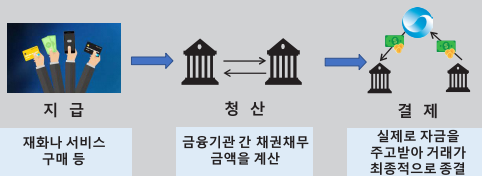
### 지급결제 프로세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이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금을 제외한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예금반환청구권의 이전수단이다. 이러한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채권·채무관계 종결을 위해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할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현금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표시하는 수단이다. 다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은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청산,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 지급-청산-결제 프로세스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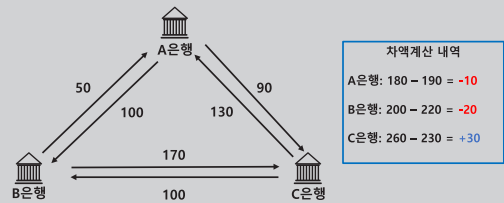
### (지급)

지급은 지급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취인 앞으로 지급수단을 통해 예금반환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다. 즉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주거나 지급카드를 통해 청구권의 이전을 의뢰하거나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청산)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예금반환청구권)을 확정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청산기관이 거래당사자 간에 개입해 결제를 위해 제시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이나 결제 전의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포함된다.

### 청산 과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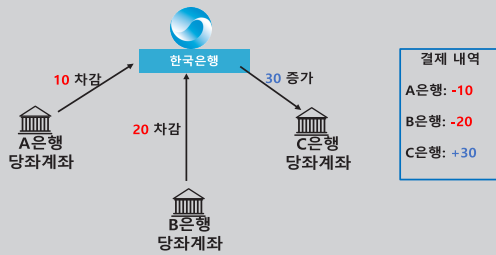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결제)

결제는 청산 과정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과정이다.

### 한은금융망을 통한 최종 결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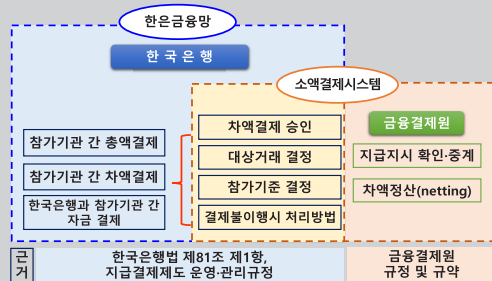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보충 설명 2.

###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sup>207)</sup> 간 연계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을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이에 근거한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 왔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한은금융망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자료: 한국은행

이에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과 관련해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참가기준 결정,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등의 결제리스크 관리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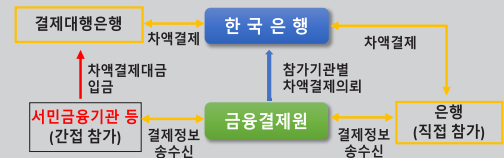
### (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자사가 운영하는 개별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참가기관 간 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최종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해당 결제시스템에 대한 차액결제 허용 여부와 대상거래를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어음교환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 간 거래가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차액결제 방식으로 최종결제 되고 있다.

### ( 참가방식 결정 )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참가기관인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반면 간접참가기관인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은 은행이 차액결제를 대행해 주고 있다.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방식



자료: 한국은행

207) 금융결제원은 개별 소액지급시스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확인·중계,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 납입한 담보를 근거로 한 유동성 지원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참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 채무액의 상한(순이체한도)을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우량채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사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시 참가기관이 차액결제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활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여 차액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보충 설명 3.

### 외화의 지급 및 결제

#### (외화의 지급)

경제주체들은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결제, 외화 차입을 비롯한 금융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화를 주고받는 거래를 하게 되며, 외화는 원화와는 다소 상이한 구조로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진다.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간 자금 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은금융망과 같은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해외 소재 금융기관의 원격 참여(remote access)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금융기관 간 지급 및 결제를 대행하는 중계기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은행을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한다. 환거래은행은 전 세계에 소재한 지점망, 그리고 각국 은행과의 계좌 계약을 통해 국가 간 자금 이체를 수행함으로써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중계한다.

#### (외화 지급 세부 절차)

은행들이 환거래은행을 통해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거주 고

객의 외화 송금 요청이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되면 은행 담당자는 해당 송금 요청이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 등을 준수하는지 심사하며<sup>208)</sup>,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고객의 원화 계좌에서 외화 송금액 상당의 원화 자금을 차감한 후 거래하고 있는 환거래은행 내 개설해 둔 자행 명의 계좌에 외화 송금액을 입금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은행은 환거래은행과 원화 매도, 외화 매수 거래를 수행하여 외화 자금을 조달한다.<sup>209)</sup> 이와 동시에 해당 환거래은행에 송금 요청 전문을 국제금융통신망인 SWIFT<sup>210)</sup>를 통해 송신한다.

전문을 수신한 환거래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에 의거하여 요청받은 송금 건을 심사한 후, 수취인 계좌를 보유한 은행(수취은행)으로 송금 요청 전문과 자금을 전달(relay)한다. 이 과정에서 환거래은행과 수취은행의 소재지 및 거래관계에 따라 수취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다른 환거래은행이 추가로 개입되기도 한다.<sup>211)</sup>

수취은행은 수취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국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심사를 시행한 후 수취인에게 자금을 최종 입금함으로써 외화의 지급 및 결제가 완료된다.

208)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제재대상인지, 자금의 출처가 적법한지 등을 심사한다.

209) 해당 계좌에 충분한 외화 자금이 이미 입금되어 있을 경우, 외화 송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210)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전 세계 상업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 간 금융통신망이다.

211) 환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환거래은행 본점 또는 지점이 수취은행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환거래은행이 직접 수취은행에 자금을 이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취은행에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다른 환거래은행으로 송금 요청 전문과 자금을 전달한다.

## 은행의 국가 간 송금 처리절차



자료: 한국은행

한편 일부 국내은행은 자신의 환거래은행 내 계좌에 여타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예치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영업시간 내에 외화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서는 ‘국내은행 간 외화자금 이체시스템’, 해당 통화국 입장에서는 ‘역외청산시스템(off-shore clearing system)’이라 한다.

### ( CLS시스템 )

원화를 매도하고 미 달러화를 매수하는 거래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원화는 국내에서 지급하고, 미 달러화는 환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수취하기 때문에 원화 지급 후 거래 상대방이 미 달러화를 지급하지 않는 원금리스크(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BIS CPSS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방안을 논의한 끝에 전 세계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특수은행(CLS은행)을 미국 뉴욕에 설립(1999년)했으며, 현재 전 세계 18개 통화 간 외환거래가 동 은행을 통해 결제되고 있다. 원화는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2004년 동 시스템의 결제통화로 지정되었다.

CLS은행은 모든 결제통화국의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며 각국에서 CLS은행 앞으로 매도

통화 금액을 납입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만 매수 통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환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 보충 설명 4.

### 금융시장인프라

금융시장인프라는 시스템 운영기관을 포함한 참가 기관들 사이의 다자간 시스템으로 지급, 증권, 파생 상품 등 금융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며 금융안정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기능에 따라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 ( 자금결제시스템 )

자금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를 위한 수단, 절차 및 규정의 집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나 증권거래, 외환거래 등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한은금융망이 이에 해당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 결제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를 주로 처리한다.

#### ( 중앙거래당사자 )

중앙거래당사자는 하나 또는 다수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거래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가 되고 모든 매수자에게는 매도자가 됨으로써 미결제계약의 이행을 보장한다.

또한 다자간 차감을 통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유동성을 절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 중앙예탁기관 )

중앙예탁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 권리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가 아닌 예탁자 계좌부의 계좌대체를 통해 처리한다. 계좌대체 방식의 결제는 실물증권의 이전에 의한 결제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증권의 분실, 도난 등의 리스크가 없다.

#### ( 증권결제시스템 )

증권결제시스템은 장부상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이전을 통해 증권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증권결제는 증권(대금)을 인도(지급)하였지만 대금(증권)을 지급(인도)받지 못하는 원금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결제와 자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 ( 거래정보저장소 )

거래정보저장소는 금융거래 데이터에 대한 기록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거래정보의 수집, 저장 및 배포를 집중함으로써 금융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남용의 포착 및 방지를 지원한다.

####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

금융시장인프라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유동성 부족 및 신용 손실과 같은 금융충격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BIS CPMI와 IOSCO는 국제기준으로서 PFMI를 2012년 4월 16일에 공표하였다.<sup>212)</sup>

PFMI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과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G20 및 FSB 회원국 간 합의를 반영한 간접적 이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금융시장인프라와 유관당국은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 지급결제 환경 및 법규체계 등을 고려하여 동 원칙을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준 및 관련 규제·감독·감시기준에 적용해야 한다.

---

212) BIS CPMI(당시 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와 IOSCO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2001.1월),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2001.11월) 및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2004.11월)를 지급결제분야의 3대 국제기준으로 수립·운영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FSB 등을 중심으로 금융불안 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인프라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정·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0년부터 BIS CPMI와 IOSCO는 기존 3대 국제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여 2012년 4월 PFMI를 공표하였다.

## 보충 설명 5.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sup>213)</sup>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sup>214)</sup>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증권·외환결제시스템 등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추를 이루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이와 연계된 소액·증권·외환결제시스템의 결제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분석하면서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위기 징후(결제지연 또는 결제불이행 등)를 어느 기관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셋째,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된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의 금융거래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기능을 통해 경제 전체에 파급된다.

넷째,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기초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 소요자금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성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규모, 파급영향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파급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025년 말 기준 한은금융망을 포함해 10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있고 결제규모 등을 고려해 22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213)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란 다양한 결제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어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효율성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 증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은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

214)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s a central bank function whereby the objectives of safety and efficiency are promoted by monitoring existing and planned systems, assessing them against these objectives and, where necessary, inducing change."(BIS CPMI, Central Bank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2005.5월)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 구분                 |  | 운영기관                            |             |
|--------------------|--|---------------------------------|-------------|
|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10개)  | 한은금융망  | 한국은행                            |             |
|                    | 어음교환시스템  | 금융결제원                           |             |
|                    |  |                                 | 금융공동망       |
|                    |  |                                 | 타행환<br>전자금융 |
|                    |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 한국예탁결제원                         |             |
|                    | 기관간RP결제시스템   | 한국거래소,<br>한국예탁결제원               |             |
|                    |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                                 |             |
|                    |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 한국거래소                           |             |
|                    |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 한국거래소                           |             |
|                    | CLS시스템 <sup>1)</sup>   | CLS은행                           |             |
| 기타 지급결제 시스템 (22개)  | 지로시스템  | 금융결제원                           |             |
|                    | 금융공동망  |                                 | CD          |
|                    |  |                                 | 자금관리서비스     |
|                    |  |                                 | B2C 전자상거래   |
|                    |  |                                 | B2B 전자상거래   |
|                    |  |                                 | 직불카드        |
|                    |  |                                 | 지방은행        |
|                    |  |                                 | 국가 간 공동망    |
|                    | 오픈뱅킹   |                                 |             |
|                    | BC카드결제시스템  | BC카드사                           |             |
|                    | 외화자금이체시스템  | 하나은행,<br>우리은행,<br>신한은행,<br>국민은행 |             |
|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지급결제시스템 | 농협중앙회,<br>수협중앙회,<br>상호저축은행중앙회,<br>새마을금고중앙회,<br>신협중앙회,<br>산림조합중앙회 |                                 |             |
|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 한국예탁결제원  |                                 |             |
| 위안화 청산시스템          | 교통은행 서울지점  |                                 |             |

주: 1) 외국 중앙은행들과 협조적 감시업무를 수행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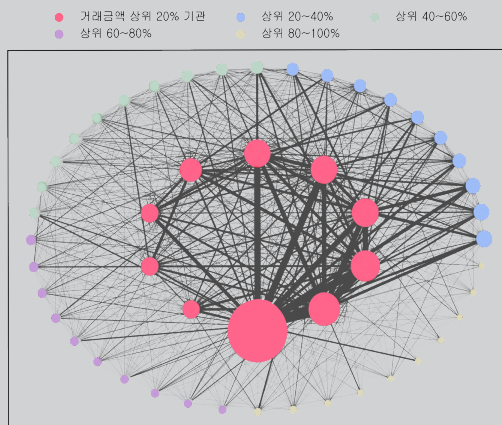
한국은행의 감시업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정기 모니터링은 일, 월, 분기 단위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양적 정보, 리스크 정보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은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참가기관에 대해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PFMI이다. 한국은행이 동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의 국제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PFMI는 리스크 통제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24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각 원칙은 금융시장인프라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한은금융망 자금결제 모니터링 화면



자료: 한국은행

---

# 부록

|                              |     |
|------------------------------|-----|
| 1. 2025년 중 주요 일지             | 91  |
| 2.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 93  |
|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 94  |
| 4. 주요 통계                     | 95  |
| 5. 용어 해설                     | 100 |
| 6. 약어                        | 102 |
| 7. 표 및 그림                    | 103 |
| 8.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 105 |



# 1. 2025년 중 주요 일지

| 시기           | 주요 내용  |
|--------------|--|
| 2025. 1. 15. | 금융위원회,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개최<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li> <li>·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li> </ul>                       |
| 1. 16.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5조원 확대 운용<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li> </ul>  |
| 3. 4.        |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증거금 예탁시한 조기화<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증거금 예탁시한을 기존 T+1일 15시에서 T+1일 14시로 조기화</li> </ul>  |
| 3. 24.       |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25일부터 각 참가은행별로 사전모집 진행</li> </ul>   |
| 3. 25.       | 한국은행,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3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와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li> </ul>   |
| 4. 7.        | 모바일현금카드 삼성월렛과 서비스 연동 개시<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들은 모바일현금카드 공동앱 외에도 삼성월렛 앱을 통해 17개 금융기관 ATM 입출금, 상거래 결제,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를 모두 이용 가능</li> </ul>  |
| 4. 21.       | 한국은행,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중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 동향,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혁신 촉진 업무 수행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포함</li> </ul>  |
| 6. 9.        |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자체 야간거래 시행(18:00~익일 6:00, 10개 종목)<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Eurex 연계(18:00~익일 5:00, 5개 종목) 대비 거래시간 1시간 연장 및 거래종목 5개 확대</li> </ul>  |
| 6. 25.       | 한국은행, 보다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2025.7.10일 시행)<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유동성 흡수 필요 규모가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등 최근 공개시장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RP 매매를 유동성 흡수와 공급을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등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li> </ul> |
| 7. 20.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14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 참석<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근화의 리스크와 기회,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금융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li> </ul>   |
| 8. 11.       | 한국은행, 베트남 중앙은행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체결<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 개정을 통해 통화정책·금융안정·지급결제·발권 등 중앙은행 업무수행과 관련된 협력 분야를 구체화</li> </ul>   |
| 8. 14.       | 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증권 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확대 계획 발표</li> <li>· 기존 9:00~17:30에서 2시간 30분 연장한 9:00~20:00로 변경</li> </ul>                  |

| 시기      | 주요 내용   |
|---------|---|
| 9. 3.   | <p>금융위원회,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제한적 유예 및 개선 방안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 시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 유지를 전제로 비조치하되,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 조건 부과</li> </ul>   |
| 9. 5.   | <p>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명확한 범위 규정, 이용자 보호장치 및 시장안정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마련</li> </ul>   |
| 10. 1.  | <p>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고 공시자료 검증을 강화</li> <li>•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하여 다단계 PG 구조를 완화하고 미등록·부실 PG사를 정비</li> </ul>  |
| 10. 27. | <p>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기대효과,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 및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li> </ul>  |
|         | <p>한국거래소,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기반 OIS(Overnight Index Swap)에 대한 중앙청산 개시</p> <p>* KOFR: 국제·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사용하여 산출하는 무위험지표금리</p>  |
| 10. 30. | <p>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외환시장 운영시간 연장 및 역외 원화결제시스템(가칭) 구축 등 선진국 통화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 원화거래 접근성 제고를 추진</li> </ul>  |
|         | <p>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1차 실거래 파일럿 결과보고서」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개요, 사전준비 과정, 실거래 파일럿 수행 결과, 주요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포함</li> </ul>   |
| 11. 3.  | <p>한국거래소,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을 장내·외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거래대금에서 거래증거금으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규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위험 유발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li> </ul>  |
|         | <p>한국거래소, 공동기금 현금납부 의무비율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성 공급약정(credit line)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및 유동성 리스크 대응 능력 제고 목적</li> </ul>  |
| 11. 4.  | <p>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공동 콘퍼런스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FR 확산 및 시장 정착을 위한 추진 과제를 살펴보고 RP 시장의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li> </ul>   |
| 11. 19. | <p>금융위원회,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오프라인 은행영업점까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금융소외계층, 주거래은행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li> </ul>   |
| 12. 16. | <p>「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li> </ul>  |
| 12. 29. | <p>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증권의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및 운영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기관별로 별도 수집·입력·검증하던 증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li> <li>• 발행·유통·권리 흐름 전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li> </ul> |

## 2.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 총 134개 기관 (은행: 52, 비은행: 82)<sup>1)</sup>

| 분류          |                    | 가입기관명  |  |
|-------------|--------------------|--|--|
| 은행<br>(52)  | 국내은행<br>(20)       | 시중   | 우리, SC, 국민, 신한, 아이엠, 한국씨티, 하나, 케이, 카카오, 토스 |
|             |                    | 지방   |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             |                    | 특수   |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수출입                        |
|             | 외은지점<br>(32)       | 뉴욕멜론, 대화, 도이치, 엠유에프지, 멜라트,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소시에테제네랄, 스테이트스트리트, DBS, 크레디아그리콜CIB, 유바프, 중국, 중국공상, 파키스탄국립, 호주뉴질랜드, BNP파리바, BOA, UBS, HSBC, ING, JP모간체이스, OCBC, 중국건설, 교통, 모간스탠리, 바덴뷔르템베르크, 중국농업, 교통(청산),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 인도네시아농가라, 중국광대   |  |
| 비은행<br>(82) | 금융<br>투자회사<br>(47) | 교보, 대신, 미래에셋증권, DB, 유안타, 리딩투자, 부국, 삼성, NH투자, 신영, 현대차, 유화, 아이엠, 코리아셋, 키움, 흥국, 하나, 한국투자, 한양, 한화투자, KB, KIDB채권중개, SK, 신한투자, 상상인, 메리츠, 유진투자, 엘에스, 케이프투자, 디에스투자, 다올투자, IBK투자, 카카오페이,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비엔케이투자, 노무라금융투자, 다이와증권코리아, 한국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증권, 케이알투자, 토스,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넥스트 |  |
|             | 보험회사<br>(18)       | 한화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교보생명, KB손해,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DB손해, 농협생명, 메리츠화재해상, 흥국화재, 하나생명, 롯데손해, DB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 하나손해, 현대해상화재   |  |
|             | 기타<br>(17)         |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중앙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금중개,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CLS, 서울외국환중개, 농협중앙회, 비지시캐피탈마켓, GFI코리아외국환중개, 트레이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 털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 수협중앙회   |  |

주: 1) 2025년 12월 31일 기준

###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 운영기관  | 시스템명            | 운영규칙   | 효력발생일시              |
|-------|-----------------|--|---------------------|
| 한국은행  | 한은금융망           |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동 절차   | 2006.8.21.<br>09:30 |
| 금융결제원 | 전자금융공동망         |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 2006.8.21.<br>07:00 |
|       | 타행환공동망          | 타행환업무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 2006.8.21.<br>09:30 |
|       | CD/ATM공동망       | CD/ATM공동망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 2006.8.21.<br>07:00 |
|       | 어음교환시스템         | 어음교환업무규약,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규약, 전자어음업무규약, 내국신용장판매대금추심의뢰서교환규약 <sup>1)</sup> , 기업구매자금융어음 정보교환규약 및 각 규약의 시행세칙, 재해·경영상 긴급상황 발생 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규약 | 2014.1.10.<br>00:00 |
|       | 지로시스템           | 지로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                     |
|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이용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                     |
| CLS은행 | CLS시스템          | CLS Bank International Rules, Settlement Member Agreement  | 2006.8.21.<br>09:30 |

주: 1) 내국신용장어음의 경우에는 원화 및 미 달러화 표시에 한함

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제336조에서 준용)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

## 4. 주요 통계

### 가.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건수 및 결제금액

(일평균, 천건, 십억원, %)

|                         |                         | 2022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건<br><br>수              | 한은금융망                   | 23.3   | 23.3    | 25.5    | 28.8    | 12.7    |
|                         | 소액결제시스템                 | 36,230 | 39,878  | 44,051  | 45,431  | 3.1     |
|                         | 어음교환시스템                 | 154    | 114     | 84      | 69      | -17.8   |
|                         | 지로시스템 <sup>1)</sup>     | 4,104  | 4,050   | 4,269   | 4,351   | 1.9     |
|                         | 금융공동망                   | 31,971 | 35,714  | 39,698  | 41,011  | 3.3     |
|                         | (전자금융공동망)               | 21,333 | 23,938  | 26,362  | 27,684  | 5.0     |
|                         | (타행환공동망)                | 238    | 231     | 222     | 214     | -3.6    |
|                         | (CD공동망)                 | 967    | 892     | 821     | 750     | -8.7    |
|                         | (CMS공동망) <sup>1)</sup>  | 4,077  | 4,239   | 4,448   | 4,627   | 4.0     |
|                         | (지방은행공동망)               | 0.3    | 0.3     | 0.2     | 0.2     | -9.0    |
|                         | (전자상거래공동망)              | 121    | 104     | 104     | 95      | -8.9    |
|                         | (직불카드공동망)               | 0.0    | 0.0     | 0.0     | 0.0     | -71.1   |
|                         | (오픈뱅킹공동망) <sup>1)</sup> | 5,234  | 6,310   | 7,740   | 7,640   | -1.3    |
|                         | 금<br><br>액              | 한은금융망  | 524,331 | 554,611 | 616,987 | 723,316 |
| 소액결제시스템                 |                         | 99,279 | 100,071 | 106,443 | 112,755 | 5.9     |
| 어음교환시스템                 |                         | 7,340  | 7,232   | 7,119   | 7,345   | 3.2     |
| 지로시스템 <sup>1)</sup>     |                         | 1,174  | 1,237   | 1,353   | 1,442   | 6.6     |
| 금융공동망                   |                         | 90,765 | 91,602  | 97,971  | 103,968 | 6.1     |
| (전자금융공동망)               |                         | 83,473 | 84,283  | 90,383  | 96,435  | 6.7     |
| (타행환공동망)                |                         | 4,885  | 4,622   | 4,611   | 4,506   | -2.3    |
| (CD공동망)                 |                         | 584    | 514     | 462     | 415     | -10.2   |
| (CMS공동망) <sup>1)</sup>  |                         | 439    | 454     | 460     | 481     | 4.5     |
| (지방은행공동망)               |                         | 4.5    | 4.0     | 4.1     | 3.3     | -19.0   |
| (전자상거래공동망)              |                         | 17     | 16      | 17      | 15      | -8.3    |
| (직불카드공동망)               |                         | 0.0    | 0.0     | 0.0     | 0.0     | -38.7   |
| (오픈뱅킹공동망) <sup>1)</sup> |                         | 1,364  | 1,709   | 2,034   | 2,112   | 3.8     |

주: 1) 입·출금 합계 기준

## 나.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규모

(일평균, 건, 십억원, %)

|                             |                | 2022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건                           | 참가기관 간         | 22,047  | 21,995  | 24,233  | 27,445  | 13.3 |
|                             | 콜자금            | 335     | 400     | 429     | 480     | 11.9 |
|                             | (콜거래시스템)       | 334     | 399     | 429     | 479     | 11.9 |
|                             | (일반자금이체시스템)    | 0.4     | 0.3     | 0.7     | 0.8     | 6.5  |
|                             | 증권자금           | 16,757  | 16,426  | 18,323  | 21,156  | 15.5 |
|                             | (DvP시스템)       | 15,616  | 15,304  | 17,139  | 19,889  | 16.0 |
|                             | (일반자금이체시스템)    | 1,141   | 1,122   | 1,184   | 1,267   | 7.0  |
|                             | 외환자금           | 528     | 615     | 620     | 651     | 4.9  |
|                             | (CLS시스템)       | 40      | 40      | 40      | 41      | 1.4  |
|                             | (일반자금이체시스템)    | 488     | 576     | 580     | 610     | 5.2  |
|                             | 고객자금           | 3,205   | 3,309   | 3,564   | 3,805   | 6.7  |
|                             | (수취인지정자금이체시스템) | 994     | 1,005   | 1,046   | 1,069   | 2.2  |
|                             | (일반자금이체시스템)    | 734     | 759     | 773     | 798     | 3.2  |
|                             | (연계결제시스템)      | 1,478   | 1,545   | 1,745   | 1,938   | 11.1 |
| 차액자금                        | 240            | 238     | 236     | 233     | -1.1    |      |
| 기타                          | 983            | 1,007   | 1,060   | 1,121   | 5.7     |      |
|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                | 1,244   | 1,294   | 1,306   | 1,327   | 1.6  |
| 국고금수급 <sup>1)</sup>         |                | 1,156   | 1,205   | 1,223   | 1,227   | 0.3  |
| 한국은행대출                      |                | 34      | 34      | 29      | 33      | 13.9 |
| 국공채거래 <sup>2)</sup>         |                | 54      | 55      | 53      | 67      | 24.6 |
| 원화자금 합계                     |                | 23,290  | 23,289  | 25,539  | 28,772  | 12.7 |
| 외화자금 합계 <sup>3)</sup>       |                | 8.2     | 9.1     | 8.8     | 8.8     | -0.1 |
| 수                           | 참가기관 간         | 497,264 | 533,321 | 601,122 | 702,783 | 16.9 |
|                             | 콜자금            | 23,058  | 28,047  | 28,795  | 33,144  | 15.1 |
|                             | (콜거래시스템)       | 23,047  | 28,043  | 28,787  | 33,131  | 15.1 |
|                             | (일반자금이체시스템)    | 11.3    | 3.9     | 8.6     | 13.5    | 57.6 |
|                             | 증권자금           | 269,895 | 301,201 | 357,219 | 431,282 | 20.7 |
|                             | (DvP시스템)       | 222,890 | 253,265 | 306,258 | 375,296 | 22.5 |
|                             | (일반자금이체시스템)    | 47,005  | 47,936  | 50,961  | 55,986  | 9.9  |
|                             | 외환자금           | 16,822  | 19,163  | 19,511  | 25,475  | 30.6 |
|                             | (CLS시스템)       | 3,645   | 3,492   | 3,686   | 4,434   | 20.3 |
|                             | (일반자금이체시스템)    | 13,177  | 15,671  | 15,825  | 21,041  | 33.0 |
|                             | 고객자금           | 79,462  | 79,164  | 83,695  | 90,052  | 7.6  |
|                             | (수취인지정자금이체시스템) | 21,046  | 20,372  | 21,099  | 23,614  | 11.9 |
|                             | (일반자금이체시스템)    | 41,505  | 40,797  | 43,274  | 44,972  | 3.9  |
|                             | (연계결제시스템)      | 16,912  | 17,995  | 19,322  | 21,466  | 11.1 |
| 차액자금                        | 27,466         | 26,957  | 28,406  | 28,875  | 1.6     |      |
| 기타                          | 80,560         | 78,790  | 83,497  | 93,955  | 12.5    |      |
|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                | 27,067  | 21,290  | 15,864  | 20,533  | 29.4 |
| 국고금수급 <sup>1)</sup>         |                | 10,398  | 9,175   | 8,969   | 9,493   | 5.8  |
| 한국은행대출                      |                | 3,812   | 3,139   | 2,278   | 2,808   | 23.3 |
| 국공채거래 <sup>2)</sup>         |                | 12,857  | 8,976   | 4,617   | 8,232   | 78.3 |
| 원화자금 합계                     |                | 524,331 | 554,611 | 616,987 | 723,316 | 17.2 |
| 외화자금 합계(백만달러) <sup>3)</sup> |                | 1,637   | 1,210   | 1,195   | 1,240   | 3.8  |

주: 1)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세수납 등)만 포함

2) 국제 및 통안증권 발행·상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거래(환매 포함)

3) 예치 및 인출 포함

## 다.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세부 거래규모

(조원, %)

|                                  | 2022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금수급 <sup>1)</sup>    |         |       |       |       |        |
| 실시간 전자이체                         | 22.6    | 19.6  | 21.3  | 22.7  | 6.7    |
| 파일 송수신                           | 2.8     | 2.7   | 2.7   | 2.9   | 6.9    |
| (국고금 수납)                         | 2.4     | 2.3   | 2.3   | 2.4   | 7.1    |
| (국세 환급)                          | 0.4     | 0.5   | 0.4   | 0.5   | 6.3    |
| 증권시스템을 통한 국공채거래 <sup>2)</sup>    |         |       |       |       |        |
|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         |       |       |       |        |
| (발행)                             | 104.7   | 129.6 | 87.7  | 89.0  | 1.5    |
| (상환)                             | 132.3   | 120.6 | 93.7  | 97.4  | 4.0    |
| 증권매매                             | 1,269.1 | 685.4 | 244.4 | 577.6 | 136.3  |
| (RP 매입)                          | 26.8    | 50.9  | 106.1 | 488.3 | 360.2  |
| (RP 매각)                          | 1,235.3 | 634.5 | 138.3 | 87.8  | -36.5  |
| (단순매입)                           | 7.0     | 0.0   | 0.0   | 1.5   | -      |
| 증권대차(차입)                         | 7.0     | 17.0  | 0.0   | 0.0   | -      |
| 국고채권                             |         |       |       |       |        |
| (발행)                             | 168.6   | 165.7 | 157.7 | 226.2 | 43.5   |
| (상환)                             | 74.8    | 105.2 | 108.5 | 113.9 | 5.0    |
| 외평채권 <sup>3)</sup>               |         |       |       |       |        |
| (발행)                             | 0.0     | 0.0   | 0.0   | 13.7  | -      |
| (상환)                             | 0.0     | 0.0   | 0.0   | 0.0   | -      |
| 재정증권                             |         |       |       |       |        |
| (발행)                             | 16.3    | 44.5  | 49.8  | 48.0  | -3.6   |
| (상환)                             | 16.3    | 44.5  | 49.8  | 48.0  | -3.6   |
| 한국은행 대출 <sup>4)</sup>            |         |       |       |       |        |
| 금융중개지원대출                         | 39.3    | 19.4  | 24.5  | 28.8  | 17.6   |
| 회사채·CP매입기구 <sup>5)</sup> 에 대한 대출 | 1.7     | 0.1   | 0.0   | 0.0   | -      |
| 자금조정대출                           | 0.0     | 0.0   | 0.1   | 0.0   | -100.0 |

주: 1) 일평균 기준

2) 액면금액 기준

3) 2025년 1월부터 원화 외평채 발행 재개

4) 대정부대출금을 제외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의 연말 잔액

5)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SPV)

## 라. 지급수단별 결제규모

(일평균, 천건, 십억원, %)

|        |                       | 2022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건<br>수 | 어음·수표                 | 235    | 177    | 138    | 116     | -16.1 |
|        | 교환제시                  | 154    | 114    | 84     | 69      | -17.8 |
|        | 발행창구제시                | 75     | 57     | 48     | 41      | -13.7 |
|        | 전자어음                  | 6.0    | 5.9    | 5.7    | 5.1     | -10.5 |
|        | 계좌이체 <sup>1)</sup>    | 35,604 | 39,305 | 43,526 | 44,945  | 3.3   |
|        | 지급카드                  | 73,453 | 78,379 | 81,058 | 83,684  | 3.2   |
|        | 후불형(신용카드)             | 46,400 | 50,097 | 51,918 | 52,989  | 2.1   |
|        | (물품 및 용역 구매)          | 46,240 | 49,930 | 51,755 | 52,838  | 2.1   |
|        | (현금서비스)               | 161    | 167    | 163    | 151     | -7.1  |
|        | 직불형                   | 26,488 | 27,925 | 28,838 | 30,062  | 4.2   |
|        | (체크카드)                | 26,271 | 27,648 | 28,532 | 29,686  | 4.0   |
|        | (현금카드 <sup>2)</sup> ) | 217    | 277    | 306    | 376     | 22.6  |
|        | (직불카드)                | 0.0    | 0.0    | 0.0    | 0.0     | -71.1 |
|        | 선불형(선불카드)             | 565    | 358    | 302    | 633     | 109.5 |
| 전자화폐   | 0.1                   | 0.1    | 0.0    | 0.0    | -62.1   |       |
| 금<br>액 | 어음·수표                 | 16,662 | 15,555 | 15,981 | 17,697  | 10.7  |
|        | 교환제시                  | 7,340  | 7,232  | 7,119  | 7,345   | 3.2   |
|        | 발행창구제시                | 7,189  | 6,196  | 6,488  | 7,696   | 18.6  |
|        | 전자어음                  | 2,133  | 2,127  | 2,374  | 2,656   | 11.9  |
|        | 계좌이체 <sup>1)</sup>    | 91,787 | 92,690 | 99,174 | 105,261 | 6.1   |
|        | 지급카드                  | 3,266  | 3,460  | 3,596  | 3,749   | 4.3   |
|        | 후불형(신용카드)             | 2,611  | 2,780  | 2,894  | 3,012   | 4.1   |
|        | (물품 및 용역 구매)          | 2,453  | 2,621  | 2,734  | 2,859   | 4.6   |
|        | (현금서비스)               | 158    | 159    | 160    | 153     | -4.2  |
|        | 직불형                   | 640    | 670    | 695    | 725     | 4.3   |
|        | (체크카드)                | 637    | 666    | 690    | 718     | 4.1   |
|        | (현금카드 <sup>2)</sup> ) | 3.3    | 4.5    | 4.9    | 6.1     | 24.7  |
|        | (직불카드)                | 0.0    | 0.0    | 0.0    | 0.0     | -38.7 |
|        | 선불형(선불카드)             | 14.5   | 9.7    | 6.9    | 12.2    | 77.7  |
| 전자화폐   | 0.0                   | 0.0    | 0.0    | 0.0    | -49.4   |       |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직불형카드의 일종으로 2012년 11월부터 서비스 개시

## 마. 주요 전자금융 및 간편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일평균, 천명, 천건, 천매, 십억원, %)

|                         |                       | 2022    | 2023    | 2024    | 2025    | 증감률   |       |
|-------------------------|-----------------------|---------|---------|---------|---------|-------|-------|
| 인터넷<br>뱅킹 <sup>1)</sup> | 등록고객수 <sup>2)3)</sup> | 207,036 | 224,011 | 241,864 | 244,639 | 1.1   |       |
|                         | (개 인)                 | 194,256 | 210,463 | 227,548 | 229,399 | 0.8   |       |
|                         | (법 인)                 | 12,780  | 13,548  | 14,317  | 15,240  | 6.4   |       |
|                         | 이용건수                  | 19,712  | 22,652  | 25,509  | 28,292  | 10.9  |       |
|                         | 이용금액                  | 76,339  | 82,006  | 87,206  | 90,133  | 3.4   |       |
| 모바일<br>뱅킹               | 등록고객수 <sup>2)3)</sup> | 169,219 | 186,524 | 203,617 | 208,968 | 2.6   |       |
|                         | 이용건수                  | 16,841  | 19,848  | 22,666  | 25,435  | 12.2  |       |
|                         | 이용금액                  | 14,176  | 15,204  | 16,868  | 18,036  | 6.9   |       |
| 전자<br>화폐                | 발급매수 <sup>3)</sup>    | 16,263  | 15,468  | 16,300  | 16,275  | -0.2  |       |
|                         | 이용금액                  | 0.0     | 0.0     | 0.0     | 0.0     | -0.5  |       |
| 전자<br>어음 <sup>4)</sup>  | 발행                    | 건수      | 5.2     | 5.0     | 4.7     | 4.4   | -7.8  |
|                         |                       | 금액      | 4,147   | 3,672   | 3,627   | 4,220 | 16.3  |
|                         | 할인                    | 건수      | 0.8     | 0.7     | 0.7     | 0.6   | -16.0 |
|                         |                       | 금액      | 50      | 48      | 45      | 40    | -12.6 |

주: 1) 모바일뱅킹을 포함

2) 19개 국내은행(3개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고객 기준(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3) 기말 기준

4) 자료제출기관의 수정·보고사항을 반영해 일부 자료 수정

(일평균, 천건, 십억원, %)

|                    |                       | 2022 <sup>1)</sup> | 2023 <sup>1)</sup> | 2024 <sup>1)</sup> | 2025   | 증감률  |
|--------------------|-----------------------|--------------------|--------------------|--------------------|--------|------|
| 간편지급 <sup>2)</sup> | 이용건수                  | 24,251             | 27,501             | 30,951             | 35,573 | 14.9 |
|                    | 전자금융업자                | 13,723             | 15,291             | 18,184             | 22,672 | 24.7 |
|                    | (신용카드 <sup>3)</sup> ) | 6,833              | 7,467              | 8,580              | 10,119 | 17.9 |
|                    | (선 불)                 | 6,129              | 6,942              | 8,569              | 11,232 | 31.1 |
|                    | (계 좌)                 | 761                | 883                | 1,035              | 1,321  | 27.6 |
|                    | 휴대폰제조사                | 7,173              | 8,598              | 9,260              | 9,530  | 2.9  |
|                    | 금융기관                  | 3,355              | 3,612              | 3,507              | 3,372  | -3.9 |
|                    | 이용금액                  | 767                | 883                | 964                | 1,105  | 14.6 |
|                    | 전자금융업자                | 385                | 433                | 487                | 606    | 24.6 |
|                    | (신용카드 <sup>3)</sup> ) | 243                | 267                | 294                | 358    | 21.8 |
|                    | (선 불)                 | 119                | 140                | 162                | 206    | 27.2 |
|                    | (계 좌)                 | 23                 | 26                 | 31                 | 42     | 36.7 |
|                    | 휴대폰제조사                | 185                | 224                | 244                | 262    | 7.0  |
|                    | 금융기관                  | 197                | 226                | 233                | 237    | 1.8  |
| 간편송금               | 이용건수                  | 5,196              | 6,358              | 7,210              | 7,421  | 2.9  |
|                    | 전자금융업자                | 4,811              | 5,912              | 6,710              | 6,946  | 3.5  |
|                    | 금융기관                  | 386                | 447                | 500                | 475    | -5.0 |
|                    | 이용금액                  | 626                | 777                | 912                | 979    | 7.3  |
|                    | 전자금융업자                | 611                | 766                | 902                | 969    | 7.5  |
| 금융기관               | 15.0                  | 10.7               | 10.4               | 9.3                | -10.6  |      |

주: 1) 자료제출기관의 수정·보고사항을 반영해 일부 자료 수정

2) 간편지급 이용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관 및 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편제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시계열을 모두 소급해 개편)

3) 체크카드 포함

## 5. 용어 해설

| 용어   | 해설  |
|--|---|
| 가상자산<br>crypto-asset                       |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되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자산   |
| 간편송금<br>easy transfer service              |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선불금 계정에 미리 충전한 자금을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해 수취인의 전화번호(메시지 발송) 및 선불금 계정으로 송금하는 서비스    |
| 간편지급<br>easy payment service               |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 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해 재화·서비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
| 감시<br>oversight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기능                                  |
| 거래정보저장소<br>trade repository                |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해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인프라(FMI)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중요성이 부각   |
| 거액결제시스템<br>large-value payment system      |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결제시스템  |
| 결제리스크<br>settlement risk                   | 자금 또는 증권 결제시스템에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신용·유동성·운영·법률 리스크 등을 포함                             |
| 결제완결성<br>settlement finality               |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 청산, 결제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에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
| 금융시장인프라<br>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 금융시장에서 지급, 청산, 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중앙거래당사자,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 등을 포괄       |
| 담보<br>collateral                           | 담보 제공자가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  |
| 대체거래소<br>Alternative Trading System        | 증권의 매매나 중개 업무 등 정규거래소의 증권거래 관련 기능을 수행하지만 상장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정규거래소에 비해 약한 규제를 받는 증권거래시설을 지칭                           |
| 분산원장기술<br>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네트워크의 각 노드가 분산 및 동조화(distributed and synchronised)되어 있는 원장을 검증하고 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제반 기술 및 절차                        |
| 소액결제시스템<br>retail payment system           | 수표, 계좌이체, 지급카드, 지로 등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  |
| 순이체한도<br>net debit cap                     | 차액결제 시 신용·유동성 리스크 규모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참가기관이 정한 미결제 순이체액(타 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 - 타 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
| 스마트 계약<br>smart contract                   | 사전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제3자의 개입 없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프로그래밍 코드  |
| 스테이블코인<br>stablecoin                       | 주로 법정화폐 등과 연동하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
| 신속자금이체<br>fast payment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개인·기업 등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체되고,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지급결제서비스                        |
| 신용리스크<br>credit risk                       | 금융시장인프라(FMI) 참가기관이 파산 등으로 결제시점에 지급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리스크  |
| 실시간총액결제<br>real-time gross settlement      |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 건별로 그 지급지시 총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방식  |

| 용어  | 해설   |
|---|--|
| 업무지속성<br>business continuity                |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 또는 시스템의 한 개 이상의 요소가 실패하거나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외부사건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조직적, 기술적 및 인적 수단                                   |
| 예금 토큰<br>tokenized deposit                  | 은행이 토큰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디지털통화   |
| 오픈뱅킹<br>open banking                        | 핀테크 기업 등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표준방식(API)을 통해 은행의 고객 정보에 접근해 지급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 외환동시결제<br>payment versus payment            | 외환결제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결제방식  |
| 운영리스크<br>operational risk                   | 정보시스템 또는 내부 처리절차의 결함, 운영인력의 실수 또는 관리 실패, 외부 사건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 질적 저하 또는 장애가 발생할 리스크  |
| 원자적 결제<br>atomic settlements                |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단위로서의 원자의 의미를 차용한 것으로, 연결된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모두 실행되거나 모두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 유동성리스크<br>liquidity risk                    | 금융시장인프라(FMI) 참가기관의 건전성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예정된 시간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체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  |
| 이연차액결제<br>deferred net settlement           | 일정 기간 중 이루어진 자금이체에 대해 참가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 처리한 후 사후에 결제하는 방식   |
| 일관처리<br>straight through processing         | 지급결제 프로세스 전 과정을 표준화된 메시지에 의한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   |
| 자금결제시스템<br>funds transfer system            | 참가자 간 자금의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지급수단, 참가기관, 운영기관,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   |
| 중앙거래당사자<br>central counterparty             |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정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 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금융시장인프라(FMI) |
| 중앙예탁기관<br>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증권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관리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br>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디지털화폐)   |
| 증권결제시스템<br>securities settlement system     | 장부상의 계좌대체(book-entry) 방식 등 증권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결제시스템   |
| 증권대금동시결제<br>delivery versus payment         |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 시 증권결제와 자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   |
| 참가기관<br>participants                        | 금융시장인프라(FMI)가 제공하는 자금 및 기타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및 정보저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FMI와 약정을 체결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금융기관  |
| 채무불이행<br>default                            | 해당 시스템의 규정 및 계약 등에 따라 자금 또는 증권의 대금지급, 증권인도 등을 완료하는 데 실패한 사건  |
| 청산<br>clearing                              | 결제를 위해 송부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과정.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 전의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        |
| 최종 결제<br>final settlement                   | 채권·채무관계 종결을 위해 자금 또는 금융상품 등의 소유권을 취소 불가능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  |

## 6. 약어

|           |  |
|-----------|--|
| AML       | 자금세탁방지<br>Anti-Money Laundering  |
| ATM       | 현금자동입출금기<br>Automated Teller Machine   |
| BCP       | 업무지속계획<br>Business Continuity Plan   |
| BIS       | 국제결제은행<br>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 BOK-Wire+ | 한국은행금융결제망(한은금융망)<br>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System                |
| CCP       | 중앙거래당사자<br>Central Counterparty  |
| CFT       | 테러자금조달방지<br>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 CLS       | 연속연계결제방식을 활용한 외환동시결제<br>Continuous Linked Settlement                           |
| CPMI      |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r>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
| DNS       | 이연차액결제<br>Deferred Net Settlement  |
| DvP       | 증권대금동시결제<br>Delivery versus Payment  |
| EMEAP     |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br>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Central Banks      |
| FMI       | 금융시장인프라<br>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
| FSB       | 금융안정위원회<br>Financial Stability Board   |
| IOSCO     | 국제증권감독기구<br>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 ISO 20022 | 국제금융전문표준<br>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22               |
| KYC       | 고객확인절차<br>Know Your Customer   |
| LCT       | 현지통화 직거래<br>Local Currency Transaction   |
| PFMI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br>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 PG        | 전자지급결제대행<br>Payment Gateway  |
| RTGS      | 실시간총액결제<br>Real-Time Gross Settlement  |
| SWIFT     | 국제 금융전문 통신망(협회)<br>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 WGBI      | 세계국채지수<br>World Government Bond Index  |
| WGPMI     | 지급 및 시장인프라 실무그룹<br>Working Group on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s         |

## 7. 표 및 그림

### 표 차례

|          |                           |    |
|----------|---------------------------|----|
| 표 I-1.   |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규모          | 3  |
| 표 I-2.   |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규모         | 4  |
| 표 I-3.   |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           | 4  |
| 표 I-4.   | 일중RP 이용규모                 | 6  |
| 표 I-5.   |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및 대기비율 추이    | 7  |
| 표 I-6.   | 금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스시스템 결제규모 | 8  |
| 표 I-7.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현황    | 9  |
| 표 I-8.   | 순이체한도 이용 현황               | 9  |
| 표 I-9.   | CLS시스템 결제규모               | 10 |
| 표 I-10.  |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               | 11 |
| 표 I-11.  |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 11 |
| 표 I-12.  | 장외시장 증권대금동시결제 비중          | 11 |
| 표 II-1.  |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 이력          | 17 |
| 표 II-2.  | 세부업무별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변경       | 18 |
| 표 II-3.  |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 관련 주요 일정    | 20 |
| 표 III-1. | 2025년 중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내용   | 33 |
| 표 III-2. | 2025년 중 지급결제 부문 공동검사 내용   | 34 |
| 표 III-3. |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ATM 관련 역할  | 40 |
| 표 IV-1.  |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 50 |

## 그림 차례

|           |   |    |
|-----------|---|----|
| 그림 I-1.   |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                             | 3  |
| 그림 I-2.   |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규모                                  | 4  |
| 그림 I-3.   |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규모                             | 4  |
| 그림 I-4.   | 일중당좌대출 이용규모 및 시간                              | 5  |
| 그림 I-5.   | 일중당좌대출 잔액                                     | 5  |
| 그림 I-6.   | 일중RP 잔액                                       | 6  |
| 그림 I-7.   |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                              | 7  |
| 그림 I-8.   | 한은금융망 마감 연장횟수·평균 연장시간                         | 7  |
| 그림 I-9.   |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규모                                  | 8  |
| 그림 I-10.  | CLS시스템 외환동시결제 비중                              | 10 |
| 그림 II-1.  | WGBI 편입국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 17 |
| 그림 II-2.  |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결제 구조                              | 19 |
| 그림 II-3.  | 한은금융망 ISO 20022 도입 사업 추진 일정                   | 22 |
| 그림 II-4.  | 제51차 EMEAP WGPMI 회의 서울 개최                     | 23 |
| 그림 III-1.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 31 |
| 그림 III-2. | 국내은행의 채권보유 금액 및 수익성                           | 32 |
| 그림 III-3. | 오픈뱅킹 이용실적                                     | 34 |
| 그림 III-4. |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이용실적                              | 37 |
| 그림 III-5. |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이용 이벤트 포스터                        | 38 |
| 그림 III-6. |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홍보 포스터                             | 39 |
| 그림 IV-1.  | 디지털화폐 네트워크 구성도                                | 49 |
| 그림 IV-2.  | 예금 토큰 결제 처리 절차                                | 51 |
| 그림 IV-3.  | 후속 실거래 사업에서의 주요 개선 희망사항                       | 51 |
| 그림 IV-4.  | 발행 주체(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 55 |
| 그림 IV-5.  | 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 신설                               | 56 |
| 그림 IV-6.  | 우리나라-인도네시아 QR 연계 거래구조<br>(우리나라 국민 → 인도네시아 방문) | 58 |
| 그림 IV-7.  | 우리나라-인도네시아 QR 연계 거래구조<br>(인도네시아 국민 → 우리나라 방문) | 58 |
| 그림 IV-8.  |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 58 |
| 그림 IV-9.  | 넥서스 송금 예시 화면                                  | 59 |

## 8.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 부문                                      | 집필자            |  |
|---|----------------|--|
| 보고서 작성 총괄<br>개요                         | 금융결제국          | 이상호·민효식·오일영(결제인프라안정팀)<br>민효식(결제인프라안정팀)                                   |
| <b>I.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b>            |                |  |
| 1. 거액결제시스템                              | 금융결제국          | 김성수·오일영(결제인프라안정팀)<br>김규민·김다운(결제운영팀)                                      |
| 2. 소액결제시스템                              | 금융업무국<br>금융결제국 | 권기백·강재원(여수신입무팀)<br>김성수·오일영(결제인프라안정팀)<br>박선욱·홍성주(결제운영팀)<br>박선욱·홍성주(결제운영팀) |
|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 김성수·오일영(결제인프라안정팀)  |
| 4. 증권결제시스템                              |                | 김성수·오일영(결제인프라안정팀)  |
| <참고>                                    |                |  |
| 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                | 김성수·오일영(결제인프라안정팀)  |
| <b>II. 지급결제제도 인프라 확충 및 국제협력 강화</b>      |                |  |
| 1.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 금융결제국          | 남이경(결제운영팀)<br>최재원(지급결제혁신팀)<br>강태현·오은영(SO20022도입반)<br>이하림(국제결제협력반)        |
| 2.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                |  |
| <참고>                                    |                |  |
| 1.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IT시스템 다중화 사례            |                | 원창희(지급결제혁신팀)   |
| 2. 국제사회의 FMI 일반사업리스크 관련 추가지침 제정 추진      |                | 민효식(결제인프라안정팀)  |
| <b>III.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b>          |                |  |
|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 금융결제국          | 최지아·김필수(결제정책팀)<br>문동규·송창훈·지다빈(가상자산반)                                     |
| 2.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제고 노력                |                | 민효식·김성수(결제인프라안정팀),<br>정준우(결제리스크관리팀)<br>최지아(결제정책팀)                        |
| 3.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 발권국            | 조성훈(전자금융팀)<br>유영선(결제정책팀)<br>차재훈·황서운(화폐연구팀)                               |
| <참고>                                    |                |  |
| 1. 2025년 가상자산 거래현황 및 주요 특징              | 금융결제국          | 문동규·오성목(가상자산반)   |
| 2. 빗썸거래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                | 송창훈(가상자산반)   |
| 3.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 발권국            | 차재훈(화폐연구팀)   |
| <b>IV. 주요 현안 분석</b>                     |                |  |
| 1.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화폐연구실       | 박준영·최지원(디지털화폐기술팀·분석팀)  |
| 2. 바람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방안                  | 금융결제국          | 유영선·강규휘(결제정책팀)<br>김재환(전자금융팀)   |
| 3. 국가 간 지급서비스 연계 강화                     |                | 이상아·조성훈(국제결제협력반·전자금융팀)   |
| <참고>                                    |                |  |
| 1. 주요국 중앙은행의 DLT 혁신 지원 사례               |                | 신희용(결제정책팀)   |
| 2.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내용                    |                | 김재환(전자금융팀)   |
| 3. 2025년 10월 11일 스테이블코인 가격 급등락 원인 및 시사점 |                | 송창훈(가상자산반)   |
| 4.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현황 및 활용 가능성               |                | 문동규(가상자산반)   |
| 5. 토큰증권 법적현황 및 시사점                      |                | 정문기(결제리스크관리팀)  |
| 6.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                | 이상아(국제결제협력반)   |
| <b>보충 설명</b>                            | 금융결제국          | 민효식·오일영(결제인프라안정팀)  |
| <b>부록</b>                               | 금융결제국          | 오일영·정희재(결제인프라안정팀),<br>김규민·김다운(결제운영팀)                                     |
|   | 금융업무국          | 현상은·배주원(국고팀)<br>유철중(증권팀)·이소정·이가영(국채기금팀)<br>권기백·강재원(여수신입무팀)               |

\* 집필 당시 소속

---

## 2025 지급결제보고서

**발행인** 이창용  
**편집인** 장정수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26년 4월 13일  
**제작** (주)제일프린테크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뉴스/자료 > 간행물 >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금융결제국 결제인프라안정팀(전화 02-750-6527, 이메일 [psoverseer@bok.or.kr](mailto:psoverseer@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ISSN 2288-9787



[www.bok.or.kr](http://www.bok.or.kr)